

월간

재정포럼 5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2년 5월호 제191호

- 현안분석** • •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노영훈
•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김재진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 구자은 · 정경화

- 주요국 조세동향** • •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외

- 정책흐름**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 김경환

현안분석

06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 노영훈

23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 김재진

47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 구자은 · 정경화

주요국 조세동향

58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6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73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 · 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80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

82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83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8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86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재정통계

9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_성질별, 단체별 외

이슈 & 포커스

108 KTX 경쟁도입 필요하다 외

주택시장과 부동산 세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부동산세제는 자가보유와 임차의 상대가격을 통해 주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가보유 촉진을 정책목표로 삼는 많은 나라에서는 자가보유에서 비롯되는 암묵적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가보유에 대한 지나친 세제지원이 주택에 대한 과잉투자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세제지원이 자가보유율을 높이기보다는 어차피 집을 살 사람들에게 더 크고 비싼 집을 선택하게 만들고, 지원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무리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현실적으로 자가구입이 어려워진 가구가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제 역시 자가보유를 촉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는 투기억제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어 왔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시기에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의 세제 강화가 이루어졌다.

MB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증부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이 시도되었으나 본질적인 개편은 실현되지 못했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들이 줄을 이었다. 1가구 다주택보유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두 번 연속 시행한 것은 조세 원칙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미봉책이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12·7 대책에서 양도소득세 1가구 다주택보유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이번 5·10 부동산대책에서 재확인하고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는 태생적으로 단기보유·1가구 다주택 보유 등 사회통념상 투

기를 억제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대폭 낮춰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는 1가구 1주택 보유 장려와 1가구 다주택 보유 억제라는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주택정책의 기본 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이 주로 ‘집 없는 서민’ 가구들의 불가피한 대안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임대주택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자가구입 능력이 있으면서도 임대를 선호하는 자발적 임대수요가 늘고 있으며 양질의 임대주택에 대한 1~2인 가구와 중산층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임대수요의 증가로 전·월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투기행위로 인식되어 온 1가구 다주택 보유가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직결되어 있다는 현실을 정부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임대를 전제로 한 주택은 전체 주택의 5% 정도인 공공임대주택에 국한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주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의해 공급되며 자가거주주택과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의 주택 재고를 늘리려면 전체 주택재고를 늘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시장의 완충장치로 필요하지만 공급과 관리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자금을 비해 입주자들이 느끼는 편익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은 개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는 쉽지 않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경우도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의 절대다수는 개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낮은데다가 전세형태로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투자자의 유치가 더 어렵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투자 및 공급은 1가구 다주택 보유 개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개인에 의한 임대주택 투자와 공급을 확대하려면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배제하는 대신 임대소득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와 적절한 세제유인이 필요하다.


.....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기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이론적으로
 부동산세제는
 자가보유와 임차,
 다양한 임차형태 사이의
 세부담이 비슷하도록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가 알기로 보유주택 호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차등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대신 집을 몇 채 소유하든지 실제 거주하는 집 한 채(주거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있고, 그 조건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경기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조세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월세보다 전세에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세제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와 증부세가 면제된다. 일정 한도 내에서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이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전·월세 가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세입자 가구는 저리자금 용자를 받을 수 있고 공급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월세 가구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고 공급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세는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형태로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관행이다. 그러나 집값의 절반이나 되는 최초보증금이나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 인상액을 마련하는 것은 자산이 부족한 젊은층 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물론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데 적용되는 금리가 시중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전세가 유리한 것이 현실이지만 저리자금 대출과 차등적인 세제 등을 통해 전세제도의 유지를 인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론적으로 부동산세제는 자가보유와 임차, 다양한 임차형태 사이의 세부담이 비슷하도록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고려를 전적으로 피하기는 어렵지만 주택정책이 주택정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The Mirrlees Review: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김재진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구자은 · 한국조세연구원 특수전문직(공인회계사)
정경화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편집자 주)

부유세와 소득 및 자산관련 조세개혁 방향

I. 서론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rut@kipf.re.kr)

정치권 및 정책씨클에서의 ‘부유세’ 신설 주장은 1993년 이후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3년의 금융실명제와 1997년의 부동산실명제 도입 당시 정책당국은 동 제도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부유세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이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당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으로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현) 민주통합당의 정동영 의원이 재원조달 수단으로서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다.

일반국민들의 부유세 도입에 대한 호응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으나¹⁾, 부유세의 구체적 모습이 제시되면서 설문조사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국민이나 유권자들은 부유세에 대해 대개 글자 그대로 해석하여 ‘부유한 만큼 내는 세금’ 또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 정도로 추측하여 설문에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함께 찬반논쟁 또는 간단한 의견제시 (comment)를 하는 각계 전문가들 역시 ‘부유세’의 실체 그리고 이와 연계된 관련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일반국민들 입장에서는 ‘남이 더 내서 자기나 자기 주변 또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더 많이 쓰겠다’는 조세정책에 심정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이나 부의 분배라는 목표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공공정책 수단 중에서 조세정책 수단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유세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수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논의를 위한 선결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접근방법론들 중의 하나로서 부유세 도입의 가능성을, 우리나라 소득세 및 자산과세

1) 부유세 도입 찬성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로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2004년 5월 8일 실시한 한국경제 긴급진단 국민여론조사와 5월 20일의 한국방송(KBS)과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각각 62.3%와 69.1%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분야 세계개혁의 여러 과제들과 함께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의 최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불공평성 이슈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버핏룰(Buffer Rule) 주장이나, 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유세 재도입 및 신설 주장들에서, 세부담 공평성의 문제와 함께 국가 채무 및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증대 목적으로도 ‘부(wealth)’에 대한 직접적 과세가 논의되는 등이 문제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8월 현행 연방소득세의 세부담 공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연간소득 100만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의 (평균세율로 계산한) 세부담이 중간소득계층보다 적지 않게 되도록 하자’는 원칙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고용증대와 재정적자 감축방안’의 5대 원칙 중 중요한 하나이다²⁾. 스페인은 2008년에 폐지되었던 부유세를 2012년에 재차 도입하는 법률안이 2011년 9월 상하원 의회를 통과하였고, 이탈리아는 2조유로(€)에 달하는 국채문제의 해법으로 ‘회성 부유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다.

본고의 제2절에서는 어떤 의미의 부유세 도입을 논의하는지에 대해 그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미 시행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최대공약수적인 부유세 개념을 상정해 보고, 이러한 부유세 도입의 배경과 조세정책적 의미를 살펴본다. 그다음 제3절에서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외국에서의 시행사례들을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부유세의 신설이 조세개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자본 및 자산소득과세 분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세정책수단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유세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수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각종 효과들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부유세 도입논의를 위한 선결사안이다.

II. 부유세의 개념과 조세정책적 의의

1. 부자(Rich)와 고소득자(High-income earner)의 구분 및 분포

고소득자는 소득이 많은 개인들을 말하며, 이때의 소득은 일정기간, 예를 들어 1년간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모두 합한 유량개념으로서의 경제적 능력(economic position)을 측정하는 한 척도이다.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연간소득자를 고소득자라고 칭할 수도 있고, 모집단소득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충실하다면 10분위, 100분위와 같은 소득자순위에서 차지하는 상위 10%, 상위 1% 소득계층에 속한 개인들로 정의할 수도 있다. 만일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매우 포괄적 소득(comprehensive income)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과세당국이 소득세신고자료를 통해 포착한 과세소득 또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최상위 1% 또는 10% 고소득자 소득의 전체 소득 대비 상대비율 또는 납부소득세비율 등을 통해 소득분포의 집중도나 납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다. 반면 어느 나라의 개인소득세가 특정 소득유형(예,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신고할 의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과세(exclusion)되면서 이러한 유형의 소득이 고소득자계층에서 특별히 많이 발생한다면,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를 통한 최상위 1%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집중도나 세부담 형평성 논의는 기

2) 미국에서의 ‘부자’들에 대한 세부담 불공평성 논의는 정확하게는 ‘최고소득자’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이 차하위소득계층들과 비교하여 더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란이므로 엄밀하게는 ‘부’ 그 자체가 아닌 ‘고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임. 그러나, 주로 주식으로부터의 장기자본이익이나 배당에 대한 별도우대세율 적용 등 혜택에 기인하여 세부담 역전현상이 발생하므로 특정 유형 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에 대한 소득세 형평성 문제로 전개되는 것임.

고액순자산가는 ‘순재산(net worth)’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으로, (주)거주주택 및 동산들을 제외하고 투자자산이 순액으로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본적인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최상위 1% 고소득자의 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들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액의 세수비율을 통해 소득집중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연구할 때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본소득 등 소득원천(source of income)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본이다.

반면 부자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부자는 일정시점에서 소유한 자산의 평가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wealth management)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은 고액 순자산가(High Net Worth Individual, HNWI)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고액 순자산가는 ‘순재산(net worth)’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으로, (주)거주주택 및 동산들을 제외하고 투자자산(investable asset)이 순액으로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2011년 전 세계적으로 1천여 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7~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당시의 인원을 넘어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고액순자산가 1인당 평균이 북미·아태(330만달러), 유럽(310만달러)의 순으로 순위가 바뀌었고, 국가별로는 미국(310만달러)·독일·일본의 순서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캡제미니/메릴린치(Capgemini & Merrill Lynch)는 『World Wealth Report』를 199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전 세계 71개국 총소득의 98%와 전 세계 주식시가총액(market cap)의 98%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지역-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조사 발표하고 있다. 씨티그룹(Citibank

& Knight-Frank)에서도 『Wealth Report: A Global Perspective on Prime Property and Wealth』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부의 규모나 분포는 민간금융회사 이외에도 중앙정부 특히 국세당국이나 중앙은행도 업무의 특성상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및 중앙은행 등은 일정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민간가계가 보유한 실물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을 (설문)조사한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를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캐나다 등에서의 소비자금융조사(Survey of Consumer Finances SCF), 우리나라의 가계자산조사나 가계금융조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청이나 중앙은행은 국부통계의 개인(및 비법인 사업) 부문 대차대조표 잔액을 통해 민간부문 개인 순부(=자산-부채)의 총계치(aggregate value)를 추정하거나, 부문별 자금순환표 작성을 위해 부의 변화를 추정하고 있다.

과세당국도 자산소득, (실물자산) 보유과세, 상속·증여 등 이전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한 경제 내의 인별, 가구별 부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과세자료상의 이자·배당 등 (연간) 금융소득으로부터 (원본 스톡인) 금융자산 소유분포를 계산 또는 추정하거나, 스웨덴 등 순부유세 부과국들은 과세당국에 신고된 부유세 신고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합토지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해서 그 분포를 직접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역추정 방법론(Estate Multiplier method)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세당국의 상속세 신고자료는 해당연도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deceased)들의 상속재산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들을 연초에 생존하고 있던 부자들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된 표본(sample)인 것으로 가정하고, 연령·성별·자산규모별 하위그룹들의 비중(weight)과 사망률(mortality rate)의 역수로 확대하여 생존해

있는 부자들의 부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진술한 가계금융조사와 같은 설문조사상 부의 분포는 통상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위 분포(upper tail)가 생략(truncate)되어 있어서 최상위부자들에게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위의 상속세과세자료 역추정법을 사용하여 최상위 0.5% 또는 1%의 부자 정보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2. 부유세의 개념

먼저 우리가 부유세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20세기 초부터 시행한 경험이 있는 14개 국가별 형태의 부유세,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등에서 도입한 부유세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유세라고 칭할 만한 기본 특성들(stylized facts)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 특성들을 갖춘 부유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고유한, 특이한 형태의 부유세인지에 대한 개념규정을 하지 않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동일한 부유세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어 부유세 도입에 대한 논쟁은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순부유세 시행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만을 모아 정의를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가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매년 과세하는 국세로서³⁾, 둘째, 개인소득세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며, 셋째, 부부 또는 가구가 소유한 총자산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부(순재산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인세(人稅, personal tax, ad personam tax)로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며, 넷째, 부를 구성하는 과세대상 자산이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기본 특성들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주된 과세목적과 기능으로, ① 조세의 수직

부유세는 부과주체 및 세수사용권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의 합산가액을 기초로 과세되는 인세(人稅)인 국세로서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하다.

적 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국세로서의 개인소득세를 세제 및 세정적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순부유세를 다른 자산과세인 지방재산세, 상속세·증여세 등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면 순부유세의 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산의 소유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대부분 지방정부 관할영역 내에 소재하는 개별 부동산 물건별로 지방세가 달리 과세되는 물세(物稅, in rem tax)인 반면, 부유세는 부과주체 및 세수사용권이 주로 중앙정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 또는 가구 단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의 합산가액을 기초로 과세되는 인세(人稅, ad personam, personal tax)인 국세로서 전국 공통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이다. 또한 부유세와 개인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과세상한규정이나, 소득세의 자본이득 합산규정을 준용하여 과세단위를 선택한다거나, 소득세 인적기초공제제도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적기초공제액을 설정하는 등 개인소득세 제도와 유기적으로 관련된 장치들을 갖고 있다. 물론 지방재산세도 재산의 가액(ad valorem)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의 타 원천소득에서 납부되므로 명목적 자산세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납부소득세액과의 합산에 의한 과세상한과 같은 소유재산의 원본잠식 배제 장치가 없는 물세로서의 특성이 강하다⁴⁾. 특히 우리나라

3) 이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스위스를 들 수 있는데, 스위스 연방을 구성하는 Canton별로 과세됨.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상업용건물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유형별 조부유세 형태를 띠어, 상당히 변형된
 개념의 부유세의 변종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부유세의 원형과는 거리가 있다.**

는 1993년부터 최초로 전국 단위의 인별 토지소유 합산 가액에 대해 종합토지세가 누진세율로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상업용 건물만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유형별 조부유세(gross wealth tax) 형태를 띠어, 상당히 변형된 개념의 부유세의 변종(variant)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부유세의 원형(prototype)과는 거리가 있다⁵⁾.

둘째, 상속세·유산세(inheritance, estate tax), 증여세(gift tax)는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인세(人稅)로서의 국세이면서도 세대 간 또는 타인에 대한 자산이전 행위에 대해 포괄적 또는 개별적으로 과세되는 반면, 부유세는 자산의 보유단계에서 정기적으로 과세되며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하는 실질적 자산세가 아니고 자산수익이 없을 경우 타 원천의 소득으로 납부해야 하는 명목적 자산세이다. 국가 간 조세체계의 비교를 위해 마련된 OECD의 조세분류기준에 따르면 4000단위 대분류의 재산과세(Taxes on property) 중 4200단위(Recurrent net wealth taxes)의 중분류에 속하게 되며, 상속이나 증여 행위와 같은 비정기적인 과세요건이 필요없다.

셋째, 부동산 임대소득 및 부동산 양도차익과 같은 자산소득이나 자본이득은 개인소득세 체계 내에서 종합 또는 분리과세되는데, 이는 자산소득 또는 자본이득이라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이지 부유세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소유한 자산이라는 저장(stock) 또는 원본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3. 부유세 도입 주장의 배경

부유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부 및 소득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거나 개선되지 못했고, 특히 개인소득세 및 관련되는 재산과세가 적극적으로 재분배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혹은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외국과 비교하여 부 및 소득의 불공평도가 심하다는 판단에도 기인하고 있다. 과연 부유세 도입을 통해 재분배를 도모할 정도로 부 및 소득의 분포가 불공평한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민간부문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부의 분포에 대해 동일한 기준에서의(on equal footing) 국가 간 상대비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장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부(marketable wealth)를 계층별 또는 인별 수준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포착하고 있는 나라들은 순부유세 시행 및 경험국가들과 상속·증여세 및 인지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과세자료로 추정하고 있는 몇몇 나라들에 불과하다⁶⁾. 따라서 부(富)만을 놓고 볼 때 상위 몇 %의 부자가 일정기간 또는 생애기간 동안 한 국민경제 전체에서 몇 %의 세부담을 하는지는 파악하기 불가능할 정

4) 납부된 지방재산세액을 중앙정부의 개인소득세에서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쪽에서 지방재산세 납부액을 감인하는 경우는 있으나, 지방재산세는 물세로서의 기본 특성 때문에 인적 특성 및 납세자의 경제적 위치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물론 개인별 토지소유가액을 합산·누진과세하는 우리나라의 종합토지세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형적인 '지방재산세(local property tax)'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5) 우리나라 종합토지세의 부유세적 특성,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의 단계적 도입 가능성, 그리고 조세정책적 의의에 대해서는 노영훈(1996)을 참조할 것.

6) 다만 부유세를 부과하게 됨으로써(예, 스웨덴 등) 또는 상속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 부의 분포를 추계한 통계(예, 영국 국세청 국세통계) 및 연구자료는 존재함. 특히, 미국 및 영국에서는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한 간접추계방법으로, 그리고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에서는 인지세(stamp duty)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음. 또한 포괄적 소득세제(comprehensive income tax)에 가깝게 개인소득세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자본소득 및 자산소득을 통해 인별 자산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총량적인 차원에서는 국민경제계산을 통해 부문별 자산소유상황을 매년 추적하고 있으나 인별 단위로는 이용가능하지 않은 상황임.

도이다. 기껏해야 최상위 몇 명의 재벌가 소유주식가액이 몇 조원이라거나, 우리나라 상위 몇 %의 땅부자가 전국 토지가액의 몇 %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와 같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에 그친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보아 증권거래소 등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전국 토지가액이 얼마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얼마라는 통계치들은 총액(aggregate value)으로 존재하지만 그 분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표되지 않고 있다.

한 경제 내에서 부의 분포에 대해 신뢰할 만한 조사자료나 통계 그리고 이에 기초한 연구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자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종합토지세의 부과자료는 1990년 이후 14년간 축적되어 있으나 이에 접근하여 수행된 연구는 단 3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성욱·현진권(1993), 노영훈(1995), 노영훈(1999)). 특히 전 모집단을 상대로 토지소유분포가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노영훈·김진영(2001)이 유일한데, 이들은 토지과표현실화율 제고를 통해 종합토지세 세부담을 집중적으로 인상하였던 1995년 기간 중 토지소유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정도이지만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⁷⁾. 이후 노영훈(2004)은 토지과표현실화율이 상당히 진전된 2003년의 자료를 1996년의 인별토지가액 소유분포와 비교하여 최저 25%, 최상위 1%, 그리고 그 사이 토지소유계층에서의 변화를 통해 소폭의 토지소유집중도 완화를 보고하고 있다.

소득이나 가계지출의 경우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미시자료나 대우패널을 이용한 수많은 기존 연구들이 있으나, 조사대상의 제약성 및 방법론 측면에서 각각 장

자본이득 및 자산소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단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같은 자료를 쓰면서도 분석기간에 따라 1997년 외환위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소득분포가 악화되었다는 결론도 있는 반면, 그다지 심하지는 않다고 결론짓기도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가 누진세로서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여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 반면, 다른 방법론을 이용하여 대체로 분위별 부담비율은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들 연구들 대부분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본고에서 중요시하는 자본이득 및 자산소득에 대한 인별 또는 가구별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제한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금융 및 실물자산과 같은 저장변수(stock variable)에 대한 모집단 또는 표본 자료를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와 같은 유량변수(flow variable)와 연결시켜 대표성 있는 연도별 횡단면 자료를 주요 시점별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소득(income)과 부(wealth)를 2차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원천의 자료집합들(datasets)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결합분포(joint distribution)를 구성하는 노력이 노영훈·김현숙(2005) 이후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6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이후의 통계청·한은·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자산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7) 1993년의 종합토지세 개인납세자 840만명과 1996년의 960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인별토지과표현실화율 기준으로 토지소유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지니(Gini)계수는 1993년의 0.654에서 1996년 0.671로 소폭 증가하여 토지과표현실화율을 21.3%에서 31.1%로 50% 가까이 급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지분포의 불평등도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유럽국가들의 부유세 시행 경험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유세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III. 외국에서의 부유세 시행 경험⁸⁾

부유세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다양한 부유세제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0여 개에 달하는 사안들에 대한 기준과세구조(baseline structure)가 정의되어야 한다.

이 사안들은, 과세대상자산 범위(부를 구성하는 자산 형태), (예상)세수규모, 세율수준, 단일비례세율 또는 누진세율(graduated rate), 면세점 설정 여부 및 수준, 소득세와 세무행정의 연관성 및 과세 상한(ceiling) 또는 최저한(floor) 설정 여부, 납세의무자 범위(거주내국인 등) 및 비거주자에 대한 징세절차, 국제조세조약 관련 문제, 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net worth tax), 개인·부부·가구 등 과세단위(taxation unit)설정, 신탁 및 재단 등에 대한 특례조항 여부, 법인 등에 대한 과세 시 이중과세 문제, 제도의 점진적·단계적 도입 여부 및 도입 기간, 면세나 비과세 대상,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범위, 비과세대상자산 범위, 재산평가방법 및 평가갱신주기, 평가공란재산에 대한 실무문제, 재산저평가 방지대책, 자진신고납부 또는 정부부과결정제도 등 과세방식결정 문제, 불성실신고 시 징벌 문제, 결정세액 납부애로 조치, 징세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등의 최소화 문제 등이다.

순부유세는 아시아권에서는 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이,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우루과이가, 그리고 일본도 잠시 시행해 본 경험이 있지만⁹⁾, 주로 유럽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70여 년 이상의 긴 시행 역사를 갖고 있다¹⁰⁾.

2011년 현재 순부유세를 시행 중인 5개 유럽국가 중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프랑스(1982, 1989), 1978년 비교적 늦게 도입했다가 폐지한 후 재정적자 문제로 올해부터 재도입한 스페인, 향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핀란드, 그리고 도입을 고려한 적이 있는 영국(1974~75) 등에서는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가 순부유세 도입의 가장 큰 목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부유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불균일 문제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1997년부터 부유세가 폐지된 독일, 2001년부터 저축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과세방식을 도입한 소득세법 전면개편으로 부유세가 폐지된 네덜란드, 20세기초부터 시행하던 부유세를 2007년경 모두 폐지한 핀란드·룩셈부르크·스웨덴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국가들의 부유세 시행 경험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유세가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외의 국가들에서는 순부유세 도입 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목적과 현재의 유지 이유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1900년대 초기 도입국들의 주요 목적은 근대적인 소득세제가 정착되기 이전의 「소득세 보완적 기능」에 있다. 첫째, 20세기 초 부의 대부분을 구성하던 부동산은 가시적인 자산으로 과세당국의 세원포착이 용이한 반면,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동산 소득은 세원포착이 어려운 세무행정상의 애로가 존재하여 이러한 재산 소득 관련 세정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근로

8) 본장은 1996년 필자의 논문내용을 2002년 시점으로 갱신한 필자의 2002년 정책보고서 제3장 제3절을 다시 2003년 말 기준의 최신 자료로 보완하여 2004년에 출간한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중 한 장을 요약·정리한 것임.

9) 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도 1960년대를 전후하여 칼도(Nicholas Kaldor)의 세계개화권교안을 받아들여 부유세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일본은 사우프사절단(Shoup mission)의 권고로 3년간(1950~53)의 시행 경험을 갖고 있음.

10) 네덜란드는 1892년, 덴마크는 1904년, 스웨덴은 1910년, 노르웨이는 1911년, 독일은 1922년에 부유세를 도입하여 7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룩셈부르크는 1944년, 아일랜드는 1975년, 스페인은 1978년,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편임.

〈표 1〉 순부유세 도입 및 운영국가 현황

2003년			2011년 현재		
순부유세 유지(8개국)	순부유세 경험국	순부유세 미경험국	순부유세 유지(5개국)	순부유세 경험국	순부유세 미경험국
프랑스	오스트리아(1923~1993)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1923~1993)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1903~1996)	벨기에	아이슬란드 ¹⁾	덴마크(1903~1996)	벨기에
노르웨이	독일(1922~1996)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1922~1996)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1982~2000)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1982~2000)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1975~1978)	이탈리아	스페인 ²⁾	아일랜드(1975~1978)	이탈리아
핀란드	일본(1950~1953)	뉴질랜드		일본(1950~1953)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핀란드(1920~2006)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		룩셈부르크(1913~2006)	터키
		영국		스웨덴(1910~2007)	영국
		미국			미국

주: 1) 아이슬란드는 2006년 1월 1일 폐지하였으나 2009년~2012년 기간 재 도입
 2) 스페인은 2008년 폐지하였으나 2012년 재도입.

소득과 재산소득의 담세력 차이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소득하에서도 양자간 수평적 형평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제의 보완을 위한 기능이나 역할이 제기된다. 부유세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과세최저한이 상당히 낮거나 비례세율이건 누진세율이건 세율 자체가 낮아서 명목적 재산세¹¹⁾로서의 소득소멸형 구조를 갖는 나라들은 특히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한 보완적 기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는 2011년 현재 시행 중인 5개 유럽국가들의 부유세제도를 부과주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대상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로, 2003년 시점에서의 현황과 대비하고 있다. 〈표 2〉상의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 모두 누진세율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이 중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근래에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하여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다.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는 모두 누진세율구조를 갖는 국가들로 이 중 프랑스와 스페인은 비교적 근래에 부유세를 도입하면서 「부의 불균등분배 완화」를 목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추구하여 누진세율구조를 택한 국가들이다.

11) 재산에 대한 조세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조세가 과징되지만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에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후자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가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부담되므로 원본이 잠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표 2〉 각국의 부유세 제도(2011)

구분	프랑스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ISF)	노르웨이 (Formuesskatt til staten)	스위스 (Eidgenössische Wehrsteuer: Impôt pour l'adéfense nationale, Vermögensteuer)
창설연도	1982년 도입, 1987년 폐지, 1989년 부활	1914년 도입	1998년부터 법인에 대한 연방 부유세 폐지
부과주체	- 중앙정부, 국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 주정부+기초자치단체, 지방세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 개인: ○, 법인: ×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금융투자자산 제외)	- 개인: ○, 법인: ×(1992년 폐지) - 거주자: 전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자산 - 부부 합산과세	- 개인: ○, 법인: ○ - 거주자: 해외부동산·국내외 외국소유 고정사업장 제외 - 비거주자: 국내소재 기업·고정사업장·부동산 소유자(주별로 차이 있음) - 세대별 과세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 사업용 자산 ¹⁾ , 관리이사 소유 25% 초과 주식 제외 - 부동산: 건물, 나대지 - 동산: 가재도구, 보석, 채권, 자동차, 선박 - 금융자산: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거주주택, 영업권	- 부동산: 해외 부동산 제외 - 동산: 가재도구 - 금융: 소액저축(30,000NOK), 생명보험(50,000NOK) - 기타: 거주주택(시장가치의 20~30%)	- 부동산 - 동산: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미술품 등, 거주 주택, 영업권
과세표준 ²⁾ 및 기초공제	- 세대당 80만유로를 초과하는 순자산액 - 원거주자에 대해 30% 공제 허용	- 기초공제 · 거주자 1인당 10만NOK까지 공제	- 부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 기초공제: 주정부별로 상이 예) 취리히의 경우 · 기혼자(자녀 있는 이혼자·독신자 포함): 142,000CHF · 독신자: 71,000CHF - 법적인 실체: 지분(=납입자본+공개된 적립금+이윤으로 과세되어 온 숨겨진 적립금+부채자본) · 기초자치단체의 순부유세는 주정부의 순부유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
세율과 과세상한	- 누진세율구조 ~80만유로: 0% 80만~131만유로: 0.55% 131만~257만유로: 0.75% 257만~404만유로: 1% 404만~771만유로: 1.30% 771만~1,679만유로: 1.65% 1,679만유로 초과: 1.80% -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 합계액이 전년도 연간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정부: 700,000NOK 초과분 0.7% 단일비례세율(0.4~0.7% 내에서 결정) 부부합산과세 시 1,400,000NOK - 중앙정부: 700,000NOK 초과분 0.4% 부부합산과세 시 1,400,000NOK - 과세상한: 세부담이 납세자 순소득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 순부유세 및 필요하다면 지방 순부유세 경감제도 → 2009년 1월부터 폐지(단, 노령연금·장애인혜택 수혜자 제외)	- 개인: 대부분 누진세율구조, 주정부별로 상이 예) 취리히의 경우 최초 142,000CHF: 0% 다음 213,000CHF: 0.05% 다음 355,000CHF: 0.10% 다음 567,000CHF: 0.15% 다음 853,000CHF: 0.20% 다음 852,000CHF: 0.25% 2,982,000CHF 초과: 0.30% - 법적인 실체: 대부분 단일세율, 주정부별로 상이 예) 취리히의 경우 일반 0.15%, 지주회사 및 관리회사 0.03% - 실효세율은 기본세율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 예) 취리히의 계수: 1.19%(2010년)
평가방법 및 주기	- 1년(과세연도 1월 1일 기준) - 평가: 소유자산의 공정시장가치(the fair market value)	- 1년(과세연도 말) · 개인·소유동산: 보장가치에 비례 · 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상장기업: 시장가치 비거주기업 비상장주식: 기업의 순과세가치(tax value) 또는 기대시장가치(expected market value)	- 2년 · 정상시장가격 평가 원칙 · 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 연금: 보상액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비과세: 주식이나 지분 - 감면: 사업용자산, 골동품, 예술품, 수집품, 관리이사 소유 25%이상 초과 주식, 일부생명보험 - 41%	- 비과세: · 해외부동산 · 해외부동산 소유 비거주법인의 지분을 95%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독신이거나 동거인 9인 이하인 경우 해외부유세납부세액공제 - 28%(중앙+지방)	- 11.5%(별도의 지방소득세 있음) - 비과세: 가정용품,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용품

〈표 2〉의 계속

구분	국가 아이슬란드 (Eignarskattur til ríkisins)	국가 스페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IP)
창설연도	1970년 도입, 2006년 폐지, 2009년 부활	1978년 도입, 2008년 폐지, 2011년 부활
부과주체	- 중앙정부	- 주정부(17개 자치지역)
납세 의무자 및 과세단위	- 16세 이상의 개인(2009년 부활 시 개인에 대해서만 부활)	- 개인: ○, 법인: × - 거주자: 주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계 순자산 - 비거주자: 국내소재 자산 - 개인단위로만 부과(부부 및 세대합산부과: ×) - 납세의무자 · 순자산 70만유로 초과자 · 총자산 200만유로 초과자(순자산이 70만유로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자산 및 자산별 면세점	- 국내 및 해외에 위치하는 자산 - 개인자산의 총합 - 부부 및 공동생활자(cohabiting couples)는 총자산 합한 후 동등하게 나누어 개별 과세 - 16세 이하 개인의 자산은 부모 자산과 합하여 과세	- 부동산 - 등산: 가재도구, 보석, 자동차, 선박 - 금융: 소액저축, 연금, 생명보험 - 기타: 미술품 등, 거주주택, 특허권, 저작권, 영업권
과세표준 ²⁾ 및 기초공제	- 개인 7000만 SK, 부부(공동생활자): 1억ISK를 초과하는 금액	- 과세표준: 전체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 - 기초공제 · 표준공제액은 70만유로
세율과 과세상한	- 면세점 초과분 순자산의 1.5% 단일세율로 부과	- 누진세율구조 0~700,000유로: 0% 700,000~867,129.45유로: 0.2% 867,129.45~1,034,252.88유로: 0.3% 1,034,252.88~1,368,499.75유로: 0.5% 1,368,499.75~2,036,999.51유로: 0.9% 2,036,999.51~3,373,999.01유로: 1.3% 3,373,999.01~6,047,998.03유로: 1.7% 6,047,998.03~11,395,996.06유로: 2.1% 11,395,996.06유로 초과: 2.5% - 과세상한: 소득세와 순부유세 합계액이 총과세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방법 및 주기	- 1년(과세연도 말 자산)	- 1년 · 개인소유동산·부동산: 시장가격 · 주식: 거래가격 · 생명보험: 상환가액 · 농지·임야: Rural Tax 과표의 4% · 저작권 등: 시장가격
비과세 감면 및 소득세 최고세율	- 감면: 거주은행예금, 재무부 발행 각종 국공채, 일정한도의 주식 - 개인: 7000만ISK 이하 면세 - 공동생활자: 1억ISK 이하 면세 - 31.8%	- 비과세: 가재도구 및 개인비품, 개인연금, 원작자 소유의 지적 또는 산업 재산권(사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경우), 사업 또는 전문적 활동에 쓰이는 자산, 특정 주식 및 지분, 예술가 소장 예술품, 문화유산 - 45%

주: 1) 프랑스에서 주식이나 지분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됨.

2) 과세표준 = 총자산가액 - 채무 - 인적 기초공제

자료: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IBFD, *Taxation of Individuals in Europe 2011*, 2011년부터 재구성

**순부유세의 부과대상 범위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순부유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유일하게 1982년 사회당의 집권으로 최초로 부유세를 도입한 이래 사회당과 보수연합 간의 정권 교체에 따라 1987년의 폐지와 1988년의 부활을 거듭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좌파 정치철학을 대변하는 세제이다¹²⁾.

법인에 대한 부유세는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지된 상태인데, 법인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법인의 자본축적을 억제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 법인에 대해 부유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에서는 법인의 순소득을 주주에게 배분·귀속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타 조세와 마찬가지로 부유세도 ① 세수확보의 충분성, ② 세제의 단순성 및 세무행정의 편의성, ③ 형평성의 제고, ④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각국의 시행경험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중 자원의 효율적 사용은 시행국가에서 실시 동기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확보의 충분성, 행정편의성, 그리고 형평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유럽국가들의 시행경험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순부유세의 부과대상 범위에 따라 총조세수입에서 순부유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수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운용되는 조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부유세의 비중은 법인에

부과되는 룩셈부르크(5.61%)나, 노르웨이(1.33%)와 스위스(4.37%)를 제외하고는 대개 0.2~0.5% 범위의 극히 낮은 세수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순부유세제도의 유지 및 운영이 재산 관련 타 세목의 세수 증대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까지도 감안한다면 부유세만의 총조세수입 대비 비율만으로 순부유세제도의 세수 기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12) 아일랜드도 1975년부터 부유세를 채택하였으나 정부가 교체된 후인 1987년에 폐지하여 정권의 조세철학에 따라 세목의 채택·폐지를 겪은 국가임.

〈표 3〉 OECD 국가별 순부유세(4200) 세수(4200 Recurrent taxes on net wealth)

(단위: 백만유로, 백만지국통화, %)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⁴⁾	세액	103	174	270	401	417	642	58	1	-	-	-	-	-	-	-	-	-
	비중 ¹⁾	1.66	1.79	1.47	1.35	0.99	1.19	0.08	0.00	-	-	-	-	-	-	-	-	-
덴마크 ⁴⁾	세액	306	267	414	963	1,408	928	924	-	-	-	-	-	-	-	-	-	-
	비중	1.45	0.56	0.47	0.57	0.47	0.24	0.19	-	-	-	-	-	-	-	-	-	-
핀란드 ⁶⁾	세액	24	13	33	24	47	26	35	179	128	113	99	117	129	-	-	-	-
	비중	1.77	0.52	0.50	0.21	0.21	0.07	0.08	0.29	0.21	0.18	0.15	0.18	0.19	-	-	-	-
프랑스 ³⁾	세액	-	-	-	-	2,021	2,615	1,299	2,645	2,458	2,352	2,572	3,046	3,643	4,367	4,132	3,555	4,439
	비중	-	-	-	-	0.63	0.60	0.25	0.38	0.40	0.37	0.34	0.36	0.40	0.46	0.53	0.49	0.44
독일 ⁴⁾	세액	2,530	3,103	3,823	4,362	3,923	6,213	6,926	433	291	239	230	80	97	27	5	-7	7
	비중	3.41	2.73	2.02	1.52	1.10	1.37	1.01	0.06	0.04	0.03	0.03	0.01	0.01	0.00	0.00	0.00	0.00
아이슬란드	세액	-	2	5	69	588	2,402	3,191	5,173	5,866	5,918	2,913	3,400	2,887	50	-8	-18	12
	비중	-	1.20	0.75	1.46	1.71	2.09	2.25	2.03	2.15	2.05	0.94	0.96	0.69	0.01	0	0	0.00
아일랜드 ⁵⁾	세액	-	-	5	1	0	-	-	-	-	-	-	-	-	-	-	-	-
	비중	-	-	0.31	0.03	0.00	-	-	-	-	-	-	-	-	-	-	-	-
룩셈부르크	세액	7	14	21	44	83	172	268	633	616	542	517	557	698	801	878	725	716
	비중	2.67	3.23	2.31	2.82	3.16	4.59	4.78	7.35	6.86	5.75	5.25	5.43	6.13	6.58	6.57	5.18	5.09
네덜란드	세액	86	173	231	517	427	554	681	824	91	49	38	44	32	-6	30	20	25
	비중	0.79	0.84	0.53	0.74	0.50	0.53	0.54	0.50	0.05	0.03	0.02	0.02	0.02	0	0.01	0.01	0.01
노르웨이	세액	341	431	984	1,450	2,623	5,118	5,732	7,703	7,998	8,383	8,720	9,947	10,700	11,574	13,244	14,634	13,649
	비중	2.03	1.37	1.48	1.09	1.11	1.70	1.49	1.22	1.21	1.27	1.29	1.32	1.26	1.22	1.34	1.36	1.37
스페인	세액	-	-	-	107	156	637	625	1,179	1,166	1,150	1,182	1,212	1,378	1,645	2,030	2,371	82
	비중	-	-	-	0.49	0.32	0.61	0.44	0.55	0.51	0.46	0.44	0.42	0.42	0.46	0.52	0.65	0.03
스웨덴	세액	366	492	647	717	1,871	3,200	3,583	8,223	6,493	3,934	4,897	5,333	4,998	6,142	-	-	-
	비중	0.92	0.71	0.49	0.28	0.43	0.42	0.42	0.71	0.56	0.34	0.40	0.42	0.37	0.43	-	-	-
스위스	세액	692	1,158	1,886	2,201	2,657	3,641	4,625	5,232	5,786	5,891	5,881	6,057	6,030	6,414	6,943	6,912	6,914
	비중	6.16	6.01	5.11	4.75	4.21	4.27	4.47	4.13	4.56	4.54	4.60	4.66	4.46	4.50	4.61	4.36	4.34

주: 1) 총조세수입에 대한 순부유세의 비율임.
 2) 각국의 통화단위로 덴마크는 크로나(kroner)(DKK), 스웨덴은 크로나(kronor)(SEK), 노르웨이 크로나(kroner)(NOK), 스위스 프랑(francs)(CHF), 아이슬란드는 크로나(krona)(ISK), 케냐디는 달러(dollar)(CAD), 헝가리는 포린트(Forint)(HUF), 오스트리아 · 벨기에 · 핀란드 · 프랑스 · 독일 ·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슬로베니아 · 스페인은 유로(Euros)
 3) 프랑스는 1982년에 도입하여 1987년 일시 폐지하였다가 1988년 재차 도입하여 시행 중임.
 4) 오스트리아는 1994년 1월 일부만 폐지하였고, 독일과 덴마크는 1987년부터 폐지함.
 5) 아일랜드는 3년간(1975~78년만) 시행하였으므로 징수액은 과년도분이고 1975년 비율은 0.3%임.
 6) 핀란드는 2006년 1월부터 폐지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각 연도.

모든 나라들이 부유세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포착률 상이성, 그리고 공개거래시장의 존재 정도에 따른 과표율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부유세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세무행정의 편의성 측면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조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유세는 신고납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과소신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과세당국이 적절한 세무조사비용을 설정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부유세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산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과세당국의 포착률(assessment rate) 상이성, 그리고 공개거래시장의 존재 정도에 따른 과표율(assessment ratio)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보석, 서화·골동품, 가재도구류는 공개거래시장에서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파악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보유사실 여부도 납세자 신고에 의존해야 하며, 비상장·장외주식 등은 추계적 과세평가방법에 의해서도 대부분 저평가되고 있다. 재산평가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사건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1995년 6월 22일 판결이다. 독일 현재는 토지자산의 경우 196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재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1964년 평가액에 40%를 추가(mark-up)하여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반면, 증권 등 금융자산은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순부유세의 세부담 균등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1996년 말까지 새로운 과세표준결정 방식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행 세법규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결정하였고, 연방정부는 1997년 초 순부유세를 신규 부과하지 않는 대신 부동산세와 상

속증여세의 인상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경상적인 소득이 아닌 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상적으로 과세되는 부유세의 도입을 통해 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과세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며 자산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증가된다는 이론적 측면의 형평성 제고는 실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일정액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한 부유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낮은 마면이고, 이미 부유세를 부과해 온 국가들의 부유세 부담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제고라는 분배효과는 부유세의 구체적인 시행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다만 90년 이상의 시행경험을 갖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유료화 가입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유세 폐지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각종 면세조치가 부유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켰고, 1984년부터 1998년까지의 스웨덴 가구별 부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 부의 불공평성이 심화되었다는 결론¹³⁾이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는 ① 저축 및 투자, ② 소비유형 및 자산수요 왜곡, ③ 분배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축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축의 결과 축적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비지출을 늘려 저축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부유세는 비수익재산에까지 과세되므로 저축감소 효과의 크기는 소득세보다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본형성에 부(負, -)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내구소비재(예, 자동차 및 보트)도 포함되므로 소비지출 중에서도 내구재와 비내구재 간의 지출구성비를 변화시킨다. 자산으로부터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i) 보유기간 중의 자산소득흐름(capital income flow)과 ii) 매각 시의 자산가치 상승 또는 자본이득(capital appreciatio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소득세와 부유세의 세부담 합계를 줄이기 위해

13) Klevmarcken(2001) 참조

양자 중 자본이득 구성 부분이 많은 위험자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부유세는 대체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자본공급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비자나 요소공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갖는다.

결국 부유세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지울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는 가시적인 '부' 자체에 대해 담세력을 인정하여 독립적인 자산세를 운영함으로써 '부'의 불균등 완화 또는 심화 저지를 지향하고 있다. 부라는 원본 그 자체(stock)에 대한 직접적인 교정적 조세로서의 기능보다는 누진적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계층의 과세소득 중 최고세율구간소득(top slice)이 대부분의 근로소득보다 영속성이 강한 자산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진도를 강화할 경우 소득재분배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조세회피를 위한 절세전략 기획활동(tax planning)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보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명목적인 법정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의 인하와 함께 부유세를 도입하는 조세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부유세는 투기억제의 수단도 아니고, 부자를 못살게 굴기 위한 세금도 아니다. <표 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면세점을 그다지 높지 않게 설정할 경우 중산층도 부유세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유럽국가들의 현 부유세제도의 실상이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스위스의 경우 4인가족 기준 평균가구소득의 50~73% 수준으로까지 부유세 면세점을 낮게 설정할 경우 납세의 무자의 범위는 매우 넓게 나타난다. 따라서, 부유세 도

결국 부유세제도는 '부'에 대한 수익활동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자산소득으로 포착되지 않는 부유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통해서만 세부담을 지울 수 있는 소득과세적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데서 출발하였다.

<표 4> 국가별 부유세 납세의무자 범위

(단위: 자국통화단위, 유로)

	노르웨이	스위스 ²⁾	스페인	아이슬란드	프랑스
GDP(백만)	2,523,226	550,571	1,051,342	1,537,106	1,932,802
인구(명)	4,889,252	7,786,200	46,072,830	318,006	64,847,900
1인당 GDP	516,076	70,711	22,819	4,833,575	29,805
기초공제					
면세점 ¹⁾	700,000	71,000		70,000,000	800,000
개인			700,000		
자녀					
예금 등					
자가 주택					
개인자산	100,000				
과세방식	합산과세	합산과세	분리과세	합산과세	합산과세
4인 가족 가구기준					
가구소득 ³⁾	2,064,304	282,844	91,277	19,334,301	119,221
공제액 ⁴⁾	1,500,000	142,000	700,000	100,000,000	800,000
기초공제/가구소득	0.73	0.50	7.67	5.17	6.71

주: 1) 면세점은 개인(single) 기준임.

2) 스위스는 지방정부별로 다양함. 여기서는 취리히(Zurich)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임.

3) 1인당 GDP × 4인

4) 합산 또는 분리과세 적용기준

1. 각 국가별 통화단위는 노르웨이: NOK, 스위스: CHF, 스페인: EUR, 아이슬란드: ISK, 프랑스: EUR임.

2. GDP 및 인구는 2010년 기준

자료: 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OECD, Stat 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

입의 타당성은 현행 조세체계하에서 발생·실현되고 있는 자본이득, (배당·이자·임대 등) 자산소득 그리고 재산보유에 대한 각종 조세에 대한 공평성 및 비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판단해야 한다. 더

부유세 도입의 타당성은 현행 조세체제하에서 발생·실현되고 있는 자본이득, 자산소득 그리고 재산보유에 대한 각종 조세에 대한 공평성 및 비효율성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판단해야 한다.

육이 복지와 같이 특정 분야 정부지출 재원마련을 위한 목적세로서 부유세 도입을 검토한다거나, 국가채무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세입증대 목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려 한다면,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자산 등 과세베이스(tax base) 범위는 상당히 넓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데, 200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나타났듯이 특정 자산시장의 가격급등으로 시가평가액이 늘어나 과세대상인원이 급격히 늘어나 선거 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특정한 지출용도를 위한 재원조달수단(funding source)’을 제외한다면, 부유세 부과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부의 재분배’ 대 ‘소득의 재분배’ 중 어느 것인가? 만일 후자가 목표라면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의) 세전 및 세후 소득의 격차가 더욱 악화되었고 이것이 현행 조세들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유세 검토는 조세개혁(tax reform)을 위한 정책논의로서 적절한 시의성과 대안성을 가질 수 있다. 즉, ① 재산에 대한 공적 과세평가체계의 획기적인 개선, ② 부동산시장에서의 실지거래가액 확보, ③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편, ④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⑤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 등 재산 관련 조세제도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노력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기존의 틀 내에서 모색된 접근방법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부 및 자산의 소유분포 현황 및 변화

추이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부유세 부과를 통해 부의 분포구조를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데 따른 헌법상 재산권 문제나 해외 자산도피와 같은 조세회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과세기술적인 문제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으로 부유세라는 ‘정기적 보유단계 재산과세’가 갖는 기본적인 한계인 재산평가(valuation) 및 납부세액 확보(liquidity)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나라가 부유세 시행국들의 자진신고납부 방식을 따른다면,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부유세 납세의무자의 범위로까지 확대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썩어진다¹⁴⁾. 부유세를 도입하여 운영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 폐지한 4개국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과세대상자산의 평가균일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와 국제자본주의(global capital market)하에서 증대된 자본의 이동성을 자국의 국제경쟁력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소득세는 ‘잠재적 소비’(=실제소득+순자산가치 증가분)를, 소비세는 실제소비액을, 부유세(wealth tax)는 누적저축액(가치)을 즉, 누적된 잠재적 소비에서 누적된 실제소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부의 원본잠식이 없는 ‘가치증가분’의 누적액과 소비하지 않고 저축으로 남은 실제소득의 누적액의 합계가 한 시점에서의 순부(net wealth)라면, 부유세 도입은 최소한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저축에 대한 개인소득세로서의 과세대우, 그리고 상속·증여세 및 일반 지방재산세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부유세의 신규 도입 및 이에 따른 기존 세제의 개편 문제는 한 나라의 전체적인 조세체제 내에서 개인의 부와 이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 어

14) 우리나라에서 신고납부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의 총납세의무자 수는 2002년 경우 416만명이나 그 절반 정도인 49.2%에 해당하는 204만명 정도가 신고대상 과세인원이고, 이 중 92만명 정도만이 기장에 의한 신고이므로, 유럽식 부유세 부과를 위해 신고납부능력이 축적된 납세자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임.


떠한 과세 입장을 취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부 및 소득에 대한 과세가 우리나라의 조세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모두 손보게 되는 세계개혁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부유세 부과를 위한 세정인프라가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세원관리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사항이다. 과세당국에 포착되는 주요 가계자산 중 토지는 인별 소유상황이 1991년 토지공개념 세계 구축 이후 20년 가까이, 그리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후 5년여 동안 축적되어 포괄범위가 넓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자산도 단독주택 및 상업용 수익건물의 부속토지의 과소평가문제 등 타 부동산들과 평가 균일성 (assessment uniformity)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 실정이다. 고가 서화 및 골동품 등에 대한 현행의 기타소득을 통한 자본이득과세는 여전히 거래시장을 통한 시가 파악이나 소유현황이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20년에 이르지만 배우자나 자녀명의를 통한 분산 소유가 일반화되어 있고, 금융자산의 소유실태 및 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도 미비한 상황이다.

내국거주자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금융자산 소유현황 파악 또한 외환당국이나 국세청에 이미 노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2003년부터 투자목적용 취득이 허용된 이후 미화 300만달러까지 확대되어 외환송금정보가 한국은행을 통해 분기별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들에 국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과세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기존 조세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등을 모두 손보게 되는 세계개혁적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해서만 파악될 뿐, 구입자금용 해외송금이 과세당국에 노출되지 않는 ‘환치기’를 통한 취득부동산들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신고제도도 2011년 6월부터 도입되었으나, 신고실적을 살펴볼 때 과거 미신고 해외원천소득을 새로이 신고한 건수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산추출 과정이 불투명했던 납세자들에 대한 양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일반국민과 유권자들의 소득 및 부의 평등도에 대한 실제와 인식 간의 차이¹⁵⁾, 또한 바람직한 분포 정도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분배 관련 조세정책이 추구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접근방법론들 간의 우열이 부각될 수 있도록 국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초연구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과세자료가 과세당국에 의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뒷받침하는 추진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15) Alesina 등(2003)은 한 나라의 조세제도가 얼마나 재분배기능을 중시하느냐는 소득이나 부의 불균등분포의 실상(reality)보다는 인식(perception)에 좌우된다고 함. 그 결과 조세의 재분배 기능에 대한 요구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느끼는(perceived)’ 소득불공평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것임. 유럽국가들이 보다 강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원하여 보다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갖게 된 것은 이들 국가의 국민들이 소득분포가 운이나 정경유착 등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반면 미국에서의 재분배정책이 과거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미국민들은 소득격차가 개인별 노력과 능력의 결과라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임. 즉, 국민들이 공평성 및 형평성을 선호하는 것은 나라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현상에 대한 인식이 결국 조세제도 및 공공정책에 대한 상이한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임.

〈참고문헌〉

- 노영훈, 「종합토지세의 시행경험과 평가」, 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 노영훈 · 김진영, 『토지공개념제도 개편에 따른 토지세제 발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1. 4.
- 노영훈 · 김현숙,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5-06,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 노영훈, 「순부유세와 그 조세정책적 의의」,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6. 12.
- 노영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12.
- 이성욱 · 현진권, 『토지과표 공시지가 전환에 따른 토지 관련 지방세제 개편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12.
- Alesina, Alberto, and George-Marios Angeletos, “Fairness and Redistribution : U.S. versus Europe,” NBER Working Paper, No. 9502, 2003.
- IBFD, *European Tax Handbook*, 각 연도
 _____, *Taxation of Individuals in Europe 2011*, 2011.
- Klevmarken, Anders N., “On the Wealth Dynamics of Swedish Families 1984-1998,” Working Paper, Uppsala University, 2001.
- OECD, OECD.Stat Extracts(<http://stats.oecd.org/index.aspx>).
- _____, *Revenue Statistics of OECD Member Countries*, 각 연도

The Mirrlees Review

- Reforming the Tax System for the 21st Century -

I. 『The Mirrlees Review』 발간 배경과 취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jaej@kipf.re.kr)

영국 정부는 조세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78년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Meade¹⁾가 총괄하여 당시 영국의 세제, 특히 직접세가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한 종합보고서인 『The Meade Report』를 발간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영국 조세제도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연구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The Mirrlees Review』는 『The Meade Report』 발간 30주년을 맞이하여 동 보고서를 발간한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²⁾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Mirrlees³⁾를 편집 책임자로 하여 전 세계의 석학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하여, 영국의 조세제도가 21세기 개방경제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 개편방향을 제시한 종합 보고서이다. 동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인 James Mirrlees는 『The Mirrlees Review』를 통하여 영국의 조세제도가 『The Meade Report』가 발간된 1978년 이후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지난 30년 동안의 사회적·경제적·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재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이상적이지 못하고 정책목적과 조세제도 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⁴⁾.

- 1) 1977년 스웨덴 경제학자 Bertil Ohlin과 함께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수상함.
- 2)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는 영국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 영국의 조세 및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임.
- 3) James Mirrlees는 1936년 영국 태생의 경제학자로 1996년 “The Economic Theory of Incentive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의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
- 4) 1978년 Meade Report를 통하여 당시 보고서의 집필기관인 『Institute of Fiscal Studies』책임자 Dick Taverne은 보고서 집필의 이유로 “For too long... tax reforms have been approached ad hoc, without regard to their effects on the evolution of the tax structure as a whole. As a result many parts of our system seem to lack a rational base. Conflicting objectives are pursued at random; and even particular objectives are pursued in contradictory ways.” 라고 밝힘

『The Mirrlees Review』는 경제학적 사고를 조세제도 설계와 접목시켜 이상적인 조세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는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Mirrlees Review』는 총 5년의 기간에 걸쳐 집필된 『Dimensions of Tax Design』과 『Tax by Design』에 근간을 두고 있다. 『Dimensions of Tax Design』은 총 63명의 기고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약 1,100쪽 분량의 보고서로 2010년에 발간되었으며, 『Tax by Design』은 총 10명의 저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2011년에 발간된 400쪽 분량의 보고서이다. 『Dimensions of Tax Design』은 영국의 전체적인 조세제도와 조세항목별 기고자들의 경제학적인 접근과 조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며, 『Tax by Design』은 『Dimensions of Tax Design』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영국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Mirrlees Review』는 개방형 선진 경제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조세제도(Good Tax System)가 가져야 할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상적인 조세제도와 영국의 현행 조세제도의 차이점을 발견한 후,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영국 세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The Mirrlees Review』는 경제학적 사고를 조세제도 설계와 접목시켜 이상적인 조세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하며, 그 결과는 영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 관련 이슈가 국민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다. 『The Mirrlees Review』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특성은 동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지 영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요건이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자연스럽

게 세계개편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것인바, 영국의 『The Mirrlees Review』가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상적인 조세제도(A Good Tax System)

1.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특성

『The Mirrlees Review』에서 정의하는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더 많은 조세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은 정부나 납세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지출비용보다 높은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은 조세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정부와 납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하는 행동으로 인한 사회후생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The Mirrlees Review』에서 주장하는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누진적(progressive)이며 중립적(neutral)인 체계(system)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

가. 체계성(Considering System as a Whole)

『The Mirrlees Review』는 세계개혁 시 조세제도(Tax System)를 하나의 큰 틀로 인지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제도는 전체적인 공공지출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정 목적과 세수를 연계한 목적세는 가급적이면 회피해야 된다는 것이다. 모든 조세항목이 항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며, 조세제도가 전반적으로 누진적(progressive)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면 모든 조세항목이 누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5) James Mirrlees는 『The Mirrlees Review』-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for reform에서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특징은 “The core—though not the entirety—of our proposal is for a progressive neutral tax system. Each of the three key words of that formula—‘progressive’, ‘neutral’, and ‘system’—is important”라고 밝힘

소득세 및 소득에 따른 정부보조금 및 복지혜택을 통하여 정부는 소득재분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등의 다른 조세 항목들은 꼭 누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나. 중립성(Neutrality)

『The Mirrlees Review』는 이상적인 조세제도에서 조세항목은 최대한 중립적(neutral)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유사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간단한 조세제도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슷한 경제활동에 대하여 조세제도가 각각 달리 적용된다면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등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담배나 술 소비와 같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경제활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나, 연금저축과 같이 사회에 긍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특별공제와 같이 특별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립성의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얻는 장점과 단점을 철저히 비교해야 한다.

다. 누진성(Progressivity)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가장 효율적으로 누진적(progressivity)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 조세제도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국가경제의 소득분배구조나 소득구간별 조세와 정부보조금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responsiveness)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체계를 통한 소득재분배와 경제활동 참여는 항상 상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납세자에 대한 인구학적인 요인과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The Mirrlees Review』에서 정의하는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더 많은 조세수입을 창출하는 동시에 경제적·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가장 이상적인 누진세율은 납세자의 단기적 소득구조가 아닌 납세자의 일생의 자원(a Person's Lifetime Resources)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비록 현행 조세제도의 누진성은 납세자의 연소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누진성은 납세자의 일생의 자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납세자의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득은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비수준과 비슷하며 이를 반영한 세율을 통하여 이상적인 누진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자의 일생의 자원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기 소득과 소비에 기반을 둔 세율이 보완적인 성격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누진성을 이루기 위하여 소득과 소비의 조합을 신중히 고려하여 세율을 디자인하여야 한다.

〈표 1〉 이상적인 조세제도의 특징

특징	비고
체계성 (considering the system as a whole)	-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조세개혁 시 하나의 큰 틀로 인지하여야 함 · 사회의 전체적인 공공지출을 충족시켜야 하며, 특정 공공지출 항목을 위한 특목세의 지정은 최대한 피해야 함
중립성 (seeking neutrality)	- 비슷한 목적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어야 함 · 유사목적의 경제활동에 다른 조세 조건이 적용된다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으로의 활성화 등의 왜곡이 생김
누진성 (achieving progressivity as efficiently as possible)	- 국가경제의 소득분배구조나 민감성(responsiveness)을 고려한 세율을 통하여 누진성을 이루어야 함 · 납세자의 연소득에 기초한 세율이 아닌 납세자의 일생의 자원에 기반을 두어야 함

자료: 『The Mirrlees Review』: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Reform (2011)

이상적인 소득세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체계를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조세항목별 이상적인 조세제도

가.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Taxes on Earnings)

이상적인 개인소득세 체계는 경제의 효율성과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상적인 소득세 체계는 한 나라의 세전 소득분배구조(Pre-Tax Distribution of Earnings)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세 정책이 소득규모 및 인구집단별로 그 반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므로 효율적인 조세제도의 성립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득재분배와 근로의욕 간에는 필연적인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득구간별 납세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득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재분배가 개선된다면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은 감소할 것인데, 이는 인구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가 소득효과(Income Effect)보다 높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가 고율의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이유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효과가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와 정부 지원혜택 등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한계세율 변화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득구간별 납세자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세 변화를 통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을 펼친다면 납세자

들은 결국 납부할 세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신고소득을 낮게 책정하는 등 비생산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주로 재분배 정책을 통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으로 이전하여 사회의 형평성을 도모하지만, 이러한 재분배 과정은 납세자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상적인 소득세 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세 체계를 통하여 경제의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다. 즉, 누진적인(progressive) 소득세 체계와 투명(transparent)하고 일괄적(coherent)인 세율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상적인 소득세 체계는 단순(simple)하여야 하며, 개인소득은 그 원천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 원천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득세 체계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납세자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된 구조와 탈세 가능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혜택 역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하나의 소득세법 안에 총괄적인 공제제도와 보조금제도가 있어야 하며, 세율구간 역시 2~3단계 구간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전반적으로 과세대상소득의 민감도(responsiveness)는 세율과 더불어 과표구간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므로, 과표구간을 결정할 때는 납세자의 소득세 변화에 대한 민감도와 소득구간별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소득세 체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과세대상소득 산정 시 공제항목으로 인정해야 하며, 비용에 대한 세법적용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경제활동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운영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납세자들은 「저비용-저소득(Low-Cost-Low-Revenue)」적인 경제활동에 투자가 편중될 것이고, 「고비용-고소득(High-Cost-High-Revenue)」적인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등 경제구조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나. 간접세(Indirect Taxes)

간접세란 재화 및 용역 소비에 적용되는 조세를 뜻하며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물품가격 등을 통하여 담세자에게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간접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VAT), 물품세(Excise Duty), 인지세(Stamp Duty) 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영국의 전체 조세수입 중 30% 수준을 차지하며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 비중이 큰 조세 항목 중 하나이다. 소비자에 있어 소비(consumption)와 비용지출(expenditure)은 같은 의미이므로 간접세의 가장 이상적인 과세기준(Tax Base)은 재화 및 용역의 소비금액이다.

1) 부가가치세(VAT)

현재 영국의 부가가치세는 특정 상품의 마지막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사업체의 경우, 생산을 위한 재화 및 투입물(inputs)은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주택 등 내구재의 경우는 해당 재화의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 인지세(Stamp Duty) 등의 간접세가 부과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을 위하여 구매되어 생산과정에 투입된 투입물(inputs)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적용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이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투입물(inputs)에 대한 간접세의 적용은 생산효율(production efficiency)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효율이란 한 경제가 특정 재화의 추가적 생산에 있어서 다른 재화 생산의 희생 없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세금이 없는 추상적인 시장경제에서 생산과정에 투입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은 각 기업이 생산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생산과정에 사용된 투입물에 간접세를 부과한다면 기업의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구조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산과정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곧 생산효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⁶⁾. 더욱이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은 상대적으로 그들의 소득수준보다 재화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모든 단계에 걸쳐 징수된 간접세 수준은 소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징수된 간접세 수준과 비슷하다.

효과적인 부가가치세 구조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차등세율이 적용된다면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비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비에 대한 동일한 부가가치세율 적용은 조세제도의 간편화를 제고하여 납세자의 세금정산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특정 산업의 로비(lobby)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수 있다. 담배·술 등 재화의 지속적인 소비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재화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일반 재화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거래세(Transaction Taxes)

영국 거래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지세(Stamp Duty)와 주식 및 환전 거래에 부과되는 'Tobin Tax'와 같은 금융거래세가 있다. 하지만 거래세(Transaction Taxes)는 조세 역사 중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⁶⁾ Diamond and Mirrlees (1971)는 이상적인 조세제도도 생산효율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함.

영국에서 'Tobin Tax'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세 역시 인지세(Stamp Duty)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가) 인지세(Stamp Duty)

주택거래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⁷⁾는 특정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마다 발생하는 세목으로 상대적으로 소유권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의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경제학적으로 사회후생은 특정 자산에 대하여 가치를 가장 높이 부여하는 경제주체가 소유할 때 극대화되는데, 인지세의 부과 등을 통하여 이러한 흐름은 왜곡된다. 주택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로운 거래(Mutually Beneficial Trade)이지만, 인지세로 인하여 자산 가치에 의한 소유권 결정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택 투자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인지세는 주택거래에 대한 이익이 아닌 주택자산 가치에 대한 조세비용이기 때문이다.

나) 'Tobin Tax'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세

영국에서 'Tobin Tax'와 같은 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세 역시 인지세(Stamp Duty)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거래총액에 따라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Tobin Tax'는 투기성 투자와 이로 인하여 수반되는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하지만, 주식거래의 경우 주택거래에 대한 인지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은 주식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에 악영향을 주며 금융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될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Tobin Tax'와 같은 금융거래세는 금융산업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입을 거두어 들

인다는 취지로 여론의 동의를 얻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세비용은 운영비용에 해당되어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다. 저축과 부에 대한 과세(Taxation of Savings and Wealth)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른 종류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한 공제제도가 선행되어야 하며 납세자들이 정상수익(Normal Return)보다 높은 초과수익(Supernormal Return)을 실현하였을 때 해당 초과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축이나 투자는 미래의 소득을 위하여 현재의 소비를 희생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때 현재 희생되는 소비는 미래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상수익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상수익에 대한 과세는 저축 및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의 소비 희생에 대한 보상인 정상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발생할 소비가 조세비용 등으로 인하여 현재 발생하는 소비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결국 저축·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현재 시점에서 저축·투자 활동을 하는 납세자는 동일 시점에 저축·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저축·투자를 하는 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납세자의 일생의 자원 소비량을 비교하였을 때, 각각 비슷하거나 동일 수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상수익에 대한 과세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다.

정상수익에 대한 비과세 처리는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회피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 대부

7)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본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량의 경제자원(resources)이 금융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과 최대한 동일한 세율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정책방향은 결국 특정 금융자산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단초를 제공하며, 저축과 자본투자 결정 시 왜곡을 야기한다.

부의 이전에 대한 조세(Wealth Transfer Taxes)의 경우, 납세자의 일생 동안 발생한 상속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속시기 등으로 인하여 차등세율이 적용될 경우 조세포탈 등 납세자의 비생산적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라.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1) 기후변화에 대한 과세(Taxation and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한 이상적인 조세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로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잠재적 규모나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향후 진행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과세의 비용기준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와 온실가스(GHGs)에 대한 일관된 비용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세제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측정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ETS) 등이 관여하고 있고, 가스배출량이 가장 심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등인 것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2) 교통량에 대한 과세(Taxes on Motoring)

효율적인 교통세는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스푼오버(spillover) 비용 파악 등을 통하여 과세기준(Tax Base)을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교통혼잡세(Road

기후변화에 대한 과세의 비용기준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와 온실가스(GHGs)에 대한 일관된 비용측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조세제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Congestion Tax)가 교통량에 대한 세목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교통혼잡세의 납세대상자는 자동차 운행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산적 오염물(flow pollutant)을 배출하는 자이며, 과세부담물은 연료사용에 비례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량에 대한 조세는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현재의 연료사용 비율에 따른 과세에서 발전하여 자동차 연비, 이동거리 등도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스푼오버 비용에 대한 연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이를 통한 사회적 복리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마.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Taxing Corporate Income)

법인세의 과세 대상자는 다국적 대기업에서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므로, 법인세에 대한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업의 크기 및 경제활동 영역 등을 고려하여야만 이상적인 법인세 제도를 정립할 수 있다.

1) 국제경제에 기초한 법인세(Corporate Taxation in an International Context)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다수의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해당국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이나 세액을 해당국의 조세제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

이상적인 법인세 제도는 이상적인 법인세율의 책정을 통한 조세수입 증가와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즉, 다국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자회사 간 거래에 발생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조정하여 영업이익의 수준을 조정하거나 법인세율을 고려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의 조정을 통하여 과세대상 수입액을 낮추고 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약을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경제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상적인 법인세 제도는 이상적인 법인세율의 책정을 통한 조세 수입 증가와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효율적 조세제도는 자국민의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다국적기업이 기대 수익률 3%인 투자계획이 있는데 해당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인하여 세전 기대수익률이 최소 4%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가정할 때, 다국적기업은 이전활동 등을 통하여 조세부담이 낮은 다른 나라의 투자비용을 높여 기대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때, 주주가 얻는 수입은 투자국가의 구성 비율에 상관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근로자당 생산량의 감소를 야기하여 근로자의 실질임금(real wage)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며, 생산력의 감소는 사회후생(social welfare)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질임금의 감소는 근로 소득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 소기업에 대한 조세(Small Business Taxation)

소기업에 대한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경제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 개인 자영업, 소규모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기업(Small Business)은 크게 개인자영업자(Self-Employment, Sole Traders)와 소규모 법인회사(Small Incorporated Companies)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소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는 기업의 법적 형태(entity)에 따라 세법상 차등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주로, 개인자영업(Self-Employment, Sole Traders)에서 발생한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적용받으며, 소규모 법인회사(Small Incorporated Companies)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법상 차등 대우(Tax Treatment)는 자국의 경제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왜곡된 시장구조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자영업자의 개인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세부담이 높다고 가정하면, 사업자는 법인회사 설립을 통하여 투자에 대한 소득을 배당금의 형태로 취할 것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 있다. 효율적인 조세제도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Ⅲ. 영국 조세제도의 개혁방향

1.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Taxes on Earnings)

가. 소득세율 결정 시 고려사항

1)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세율구조 확립(Transparent and Coherent Rate Structure)

효율적인 소득세 체계는 세율구간이 투명(transparent)하고 일관성(coherent)을 가져야 한다. 이는 납세자가 세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경

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비생산적인 활동과 그로 인한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전반적으로 단순한 소득세 체계의 성립은 사회변화에 따른 소득세 체계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현재 영국의 소득세 체계는 세율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납세자가 납세정보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지 않으며, 인적공제 등을 통하여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과 평균세율(Average Tax Rate)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현재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해당 납세자의 소득이 2만 2,900파운드 이상일 경우 초과 1파운드당 50펜스씩 감소하여 결국 65세 이상의 납세자의 소득금액이 2만 8,930파운드⁸⁾ 이상일 경우 해당 연령층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의 추가혜택은 없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는 곧 연소득이 2만 8,930파운드보다 높고 연령이 65세 이상인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30%에 이르게 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영국 내 납세자 중 이러한 정보를 용이하게 이해하는 납세자는 많지 않다.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과표구간별 세율 결정 시 소득 구간별 납세자 인원 및 해당 납세자의 세율에 대한 민감도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인적공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한계세율 등에 왜곡이 발생한다면 정부 정책 역시 복잡해지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일관성(consistency)을 지녀야 한다.

소득수준별로 2~3단계 정도의 세율구조(Tax Rate Structure)와 하나의 통합적인 인적공제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단순화된 소득세 체계에서 과세기준선(threshold)을 조정하는 것이 인적공제 등의 변화 등을

이상적인 조세제도는 과표구간별 세율 결정 시 소득구간별 납세자 인원 및 해당 납세자의 세율에 대한 민감도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통하여 복잡한 소득세 체계에서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⁹⁾. 예를 들어, 1992~1993년, 2007~2008년에 걸쳐 도입되었던 초기세율(Starting Rate)¹⁰⁾에 의한 조세수입의 변화는, 단순히 해당 소득구간의 하위구간에 대한 인적공제의 인상과 상위 소득구간에 기본세율(Basic Rate)을 적용하는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소득층의 민감성(Responsiveness)을 고려한 효율적인 소득세율 책정

영국 조세제도(Tax System)는 누진성(progressivity)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영국의 소득세 과표구간 중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15만파운드 이상 구간이며 세율은 50%이다. 영국 국세청은 총납세대상자 인원인 4,900만명 중 27만 5천명이 해당 최고세율 과표구간에 포함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납세대상자 중 고소득층의 인구구성비는 높지 않으나 영국의 소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변화에 대한 고소득층의 민감성(responsiveness)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고소득층은 근로의욕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부과된 조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 변화의 민감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소득층의 행동 변화의 예

8) 75세 이상의 납세자는 연간 소득액이 2만 9,230파운드일 경우와 같음

9) The Mirrlees Review: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for Reform(2011)에서는 이상적인 소득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What does a progressive, neutral tax system look like? When it comes to income taxation, there is a strong case for keeping things simple: a single tax on income with an allowance and (say) two or three rates, combined with a single benefit to support those with low income and/or high needs."

10) A rate of income tax below the basic rate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조세수입 확보는 높은 세율의 부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로는 보수(remuneration)형태 변형, 소득에 대한 은퇴연금 부담금 및 자선단체 기부금 인상, 배당금을 통한 자본이득 형태 변환, 법인체 설립, 소득 불법은닉 및 이민 등이 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정책 변화에 따른 행동 및 민감성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행동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이 실질적으로 조세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조세제도 변화와 고소득층의 행동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조세수입 확보는 높은 세율의 부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Tax Base)을 강화함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과세기반의 강화를 통하여 특정 수입형태로의 전환을 통한 조세포탈의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면세소득에 대한 범위를 축소하여 고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 체계의 변화뿐 아니라 다른 조세항목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상속세(Inheritance Tax) 등 자본소득세와의 협력¹¹⁾은 효율적인 소득세 체계 성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와 더불어 고소득층의 복지상태 역시 중요하므로 세수 최대화가 가능한 세율보다는 이보다는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의 통합

1) 필요성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이 통합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성격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납세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국영보험제도는 도입 당시 납부금의 정도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어 소득세와 분리되었으며, 국영보험기여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었다. 이는 동 제도가 도입 당시 「Contributory Principle」하에 설계되어 납세자와 고용자가 모두 국영보험기여금 납부의 책임을 지는 제도였기 때문이다¹²⁾.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조세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의 제도적 차이는 크지 않게 되었다. 영국의 조세통계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완전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0년이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부담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데 비하여 혜택은 납세자 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영보험기여금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납부금액이 증가하는 누진적(progressivity)인 수익재분배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대효과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의 통합을 통하여 기대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소득세와 국영보험의 분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부담률(Tax Burden)¹³⁾은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11) 자본소득과 일반소득에 대한 동일한 세율 및 과세기준(Tax Base) 적용 등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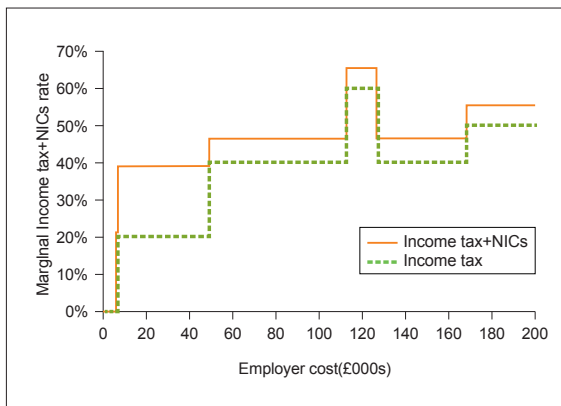
12) 이전 정부가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 통합에 반대한 입장을 취한 이유기도 함.

13) 국민부담률

Contribution)의 합이다. 하지만 현재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의 과세표준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2개의 기준에 따라 납부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장부정리의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 통합을 통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의 경우 소득세 징수과정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조세통계에 따르면 소득세 1파운드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징수비용은 0.35펜스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영국은 소득세와 국영보험기여금의 통합을 통하여 소득세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국의 소득세율은 소득별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누진성(progressivity)을 달성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국영보험기여금을 감안할 경우 누진성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의 소득세 구조는 세율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총선을 통하여 집권한 영국 노동당(Labour Party)의 경우, 소득세율 동결을 공약하였으나 집권 이후 국영보험 부담률을 인상하였다.

[그림 1] 소득세율과 국영보험부담비율 비교



출처: 『Tax by Design』 (2011)

소득세 징수과정을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통계에 따르면 소득세 1파운드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징수비용은 0.35펜스로 나타났다.

다. 복지혜택의 통합(a Single Integrated Benefit)

1) 필요성

현재 영국의 복지체계는 크게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정부보조금(Means-Tested Benefits)과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정부보조금으로 나뉘어 있다. Means-Tested Benefits의 예로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 구직자수당(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등이 있으며,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는 복지수당으로는 아동복지(Child Benefit), 국가연금(State Pension) 등이 있다. 이러한 신청기준의 분리로 인하여 다수의 가구에서 복수의 복지혜택을 신청하고 있다. 즉, 복지혜택의 다양화를 통하여 더 유연한 복지혜택 체계를 설립한다는 도입 당시의 목적과 달리 현재는 다양화된 복지혜택으로 인하여 조세제도(Tax System)의 체계성이 저해되고 있다. 각각의 복지혜택은 각각의 신청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가지고 있으며 자산조사 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가구의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 매우 높게 측정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자신이 신청 가능한 복지혜택의 범위를 혼동할 수 있으며, 장부정리와 신청절차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행정비용(Administration Cost)이 불필요하게 증가하고 있다. 납세자의 행정비용은 정부기관의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으로 경감할 수 있으나, 해당 공유체계 설립비용 역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조세행정비용 중 하나이다.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환경 및 특성에 맞는 실효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기대효과

복지혜택의 통합을 통하여 복지혜택이 조세제도 내에서 갖는 일관성(coherent)과 투명성(transparency)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가구의 복지수요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경우, 통합된 복지혜택을 통하여 기존에 복지프로그램마다 각각 신청함으로써 부담하였던 행정비용의 감소와 복지혜택 신청에 대한 반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혜택을 통합함으로써 복지혜택 신청이 용이해지며, 특정 상황에 처한 가구가 아닌 전 국민이 복지혜택 대상자가 되어 효율적인 국민 참여가 기대되며, 정부의 경우 정책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 납세자의 상황 및 일생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근로장려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환경 및 특성에 맞는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득세 부담비용과 수당혜택은 납세자들의 근로의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는 효율적인 조세제도 성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수당혜택 수준과 근로의욕 간의 관계는 'Participation Tax Rate(PTR)¹⁴⁾', 소득세 부담수준

과 소득 간의 관계는 '실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납세자의 소득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률의 증가 정도를 측정하는 실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을 통하여 납세자들의 소득수준과 이를 통한 행동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실효한계세율은 소득공제 등의 효과를 반영한 세율이므로 납세자 개인마다 그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실효한계세율이 100% 이상일 경우, 추가소득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수준을 인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며, 저소득층 납세자들의 실효한계세율이 100% 이상일 경우 이를 복지의 함정(Welfare Trap)이라고 정의한다.

소득세 체계를 통합하여 납세자 간 효율적인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납세자들이 처한 상황과 조세 변화에 대한 민감도(responsiveness)를 고려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Tagging(꼬리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Tagging(꼬리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소득세 체계의 복잡성, 자료수집을 위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납세자 간 차별대우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효율성 제고로 인한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면 해당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4) 본문에서는 'Participation Tax Rate(PTR)'을 'We measure the incentive to be in paid work at all by the participation tax rate(PTR), the proportion of total earnings taken in tax and withdrawn benefits,'라고 설명하는데, 납세자들의 근로참여 여부를 측정하는 'Participation Tax Rate(PTR)'은 조세대상 근로소득과 정부보조금의 차액이 납세자의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식은 다음과 같음.

$$PTR = 1 - \frac{\text{Net Income in Work} - \text{Net Income out of Work}}{\text{Gross Earnings}}$$

2. 간접세(Indirect Taxes)

가. 부가가치세(VAT)

1) 면세항목 축소 또는 폐지

영국 정부는 현재 다수의 소비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 인하세율(5%) 및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¹⁵⁾. 영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세율 인하혜택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목적과 특정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간과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정책적 효율성이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연료 및 전기소비는 인화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아동복(children's clothing)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교육용 아동 장난감 등은 인화된 세율을 적용받는 등 모순이 생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지출비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10~2011년 기준 부가가치세(VAT) 면세혜택을 통하여 약 553억파운드 정도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세율 인하혜택 등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이 특정 제품 혹은 사업에 주어진다면 탈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면세사업체의 기준이 매년 실질규모 7만파운드 이하로 설정되어 실질규모를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비용을 과대신고하는 방식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세율
인하혜택 등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표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인하세율, 면세 관련 비용 추산치(2010~2011년 기준)

(단위: 백만파운드)

소비항목	비 용
영세율	
식료품(Food)	14,250
신축주택 건설비(Construction of New Dwellings)	5,400
국내 대중교통(Domestic Passenger Transport)	3,250
국제 항공(International Passenger Transport)	150
책, 신문, 매거진(Books, Newspapers, and Magazines)	1,600
아동복(Children's Clothing)	1,300
수도 및 하수(Water and Sewerage Services)	1,700
의약품(Drugs and Supplies on Prescription)	1,850
자선단체 공급품(Supplies to Charities)	200
특정 조선 및 항공기(Certain Ships and Aircraft)	550
장애인 차량 및 보급품(Vehicles and Other Supplies to People with Disabilities)	450
인하세율	
국내 연료 및 전기 소비(Domestic Fuel and Power)	4,250
여성용품(Women's Sanitary Products)	50
에너지 절약 용품(Energy-Saving Materials)	50
주거 개조 및 수리(Residential Conversions and Renovations)	200
면세	
국내 주택 임차료(Rent on Domestic Dwellings)	4,850
상업용 부동산 공급(Supplies of Commercial Property)	350
교육(Education)	1,150
의료 서비스(Health Services)	1,500
우편 서비스(Postal Services)	200
장례비용(Burial and Cremation)	150
금융 및 보험 서비스(Finance and Insurance)	9,050
도박 및 복권세(Betting, Gaming, and Lottery Duties)	1,150
면세사업체(Businesses below Registration Threshold)	1,650
합계(Total)	55,300

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체 등록조건은 2010~2011년 기준 영업실적이 7만파운드 이하의 사업체는 VAT 납부 여부를 선택(optional)할 수 있음
자료: HMRC Statistics, Table 1.5(http://www.hmrc.gov.uk/stats/tax_expenditures/table1-5.pdf)

15) 영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2011년 1월 기준 20%임.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한 탈세를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또는 ‘회전목마 사기’라
부르며 실제로 2000년대 중반 EU에서
만연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2) 수출입품에 대한 효율적인 부가가치세(VAT) 적용

가)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 준수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적용방식은 크게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과 「생산지국 과세원칙(Origin Principle)」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란 최종소비가 발생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방식이며,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란 생산이 발생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영국의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를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 적용범위가 동일하다면,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통하여 동일한 무역거래 형태(Trade Pattern)와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이 발생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하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개방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에 다수 나라의 자원이 이용되며, 따라서 부가가치가 국가별로 정확히 어떠한 비율로 발생하였는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와 더불어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를 경우, 기업이 생산활동에 대한 왜곡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재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비지국 과세원칙 하에서는 소비가 발생한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따르므로 생산 장소에 따른 왜곡된 의사결정으로부터 자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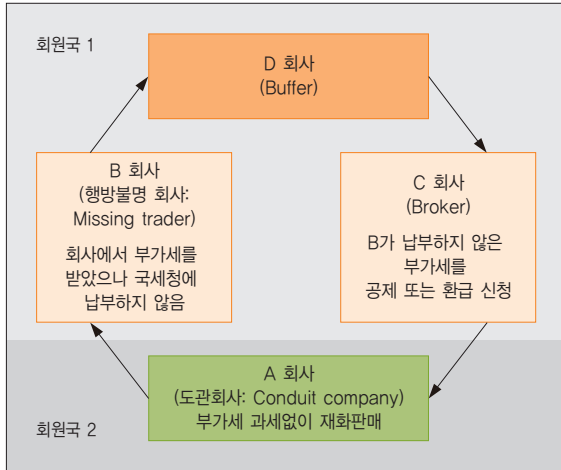
우며, 소비국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나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의 소비에 대하여 동일한 부가가치세(VAT)를 부담해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세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나)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ing)를 통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적용

현재 영국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업자로 하여금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수출업자는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생산과정에 투입된 투입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이용한 탈세를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Missing Trader Frauds)’ 또는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라 부르며 실제로 2000년대 중반 EU에서 만연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2006~2007년 기준으로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에 의하여 25억~35억파운드 정도의 세금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기거래와 관련된 사회문제가 가장 극성을 떨었던 2006년 상반기에만 총무역거래량 중 207억파운드 정도의 거래가 사기거래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2] 행방불명 무역업자 사기 또는 회전목마 사기의 작동방법



출처: 『Tax by Design』 (2011), p. 187.

이러한 부가가치세 관련 무역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수출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영세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탈세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영국 국세청은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모든 제품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음으로써 탈세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출제품에 대한 영세율 폐지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상충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ing)를 도입하여 탈세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는 종이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부과되고 있는데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ing)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입자가 납부자가 되어 부가가치세(VAT)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주택투자에 대한 조세는 주택의 현재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투자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인지세(Stamp Duty) 및 지방세(Council Tax) 폐지

주택투자에 대한 조세는 주택의 현재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택투자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¹⁶⁾. 인지세(Stamp Duty) 및 지방세(Council Tax)는 주택투자에 대한 흐름을 저해하므로 폐지되어야 하며, 이들의 성격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거래세(Housing Service Tax)의 도입을 통하여 주택투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주택거래세의 과세기준(Tax Base)은 주택의 현재가치에 두어야 하며, 이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택 감정가격을 수시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VAT)와 마찬가지로 단일세율(Flat Percentage)이 적용되어야 하며 주택의 가치 및 거주자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추가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더불어 영국 내 주택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저축과 부에 대한 과세(Taxation of Savings and Wealth)

가. 저축에 대한 과세(Taxation of Savings)

1) 일반은행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조세의 중립성(neutrality) 원칙을 고려할 때,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일반 이자소득은 면세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 이자소득은 납세자의 소득에 따라 표준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조세 중립성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납세자가 실현하는 일반 이자소득은 예측된

16) 『Tax by Design』에서는 'Housing Service Tax'라는 새로운 개념의 조세제도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Housing Service Tax'의 특징을 요약함.

**조세제도의 중립성 유지와 투자촉진을 위하여
위험자본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보상으로 정상수익(Normal Return)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을 통하여 초과수익(Supernormal Return)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정상수익은 저축을 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회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용공제를 감안할 때, 저축의 기회비용에 대한 공제는 조세항목 간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납세자들의 저축을 장려할 수 있다. 시중은행으로부터 발생한 일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으로 발생한 비용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간접세 도입을 통하여 충당될 수 있다.

2)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성격의 간접세 도입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특화된 간접세를 도입한다면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산출세액 결정방법과 관리의 용이성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부가가치세를 금융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예금 및 출금 시마다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어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서비스에 특화된 산정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매년 금융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흐름을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과세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간접세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 부가가치세(VAT)와 적절한 상호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와 소비에 대한 거래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기존 부가가치세의 면세품목과 중

복되지 않는다.

3) 위험자본(Risky Assets)에서 발생한 초과수익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식 채택

투자자들이 위험자본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시중 은행에서 발생하는 일반 이자소득과는 달리 초과수익(Supernormal Return)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 때 조세제도와 소득원천의 중립성을 위하여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자본이득에 대하여 광범위한 면세혜택이 적용된다면 초과수익에 대한 과세를 간과하여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초과수익(Supernormal Return)에서 정상수익(Normal Return)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험자본투자에 대한 비용으로 처리하여 공제하는 방식인 수익률 공제제도(Return-of-Rate Allowance)의 도입을 통하여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수익에 대한 공제를 통하여 투자자들의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아 위험자본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기대된다.

위험자본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조세제도의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만약 근로소득과 자본이득소득에 대하여 차등세율이 적용된다면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의 왜곡과 조세제도 내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전할 수 있다.

법인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기업관련 자본에 대한 소득의 경우 이미 부과된 법인세(Corporation Tax) 등을 고려하여 인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는 세부담 후 배당되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중립성 유지와 투자촉진을 위하여 위험자본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손실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손실에 대한 조세처리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

험자본투자에 대한 투자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현재 영국의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Exempt-Exempt-Taxed」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Exempt-Exempt-Taxed」 원칙이란 납세자와 고용주의 납부금액에 대하여 면세하고, 연금액 투자수익에 대하여 면세한 후, 납세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방식인데 이는 연금소득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연금소득은 일반적으로 은퇴인구의 소득 중 주택수익을 제외하였을 때 가장 높은 소득원천으로, 은퇴인구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연금수익에 대한 현행 「Exempt-Exempt-Taxed」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나, 동시에 현재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의 납부금에 대한 혜택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의 국영보험 수령금액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수령시에도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특혜는 조세제도(Tax System)의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상속세(Inheritance Tax)

현행 상속세(Inheritance Tax)제도는 상속자의 사망시점과 부가 이전된 시점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이 적용되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혜택도 허용되어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상속세제도의 수립은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의 가치를 기준으로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납세자의 일생을 기준으로 부가 이전된 시점마다 동일한 상속세 기준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통한 추가 조세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효율적인 상속세제도의 수립은 상속인에게 이전된 부의 가치를 기준으로 피상속인과의 관계 및 상속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4.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가. 탄소세(Carbon Tax)

에너지발생 시 수반되는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은 크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cheme), 기후변화세(Climate Change Levy),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enewable Obligation) 등으로 구분되나, 탄소배출에 대한 각 제도들의 비용책정 방식은 산업부문, 배출장소, 배출량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표 3〉 탄소배출에 대한 조세비용 비교

(단위: gram(g), pence(p), 파운드)

연료	이산화탄소 배출량 g/KWh	RO p/KWh	CCL p/KWh	ETS p/KWh	내재조세 (Implicit Tax) p/KWh	내재조세 (Implicit Tax) £/CO ₂ 톤
사업용 전기						
석탄(Coal)	910	0.36	0.47	2	2.83	31.13
천연가스(Gas)	393	0.36	0.47	0.86	1.7	43.14
핵발전(Nuclear)	0	0.36	0.47	0	0.83	-
재생에너지 (Renewables)	0	0	0	0	0	-
사업 난방용 가스	184	0	0.16	0	0.16	8.91
주거용 전기						
석탄(Coal)	910	0.36	0	2	2.36	25.96
천연가스(Gas)	393	0.36	0	0.86	1.22	31.18
핵발전(Nuclear)	0	0.36	0	0	0.36	-
재생에너지 (Renewables)	0	0	0	0	0	-
주거 난방용 가스	184	0	0	0	0	0

주: RO -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CCL-기후변화세, ETS-탄소배출권거래제
 자료: Tax by Design (2011), p. 253

교통혼잡세(Congestion Tax)의 목적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탄소배출에 대한 현재의 비용산정방식은 일관성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방식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주거 난방가스(Domestic Gas Consumption for Heating)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탄소배출에 대한 면세 혜택은 타당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납세자는 에너지 소비의 용도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조세부담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에 대한 효율적인 비용 산정과 이산화탄소 배출 측정방식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에너지소비와 탄소배출 그리고 더 나아가 탄소배출과 기후변화 간의 명확한 비용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나. 교통혼잡세(Congestion Tax)

교통혼잡세(Congestion Tax)의 목적은 교통량 증가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운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교통혼잡세는 자동차 연료소비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반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비교하였을 때 인하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교통혼잡세는 운전자가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독가스 배출량, 운전시간 및 장소를 고려한 교통혼잡과 소음에 대한 비용,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외부성 비용에 기초하여 과세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인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외부성 비용에 대한 연구와 자동차 연료소비의 효율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연구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표 4> 운전에 대한 한계 외부성 비용 추정치(1998년 기준)

(단위: 펜스/km)

외부성종류	최저추정치	최고추정치
운전자금(Operating Costs)	0.42	0.54
사고(Accidents)	0.82	1.4
환경오염(Air Pollution)	0.34	1.7
소음(Noise)	0.02	0.05
기후변화(Climate Change)	0.15	0.62
교통혼잡(Congestion)	9.71	11.16

자료: Tax by Design (2011), p. 270

5. 기업에 대한 조세(Business Taxes) 개선방향

가. 법인세 과세기준에 대한 개선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 산정 시 정상수익(Normal Return) 혹은 기대수익률(Required Return)에 대한 공제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자본 투명성 제고 및 투자 장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상수익 혹은 기대수익률에 대한 공제방식은 크게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조세(Cash-Flow Tax)', '기업자본 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종합법인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등 3가지가 있다.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조세(Cash-Flow Tax)'에서 과세기반은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용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제방식을 자기자본조달비용(Equity Financing)에 대한 공제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법인세 체계에서 존재하는 차입자본조달방식(Debt Financing)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방식이다. 즉, 자기자본 조달 시 발생한 비용을 자본비용(Capital Expenditure)이 아닌 경상비용(Current Expenditure)으로 처리하여 자본에 대한 조세처리(Tax Treatment)도 일반적인 현금흐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업자본공제(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방식이란 기업이 주식발행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을 이용

한 자금조달을 했을 경우, 해당 기회비용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자본공제는 기업의 전년도 기말자산(Closing Stock)에 기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며,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감가상각비용의 조정 등을 통하여 납부 세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종합법인소득세(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방식이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 산정 시 간단하게 이자비용에 적용되는 면세혜택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실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혜택 폐지로 인하여 기업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Required Return)이 증가하고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용에 따라 기대수익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투자자산별 감가상각방식과 기대수익률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과세기준(Tax Base)을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 원천소득 종류별 차등세율 적용 폐지

근로소득자(Employee), 자영업자(Self-Employed), 소기업 소유자(Owner of Small Company) 간에 차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못하고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초래한다. 자영업자와 소기업 소유자는 그들의 경제활동 범위에 있어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자영업자는 소득세, 소기업 소유자는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소득세 납부자와 법인세 납부자 간 국영보험기여금 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만약 동일한 조건의 납세자가 400파운드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기업 소유자가 세금·보험금 납부 후 실현하는 소득은 339.10파운드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는 319.30파운드, 근로소득자는 290.30파운드 순이다. 이러한 소득세율 차이는 조세의 중립성과 납세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된 의사결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

〈표 5〉 경제주체별 소득세 및 국영보험기여금 부담 비교 (2010~2011년 기준)

(단위: 파운드/주)

	근로소득자 (Employment) ¹⁾	자영업자 (Self-Employment) ²⁾	소기업 (Small Company) ³⁾
세전 소득(Value of Output)	400.00	400.00	400.00
고용주 국영보험 납부금 (Employer NICs)	32.91	0.00	0.00
총소득금액 (Gross Wage/Income)	367.09	400.00	110.00
국영보험납부금액 (Employee NICs)	28.28	0.00	0.00
자영업 국영보험납부금액 (Self-Employed NICs)	0.00	25.60	0.00
과세대상수익(Taxable Profit)	0.00	0.00	290.00
법인세(Corporation Tax)	0.00	0.00	60.90
과세표준(Taxable Income)	242.57	275.48	339.10
소득세(Income Tax)	48.51	55.10	0.00
국영보험납부금 총액 (Total NICs)	61.19	25.60	0.00
총조세(Total Tax)	48.51	55.10	60.90
소득세 및 국영보험납부금 총액	109.70	80.70	60.90
순소득(Net Income)	290.30	319.30	339.10

주: 예제의 근로소득자의 고용주 국영보험은 Class 1 NIC 부담비율이며 Earning Threshold는 매주 110파운드임

1) 근로소득자(Employment)

- 근로소득자의 고용주 국영보험기여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액(Employer NICs) = (£400-32.91-110)*12.8%
- 근로소득자의 국영보험납부금액(Employee NICs) = (£367.09-110)*11%
-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Taxable Income) = £367.09-124.52(기본공제)
-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 = 20%

2) 자영업자(Self-Employment)

- 자영업자의 국영보험납부금액(Self-Employed NICs) = [(£400-110)*8%] + 2.40
- 자영업자의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 £400-124.52(기본공제)

3) 소기업(Small Company)

- 소기업소유주는 매주 소득의 £110씩 임금의 형태로 가져간다고 가정하며 해당 금액은 국영보험납부 의무를 가지지 않음
- 조세대상수익(Taxable Profit) = £400-110
- 법인세액(Corporation Tax) = £290*21%
- 조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 £110(Wage)+229.10(Profit after Tax)
- 자영업자의 임금 £110 Earning Threshold 미만이며 과세대상이 아님

출처: 『Tax by Design』, (2011), p. 457

『The Mirrlees Review』는 지난 30년간 영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 Business Rates 폐지

Business Rates가 영국의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 않지만, 산업 간 세율차이 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조세제도이다. Business Rates는 2009~2010년 기준 영국 총조세수입의 4% 수준인 240억파운드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조세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부동산¹⁷⁾ 투자자는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Business Rates의 폐지를 통하여 발생하는 세수손실은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로 대체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원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Business Rates는 부동산의 목적이나 위치, 사용자(occupant)의 여부에 따라 차등세율 혹은 면세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토지가격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불필요한 면세혜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가치세율(Land Value Tax Rate)을 토지가치의 4%로 설정한다면 현재 Business Rates가 차지하는 조세수입과 비슷한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6〉 영국 조세개혁 방향 조세항목별 요약

조세항목	주요내용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Taxes on Earnings)	- 소득세와 국영보험부담금 통합 - 소득세율의 결정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 보장 - 납세자의 근로의욕 및 상황을 반영한 소득세 체계
간접세 (Indirect Taxes)	- 부가가치세의 세율인하, 면세혜택 최소화 - 수입품에 대한 소비지국 과세원칙 유지 및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념) 도입 - 지방세 및 인지세 폐지
환경세 (Environmental Taxes)	- 일관적인 비용책임방식 수립 - 국내 가스소비에 대한 과세적용 - 자동차 연료소비에 대한 조세부담을 교통혼잡에 대한 조세부담으로 확대적용
저축과 부에 대한 조세 (Taxation of Saving and Wealth)	- 일반은행 이자소득 비과세소득 지정 - 위험자본투자에 대한 정상수익분 면세 및 초과소득분 과세 - 연금소득에 대한 「Exempt-Exempt-Taxed」 원칙 유지 - 상속자의 사망 여부와 상속 발생시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 적용
기업이익에 대한 조세 (Taxing Corporate Income)	- 자기자본자금조달에 대한 공제제도 도입 - 근로자, 자영업자, 소기업 소득 간 동일한 소득세율 적용 - Business Rates 폐지 및 토지가치세 도입

자료: 『Tax by Design』 (2011)

IV. 요약

『The Mirrlees Review』는 지난 30년간 영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조세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영국의 현행 조세제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이며(inefficient), 불필요하게 복잡하고(overly complex), 불평등(unfair)한지 보여주는 경제학적 연구와 동시에 생산량(output)과 사회후생(welfare) 개선에 중점을 둔 조세제도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he Mirrlees Review』의 총괄 책임자 James

17) 법인이 소유한 건물 등의 부동산을 뜻하며 토지는 제외함.

Mirrlees는 영국의 비효율적인 조세제도는 영국 정부의 조세개혁의 방향성 결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정부는 자국 내 경제에서 창출되는 소득 10파운드당 약 4파운드 정도를 세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잘못된 조세제도는 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그 영향이 지대하나, 현재 영국 내 조세정책에 대한 논의 수준(level)이나 질(quality)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국 정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좀처럼 설정하지 못하였고 심각한 정책 실패를 자주 반복하고 있다고 본 보고서에서는 지적한다.

영국의 비효율적인 조세제도는 주택시장의 비효율성(Inefficient Housing Market), 금융서비스에 대한 왜곡된 과세(Distortionary Taxation of Financial Services), 불필요하게 높은 기업의 차입자본조달 의존(Excessive Reliance on Debt Finance), 고용수준의 저하(Lower Employment),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왜곡되고 비효율적인 결정(Distorted and Inefficient Savings and Investment Decisions)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The Mirrlees Review』를 발간한 「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Director인 Paul Johnson은 영국의 조세제도가 원래 설계할 당시에 의도하였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세제도의 변화는 일관성 있는 전략(Coherent Strategy for Tax)이 결여되어 영국 경제에 필요 이상의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James Mirrlees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개혁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조세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영국 정부가 현재 실현하고 있는 조세수입과 소득재분배 수준을 지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조세개혁의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개혁안은 현행 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실행될 수 있지만, 다수의 개혁안들은 현행 조세제도의 혁신적인 변화

『The Mirrlees Review』는 효과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국가 재정수입과 고용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조세제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정치적 반대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피할 수 없지만, 개혁이 실패하였을 때 감내해야 하는 비용도 피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Mirrlees Review』는 또 효과적인 조세개혁을 통하여 국가 재정수입과 고용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만약 경제성장을 중요시한다면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개혁은 단기적인 술책(gimmicks)이나 일회성 공제제도(one-off allowance)에 의하여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조세개혁은 장기적이고 용의주도하며,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영국의 세제개혁은 이러한 점에서 미흡하였으며,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는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The Mirrlees Review』는 이러한 효율적인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e Meade Report』 출간 당시 IFS의 Dick Taverne 소장은 영국이 과거에 추진한 세제개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For too long, tax reforms have been approached ad hoc, without regard to their effects on the evolution of the tax structure as a whole. As a result many parts of the system seem to lack a rational base. Conflicting objectives are

pursued at random; and even particular objectives are pursued in contradictory ways.”

영국 조세제도에 대한 Dick Taverne의 평가는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2013년 출범할 새 정부가 추진할 세제개편 시 『The Mirrlees Review』에 담긴 원칙과 철학을 유념해 볼 것을 제안한다. [KIPF](#)

〈참고문헌〉

Creedy, J., “Reflections on Tax by Design,” *Fiscal Studies*, 32, 2011, pp. 361~373.

Diamond, Peter A. and James A. Mirrlees, “Optimal Taxation and Public Production: Production 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971, pp. 8~27.

Gordon, R., “Commentary on Tax by Design,” *Fiscal Studies*, 32, 2011, pp. 395~414.

Johnson, Paul, and Gareth Myles, “The Mirrlees Review,” *Fiscal Studies*, 32, 2011, pp. 319~329.

Kaplow, Louis, “An Optimal Tax System,” *Fiscal Studies*, 32, 2011, pp. 415~435.

Meade, J.,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 E. Meade for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8.

Mirrlees, J., S. Adam, T. Besley, R. Blundell, S. Bond, R. Chote, M. Gammie, P. Johnson, G. Myles and J. Poterba, (eds), *Dimensions of Tax Design: The Mirrlees Re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0.

_____, *Tax by Design: The Mirrlees Re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or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11.

_____, “The Mirrlees Review: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for Reform,” *Fiscal Studies*, 32, 2011, pp. 331~359.

〈부표 1〉 The Mirrlees Review 저자 및 기고자

이름	소속
Tim Besley	London School of Economics
Richard Blundell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Stephen Bond	Nuffield College, Oxford
Robert Chot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Malcolm Gammie	One Essex Court
Sir James Mirrlees	University of Cambridge and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Gareth Myle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of Exeter
James Poterba	MIT
Paul Johns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Stuart Adam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부표 2〉 Authors and Commentators

담당 부분	역할	이름	소속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Author	Joel Slemrod	University of Michigan
		John Whiting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Jonathan Shaw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Commentator	Brian Mace	Former Policy Director, Inland Revenue and Member of Tax Law Review Committee
		John Hasseldine	University of Nottingham
		Richard Highfield	OECD
Environmental Taxes	Author	Andrew Leicester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Don Fullerton	University of Illinois
		Paul Johns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Stephen Smith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Commentator	Agnar Sandmo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Nicholas Stern	House of Lords and London School of Economics
International Capital Taxation	Author	James Hines	University of Michigan
		Julian Alworth	Saïd Business School, Oxford
		Peter Birch Sorensen	University of Copenhagen
		Rachel Griffith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of Manchester
		Roger Gord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ommentator	Jerry Hausman	MIT
Labour Supply and Taxes	Author	Costas Meghir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Yale University
		David Phillip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담당 부분	역할	이름	소속
Means Testing and Tax Rates on Earnings	Author	Mike Brewer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ISER, Essex University
		Guy Laroqu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Robert Moffitt	John Hopkins University
		Emmanuel Saez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rew Shephard	University College London
	Commentator	Hilary Hoynes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mall Business Taxation	Author	Claire Crawfor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Judith Freedma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Worcester College, Oxford
Taxation in the UK	Author	Chris Heady	University of Kent
		James Brown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Stuart Adam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Commentator	Chris Evans	Atax,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Taxation of Wealth and Wealth	Author	Carl Emmers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Emma Chamberlain	Pump Court Chambers, STEP, CIOT
		Helmuth Cremer	IDEI, University of Toulouse 1
		Robin Boadway	Queen's University, Ontario
	Thomas Piketty	ENS-EHESS	
Commentator	Martin Weal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Taxing Corporate Income	Author	Alan Auerbach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Helen Simpson	CMPO, Bristol
		Jack Mintz	University of Calgary
	Michael Devereux	University of Oxford	
Commentator	Hary Huizinga	Tilburg University	
The Base for Direct Taxation	Author	James Banks	University of Manchester
		Peter Diamond	MIT
		Pierre Pestieau	University of Liege
		Robert Hall	Stanford University
	Commentator	John Kay	-

담당 부분	역할	이름	소속
The Effects on Consumption and Saving of Taxing Asset Returns	Author	Matthew Wakefiel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of Bologna
		Orazio Attanasio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The Political Economy of Tax Policy	Author	James Alt	Harvard University
		Ian Preston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and University College London
		Luke Sibieta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Guido Tabellini	University of Bocconi
	Commentator	Chris Wales	FTI Consulting
		Peter Riddell	The Times
Value Added Tax and Excises	Author	Richard Bird	University of Toronto
		Sjibren Cnossen	University of Maastricht
		Ian Crawford	University of Oxford
		Jonathan Gruber	MIT
		Michael Kee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ephen Smith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Commentator	David White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Ian Dickson	Burleigh Evatt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외국제도와 시사점

I. 서론

올해 1월 '구리왕' 차용규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에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차용규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 통보는 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졌다¹⁾.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금 추징에 나섰다²⁾.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시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인 차용규의 국내 거주일수(1년에 약 1개월)를 고려할 때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11명 중 국세청 직원 5명을 제외한 외부위원 6명 전원이 국세청 과세 내용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논란이 된 ‘선박왕’ 사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었다. 국세청은 시도상선 회장인 권혁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역외탈세 혐의로 4천억원을 추징하였으나, 권혁은 자신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에 과세 불복청구를 냈다. 당시 국세청은 권혁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벌였고, 가족이 국내에 머물렀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권혁은 국내 거주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은 권혁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권혁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반면, 국세청은 지난해 권혁이 체납한 세금 확보를 위해서 시도상선 자회사의 영업상 채권을 압류 조치한 뒤 추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올해 4월 19일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세계화 시대에 따라 납세자가 여러 국가에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구자은

한국조세연구원
특수전문직(공인회계사)
(jeunkoo@kipf.re.kr)



정경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khjung@kipf.re.kr)

1)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는 국세처분이 있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미리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다투어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임.

2)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세법의 규정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세법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점차 증가되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법상 거주자 판정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선박왕’ 사건이나 ‘구리왕’ 사건처럼 세법의 규정만으로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세법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의 행사 여부가 결정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도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자 여부에 대한 판정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국가의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가 ‘거주자 판정기준’을 어떻게 규정 및 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거주자 판정기준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양자의 과세요건·과세절차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무제한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제한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³⁾.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⁴⁾.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과는 다른 개념이다. 비거주자는 과세목적상 경제적 및 인적 연고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거주자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외국인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두면 거주자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면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거주자에 포함된다⁵⁾.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⁶⁾.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⁷⁾.

한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제1조의 2 외에 동법 제

3) 소법 §3①, ②
 4) 소법 §1의2①
 5) 소법 §2③
 6) 소령 §2③
 7) 소령 §2④

118조의 2에서도 거주자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는 국외에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로 하였다.

나. 거주자 판정의 특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 장소 등에 따라 주소 판정을 한다.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⁸⁾. 또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도 거주자로 본다⁹⁾. 물론 단순히 해외파견이라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를 적용하여 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¹⁰⁾.

한국에 체류하는 주한외교관 등과 그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국내 주소 여부 및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신분에 의해 비거주자로 본다.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예외)이거나 한·미 행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한다.**

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거주기간의 계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이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등으로 계산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과세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위가 변경되는 시점을

8) 소령 §25

9) 소령 §3

10) 소기통 1-3-10

미국은 세법상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거주자로 되기 전날까지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¹¹⁾. 반대로 과세기간 중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¹²⁾.

Ⅲ.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납세의무자의 구분 및 납세범위, 거주자의 판정기준,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소득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미국

미국은 납세의무자를 ①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 ② 외국인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시민권자와 외국인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외국인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시민권의 개념을 납세의무자

구분에 포함하므로 거주자의 범위가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세법상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한다고 할 수 있다. 시민권자에게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외국인이 해당 연도에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실질적인 거주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미국 거주자로 보고 있다.

미국은 거주자 판정을 할 때, '183일 이상 거주'를 거주자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183일을 계산할 때 물리적 체류일수만으로 계산하며 일시적 체류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주요국과 달리 미국은 기간 계산에 있어서 가중평균의 개념을 사용한다.

미국은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국내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외국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공무원 등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간주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 영주권 기준을 충족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날은 해당 연도에 미국에 체류하는 날부터이고, 실질거주기준이 충족되어 거주자가 되는 날은 해당 연도에 미국에 체류하는 날부터이다.

미국은 미국 거주자가 해외의 주된 주거시설(main home)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한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시설이라도 처분 전 5년 이내에 해외 주거시설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5만달러(결혼한 경우, 50만달러)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¹³⁾.

11) 소기통 3-0-20

12) 소기통 3-0-20

13) IRS §121, Publication 523(2011)

나. 캐나다

캐나다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캐나다의 거주자는 캐나다의 거주 관련성(resident ties)을 기준으로 거주자로 판정하는데 이를 넓게 해석할 경우 미국과 같이 시민권자를 거주자에 포함하는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캐나다는 일반적인 거주자(ordinarily resident)인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거주자를 실질적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로 나누고 있으며, 간주 거주자 중 대표적인 경우는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캐나다 법에 거주(resident)에 대한 정의는 없고 국세청 행정문서에 거주자의 판정에 대한 고려요소를 서술하고 있다. 캐나다는 실질적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사항, 차선적인 고려사항, 부수적인 고려사항을 구별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사실 판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체류일수에 따른 간주 거주자 규정을 두고 사실 판정을 해야 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캐나다는 간주 거주자를 판정할 때, '183일 이상 거주'를 거주자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183일을 계산할 때 물리적 체류일수만으로 규정하고 일시적 체류를 고려하지는 않는다. 183일은 해당연도 1년을 기준으로 183일 이상을 체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캐나다에 입국한 날처럼 하루 중 일부의 시간만을 캐나다에 있었던 경우에도 1일로 계산하며, 183일은 1년 중 누적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캐나다는 거주자 판정 결정에 있어서 '거주'를 판정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실판정 기준을 두고 이

캐나다는 거주자를 실질적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로 나누고 있으며, 간주 거주자는 체류일수에 따라 판정한다.

를 기초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판정 기준 중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각각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캐나다는 실질적 거주자를 판정할 때, 첫째, 캐나다와의 거주 관련성(resident ties)이 영원히 단절된 증거가 있는가, 둘째, 캐나다에서의 체류가 장기적이고 정기적인가, 셋째, 캐나다 외의 국가와의 거주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 중 캐나다와의 거주 관련성(resident ties)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째, 거주 장소,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의 상태를 보고 둘째, 개인자산의 보유 장소, 사회적·경제적 관련성 등을 검토하며 셋째, 메일주소, 캐나다 등록 전화번호 등을 고려한다. 또한 판정기준별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여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캐나다는 거주자 판정기준의 예외 규정을 두어 특정 인들에 대해서는 국내 주소나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여기에는 해외로 파견된 캐나다 군대, 외교관 등 국가 및 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캐나다정부의 국제개발보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¹⁴⁾. 이렇게 간주된 거주자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으로 일정 소득 이하인 자도 거주자에 포함되고, 해당 연도 중 일부라도 다른 국가와의 협약에 의하여(조세조약을 포함) 특정 소득 외에는 소득세 면제로 등록된 사람도 거주자로 간주한다.

캐나다에서 실질적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캐나다에 입국한 날로 보고 있으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캐나다와의 거주 관련성이 단절된 날로 보고 있다. 이 때 캐

14) ITA Section 250(1) (b)~(d)

일본은 ‘주소’가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일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다.

나다와의 거주 관련성이 단절된 날은 ① 해당 자연인이 캐나다를 떠난 날, ② 납세자의 배우자나 사실혼의 배우자·동거가족이 캐나다를 떠난 날, ③ 납세자가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서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 판정한다. 이에 비하여 183일 이상 체류하여 간주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해당 과세연도의 시작일이 된다.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 주거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¹⁵⁾.

다. 일본

일본은 납세의무자를 거주자, 비영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일본은 납세범위와 관련하여 자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거주자 중 일정 기간 이하 거주한 거주자를 비영주자로 분리하여 납세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과세범위를 일부 축소한 비영주자인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중 국내에서 지불되거나 일본으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일본은 ‘주소’가 거주자 판정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 일본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보고 있다. 법령에서는 ‘주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고 통달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거주를 결정하는 기준 중 체류기준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1

년을 계산할 때의 기준일은 일본에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이므로 평균기간이나 몇 년 중 1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입국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인지를 판정한다. 또한 계속이라는 의미에서 외국 체류기간이라도 일시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함하여 1년 여부를 판정하므로 일시적 체류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① 일본 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와 ②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중 동거가족의 상황, 직업, 자산상태에 비추어서 일본 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추측할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일본 내에 주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본은 일본 국적을 가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소를 가지게 된 날이고,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고 거소를 가지고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일본은 일본 거주자가 해외 주거시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이 때 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 하고 있다¹⁶⁾.

라. 호주

호주는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호주의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은 ‘거주’이다. 호주는 실질적인 ‘거주’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거주 테스트를 통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납세

15) IBFD(<http://www.ibfd.org/>)

16)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joto/3560.htm>)

자가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 퇴직연금 테스트 중 하나를 만족하면 과세목적상 거주자로 간주한다.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 퇴직연금 테스트 모두 각각의 판정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고려하며, 183일 테스트의 경우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체류일수만으로 판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호주는 '183일 이상 거주'를 거주자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183일을 단순히 계산할 때 물리적 체류일수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거주자 판정기준 중 183일 테스트의 체류기준은 183일이라는 체류일수 및 사실 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183일은 해당연도 동안 물리적인 체류 날짜를 모두 계산한 것이다. 이 때, 183일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계속 실질적으로 체류하거나 간헐적으로 체류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호주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의도가 중요한 판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호주는 거주자 판정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고려한 거주 테스트를 한다. 거주 테스트에서 납세자가 호주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주라는 행위를 거주자 판정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거주라는 행위의 요소는 체류 목적 및 의도, 가족과 사업 및 고용 관계, 자산의 상태와 위치, 사회 및 생활 관계 등이 있으며 이를 거주자 결정에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호주에서 주소 테스트, 183일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해외와의 관련성이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된다.

호주는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 외교관 등 특정 직업에 대해서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의 범위에는 공무원, 외교관 등의 배우자, 16세 이하의 자녀도 거주자에 포함된다.

호주는 입국하는 날이 거주자가 되는 날이며, 출국일 다음 날이 비거주자가 되는 날이다. 호주는 호주의 거주자가 해외자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하여 거주자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¹⁷⁾.

호주의 거주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은 '거주'이다. 호주는 실질적인 '거주'의 개념을 중요하게 보고 거주 테스트 등을 통해 거주자 여부를 판정한다.

마. 외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비교

앞서 제시된 각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국의 거주자 판정기준

국 가	거주자 판정기준	고려요소
우리나라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사실관계
미국	① 시민권자인 경우 ② 영주권 기준 ③ 실질적인 거주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을 만족하는 경우	시민권(영주권), 체류일수
캐나다	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주'를 판정함 ②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봄	체류일수, 사실관계
일본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② 1년 이상 '거소'를 가진 경우	사실관계
호주	① 거주 테스트 ② 주소 테스트 ③ 183일 테스트 ④ 퇴직연금 테스트	사실관계

주: 1. 사실관계는 과세관청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시민권이 나 체류일수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은 제외함. 우리나라의 경우 동거가족의 상황, 직업,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국가별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시 고려대상 및 고려방법에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은 '주소'와 '거소'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고려하고, 호주도 거주테스트 등에서 모

17) 호주 국세청(<http://www.ato.gov.au/content/65779.htm>)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에 비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거주자를 판단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즉, 미국은 시민권(영주권)과 체재일수만을 고려하고, 사실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데 비하여, 그 외의 국가는 시민권(영주권, 국적)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캐나다는 체재일수만으로 거주자를 판정한 후 일부분에서 사실관계를 고려하는 데 비하여, 일본, 호주, 한국은 체재일수를 고려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IV. 정책적 시사점

외국은 거주자 개념을 각국의 과세권 보호와 과세평형, 조세회피의 대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규정하고 보완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거주자 판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거주자 판정기준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정책 반영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구분하여 요약하였다.

가. 장기적 방안

먼저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

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규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규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외국인 거주자 중 과세범위가 축소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자 중 과세범위가 축소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의 정의규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의 구분과 납세범위는 소득세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정의규정이 아닌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체계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유사한 비영주자의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가의 대부분이 비영주자와 같이 과세범위가 축소되는 거주자를 두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고, 이렇게 주요국과 다른 형태로 거주자를 두게 되면 이중과세나 이중비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의 구분과 납세범위는 소득세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의 단순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를 보면 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지 않고, 국적이거나 체류일수 등 판정이 손쉬운 기준을 바탕으로 거주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과세관청의 조세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실관계가 고려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을 하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 이중거주 또는 이중비거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납세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거주자 판정을 사전결정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거주자 판정을 위해서 국세청의 국제세무서비스부서를 이용하거나 세법사전해석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식 등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한 경우 거주자 판정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전확인절차를 통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납세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줌으로써 법적 안정성 유지 측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이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관계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이용한 '거주자 판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기존 제도를 개정해야 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단기적 방안

다음으로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거주자 판정을 할 때 기준의 순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자 판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준 간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고려 기준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둘째, 외국과의 거주 관련성을 포함하도록 판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거주자를 판정할 때 외국과의 거주 관련성을 판정하는 기준이 없고, 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하는 규정도 없다. 물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납세의무자의 구분, 거주자 판정기준의 단순화, 거주자 판정을 사전결정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인지, 국내에 동거가족이 없는지, 자산상태가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등을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하지만, 이는 국외에서의 현황을 파악하여 거주자 판정의 사실관계에 반영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국과의 거주 관련성 판정 기준이 없으면 이중 비거주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외국과의 거주 관련성을 국내거주자 판정기준에 고려하고 있다.

셋째, 기준별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산상태를 고려한다고 할 때 자산상태 중 어떤 것이 고려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캐나다의 예를 보면 자산상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주거지, 개인적 자산 등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동거가족의 상황, 직업,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각 기준의 어떤 점이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도 이런 기준에 따라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판단근거가 되는 추가적인 기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판정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서 기타의 기준도 고려할 수 있으나, 기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에 따라 법에 제시된 기준 외에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과세관청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 거주자로 판정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 기준에 대한 제시의 필요성 외에 추가적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적인 기준이 실질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사실관계 고려 시
판정기준의 순서화, 선정기준에 외국과의
거주관련성 고려, 기준별 구체적
판정기준의 제시, 거주자판정을 위한
추가적인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

로 '거주'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호주와 캐나다의 예를 보면 자국 내 은행계좌가 있는지, 자국 내에서 가입한 동호회가 있는지, 자국 내에서 후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료보험의 자격이 있는지, 자국 내 신문구독지가 있는지, 개인 문구용품이나 명함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캐나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다섯째,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특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에서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을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자회사로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1년 이상을 일본에서 체류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면, 우리나라는 단서에 의하여 거주자가 되고, 일본은 1년 이상 통상 체재할 것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된다. 즉, 이 중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규정이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파견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을 퇴사하고 현지법인에 입사하는 방식으로 파견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¹⁸⁾. 즉, 판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 조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본 조문은 해석상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 운용하지 않는 제도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1년 이상의 거소를 가진 경우에 1년의 체류


가 경과한 때부터 거주자가 되도록 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납세자의 경우 해당 기간(1년)의 체류가 경과한 때로부터 거주자로 본다¹⁹⁾.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1역년에 183일 이상의 거주를 거주자 선정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국가에 183일 체류를 충족시키는 경우 해당 기간(183일)의 시작일부터 거주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국제적 이중거주자 또는 이중비거주자를 발생시킬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거주자 기준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선정규정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곱째, 국외양도소득의 범위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주자 선정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 2는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를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고 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결국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 전 처분하거나 귀국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해외소재 주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²⁰⁾.

1998년 12월 말 신설된 소득세법 제118조의 2는 국내 자본의 외국진출 등 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외자산의 투자가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거주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동법의 신설 이전에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명문 규정이

18) 대법2010두 15056, 2011.4.28
19) 대법2010두 15056, 2011.4.28
20) 노영훈(2010) 참조

없어서 사실상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따라서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한 명문규정을 마련하여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귀국 후 5년 연속 거주자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의 여러 소득 중 유일하게 납세의무자에게 기간 규정을 두어 동법 제1조의 2의 거주자 정의와 차이를 발생시킴으로써 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거주자 범위의 제한은 실질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국외자산 양도를 명문화하면서, 전면적인 과세보다는 단계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자 도입 시 과세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정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달리 규정하는 방식으로 납세의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규정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범위를 축소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변경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해외부동산 양도를 국내부동산 양도와 달리 취급하지 않고 세제상 혜택을 주는 목적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우리나라에 해당 규정이 도입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세제혜택을 줄 이유가 없으므로 거주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은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노영훈, 「해외부동산투자자와 조세정책적 시사점: 상하이시 주택투자사례」, 『재정포럼』, 제171호, 한국조세연구원, 2010. 9.
- 오윤, 「세법상 거주자 개념」, 『조세학술논문집』, 제24집 제1호, 2008.
-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 川田 剛, 『國際課税の基礎知識』, 稅務經理協會, 2004. 4.
- 金子 宏, 『租稅法』, 弘文堂, 2009. 2.
- 稅經通信, 稅務經理協會, 2006. 10. 2
- Edward A. Zelinsky, “Citizenship and Worldwide Taxation: Citizenship as an Administrable Proxy for Domicile,” *Iowa Law Review*, 2011. 5.
- Richard L. Doernberg, *International Taxation*, Thomson West, 2009.
- 미국 국세청(<http://www.irs.gov/>)
- 호주 국세청(<http://www.ato.irs.au/>)
- 캐나다 국세청(<http://www.cra-arc.gc.ca/>)
-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
- IBFD(<http://www.ibfd.org/>)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2-04

요약

- 영국은 2012년 3월 21일과 2012년 3월 29일에 ‘2012 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2-13)’과 ‘2012 재정법(Finance Bill 2012)’을 각각 의회에 제출함
 -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에 포함된 주요 세제조치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은행세율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세점(threshold) 인상 등이 있음
- 캐나다 재무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함
 - 예산안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공공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안을 제시함
 - 동 예산안에는 각각 세목에 대한 세율 변화는 없었으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수정하는 등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됨

1. 영국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 의회 제출

- 영국 재무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은 2012년 3월 21일에 ‘2012회계연도 예산안(Budget for 2012~13)’을 의회에 제출함
 - 예산안은 영국의 경제정책 목표인 산업과 성장의 장려 및 투자의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세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2012년 3월 29일에는 2012 재정법(Finance Bill 2012)이 의회에 제출됨
 - 2012 재정법에는 2012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세제조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세제조치는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임
- 2012회계연도 예산안 및 2012 재정법에 포함된 주요 세제조치로는 법인세율의 인하, 은행세율 인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면세점(threshold) 인상 등이 있음

가. 법인세 분야

- 현행 26%인 법인세 기본세율¹⁾이 2012년 4월부터 24%로 인하되고, 2013년 4월에는 23%, 2014년 4월에는 22%로 추가 인하될 예정임
- 과거 예산안에 따르면 영국은 2014년 4월까지 법인세율을 23%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성장과 투자촉진을 위해 세율을 1%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함
- 법인세율이 예정대로 인하될 경우, 영국은 G-7 국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자 G-20 국가 중 법인세율이 네 번째로 낮은 국가에 해당됨²⁾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short-term chargeable liabilities)에 적용되는 은행세가 인상될 예정임
- 영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의 단기부채 및 장기부채에 대해 은행세를 부과하기 시작함
- 2012년 1월 1일부터 단기부채에 적용되는 은행세율이 0.075%에서 0.088%로 인상될 예정이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0.105%가 적용될 예정임
- 지정된 기업지구(Enterprise Zone) 내 공장 또는 설비 시설에 투자하는 상사기업(trading company)에 대해 첫째 연도에 한해 100%의 자산공제(capital allowance)가 허용될 예정임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그 지출비용의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자산공제라 함

1)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이 £1,500,000 이상인 경우 적용됨. 과세소득이 £300,000 이하인 경우에는 소규모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300,000~£1,500,000 사이인 경우 특정 계산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증가된 세율이 적용됨

2) G-7 및 G-20 국가의 2011년 기준 법인세율

구분	국가	세율
G-7	미국	35%
	캐나다	16.5% ¹⁾
	영국	26%
	독일	15.825% ²⁾
	프랑스	34.4%
	이탈리아	27.5%
	일본	30%
G-20	유럽연합	N/A
	터키	20%
	남아프리카공화국	28%
	사우디아라비아	20%
	멕시코	30%
	브라질	25%
	아르헨티나	35%
	호주	30%
	러시아	20%
	대한민국	22%
	중국	25%
	인도네시아	25%
	인도	30%

주: 1) 10~16%의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됨

2) 14~17%의 지방세가 추가로 부과됨

출처: OECD Statistics 및 IBFD

나. 개인소득세 분야

- 2013년 4월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5%로 인하될 예정임
- 영국은 2011년 4월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을 신설한 바 있음
- 50% 최고세율 신설 이후 최고세율의 세수증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부의 해외유출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반발이 지속되어 왔음
- 영국은 2011-2012 과세연도 과세소득신고 분석 자료



를 바탕으로 2013년 4월부터 최고세율을 50%에서 45%로 인하할 것을 결정함

- 2013년 4월부터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42.5%에서 37.5%로 인하될 예정임
 -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0%, 32.5%, 42.5%의 세율로 누진과세됨
 - 0~35,000파운드: 10%
 - 35,001~150,000파운드: 32.5%
 - 150,001파운드 이상: 42.5%
- 2012년 4월부터 40%의 높은 세율(higher rate)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낮아지고, 65세 이하 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가 인상될 예정임
 - 현재 영국은 35,000파운드 초과 150,000파운드 미만의 과세소득 구간에 대해 40%의 높은세율(higher rate)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2012년 4월부터 34,370파운드로 인하될 예정임
 - 또한 65세 이하 납세자의 기본소득공제가 현행 7,475파운드에서 8,105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임
- 2012년 4월부터 영국 거주자 중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UK domiciled individual 또는 non-dom)'가 송금주의 과세제도(remittance basis taxation)를 선택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이 연 50,000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임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는 선택에 의해 영국 내로 송금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으며, 이를 송금주의 과세제도(remittance basis taxation)라 함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로서 ① 최근 14년 중 12년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한 자 또는 ② 최근 9년 중 7

년 이상을 영국에서 체류한 자만이 선택에 의해 송금주의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가 송금주의 과세제도를 선택할 경우, 연 30,000파운드의 비용(remittance basis charge, RBC)을 부담해야 함
- 2012년 4월 2일부터 RBC가 연 30,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로 인상됨
- 2012년 4월부터 영국에 주소가 없는 자(non-dom)가 영국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특정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영국 내로 송금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임

다. 간접세 분야

- 2012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등록(registration) 및 등록취소(deregistration) 기준금액이 인상될 예정임
 - 사업자등록 기준금액(registration threshold): 73,000파운드 → 77,000파운드
 - 등록취소 기준금액(deregistration threshold): 71,000파운드 → 75,000파운드
 - EU 역내 국가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금액: 73,000파운드 → 77,000파운드
- 2012년 3월 21일부터 2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high-value residential properties)의 취득에 대해 토지인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가 인상 또는 신설됨
 - 개인이 2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던 SDLT 세율이 5%에서 7%로 인상될 예정임
 - 자연인이 아닌 자(non-natural persons)가 2백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15%의 SDLT가 새롭게 부과될 예정임

라. 기타

- 2012 재정법이 통과할 경우, 영국이 지난 2011년에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협약(tax agreement)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임
 - 영국과 스위스는 역의탈세 방지를 위해 스위스 은행 무기명 계좌(undeclared account)에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세협약을 2011년 10월 6일에 체결한 바 있음³⁾

2. 캐나다 예산안 발표

- 재무부가 2012년 3월 29일 발표한 2012년 예산안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장기적 번영을 목표로 기존의 감세정책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시행되었던 기존 Canada's Economic Action Plan(CEAP)을 유지할 계획임
 - 작년도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한 지출규모는 750억캐나다달러이었으며,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낭비적 요소 없이 예산이 지출될 계획임
- 2012년 예산안에서는 CEAP를 통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공공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개발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적 계획을 갖고 있음
 - 기업경영에 있어 혁신적, 창조적 일자리 창출

- 자원 개발을 책임감 있게 수행
- 사업의 번창을 위한 자유롭고 열린 교역환경 마련
- 연구 및 교육훈련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 원주민의 완전한 경제적 참여 유도
- 신속하고 유연한 경제적 이주정책 건립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과 퇴직 후의 안정성 보장
- 세계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과 번영을 목표로 함
- 정부는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기적으로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부채규모를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정부부채 수준을 370억캐나다달러까지 낮춘 바 있고 현재까지 낮은 순부채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정부의 재정적자 수준은 계속해서 감소할 예정이며 2015~2016년도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함

〈표 1〉 CEAP 실행 이후의 정부 재정수지

(단위: 10억캐나다달러)

'10~'11	'11~'12	'12~'13	'13~'14	'14~'15	'15~'16	'16~'17
-33.4	-24.9	-21.1	-10.2	-1.3	3.4	7.8

자료: Budget 2012, <http://www.budget.gc.ca/2012/rd-dc/brief-bref-eng.html>

가. 개인소득세 개정안

- 배당세액공제(Dividend Tax Credit, DTC) 적용을 위한 배당유형 지정신고(Designation) 규정을 개선함
 - 배당세액공제⁴⁾는 고율 배당세액공제(Enhanced

3) 자세한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11-22호」(2011. 11)를 참고하기 바람

4) 법인의 소득은 법인단계에서뿐만 아니라 동 소득이 개인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때 주주단계에서도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DTC)와 표준 배당세액공제(Regular DTC)로 나누어 지며⁵⁾, 이는 배당의 소득원천에 따라 결정됨

- 일반세율 적용 소득재원(General Rate Income Pool)으로부터의 배당⁶⁾에는 고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됨

- 저세율 적용 소득재원(Low Rate Income Pool)으로부터의 배당에는 표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됨

• 예산안에서는 법인의 배당금 지급시, 총배당금 중 고율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배당금 비율을 임의로 지정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음

- 예전에는 보다 정확한 구분을 요구하였으며 과도한 고율 배당세액공제 대상 신고분에 대하여 이에 20%의 특별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배당소득 구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

• 또한 예산안에서는 고율 배당세액공제 적용 대상 배당금 지정신고에 대해 지연신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함

- 예전에는 신고기한 내에 지정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배당의 원천이 일반세율 적용 소득재원으로부터의 배당이라 하더라도 표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예산안에서는 지연신고 하더라도 실질에 맞게 인정해 줌

■ 임계점⁷⁾을 넘는 의료비용 지출액의 15%를 공제해 주는 의료비 세액공제(Medical Expense Tax Credit) 대상에 혈액응고 방지를 위한 혈액응고 감시장치 기기(Blood Coagulation Monitors) 구입비가 포함됨

■ 등록장애인에 대한 저축 계획(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 RDSP)제도⁸⁾에 대한 개정을 제안함

• 계약능력이 불확실해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 그 장애인의 특정 가족 구성원이 RDSP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함

• RDSP로부터 인출이 일어날 때 비례적으로 상환이 일어나도록 개정함

• RDS 인출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규정을 변경함

• 등록교육 저축계획(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기금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을 비과세(혹은 과세이연)가 적용되는 RDSP 기금으로의 전입을 가능하게 하였음

■ 도관주식(Flow-through Share)에 대한 광물투자세액공제(Mineral Exploration Tax Credit)를 1년 더 연장하여 2013년 3월 31일 이전 계약분까지 가능하게 함

• 도관주식 출자를 통한 투자자들의 캐나다 광물 개발 활동은 관련 비용을 그들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해 줌

• 또한 도관주식에 투자한 개인에게는 캐나다 소재 특정 광물의 탐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15%의 광물개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집단 질병 및 사고 보험계획(Group Sickness or Accident Insurance Plans)에 대하여, 그 분담금은 고용주가 납부하여야 하며, 단 분담금이 근로자의 임금 손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함

5) Enhanced DTC와 Regular DTC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배당세액공제 금액의 크기를 결정함. 즉, 배당세액공제 금액은 배당소득에 가산(imputation)되지만, 동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납세자 입장에서는 Enhanced DTC가 보다 유리함.

6) 이 때의 배당을 특히 Eligible Dividend라 함

7) 납세자 순소득의 3%와 2,109캐나다달러 중 작은 금액

8) RDSP는 장애인 세액공제(Disability Tax Credit) 적용 대상 장애인을 수혜자로 하는 기금 제도임

- 퇴직보상계약(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s)⁹⁾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변경함
 - 현행 퇴직보상계약은 퇴직연금계획(Registered Pension Plan)하에 허용된 연금 혜택 한도수준을 초과하여 고소득 근로자에게 연금 지원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퇴직보상계약의 비정상적인 처리에 따른 이익 발생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함
 - 또한 퇴직보상계약에 속한 자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경우 퇴직보상계약 관련 조세환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 이익공유 계획(Employees Profit Sharing Plans, EPSP)¹⁰⁾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규정을 마련함
 - EPSP는 회사 구성원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업경영자에게 있어 자신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이용되기도 함
 -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분담금의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이익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특별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규정을 제안함
 - 여기서 '과도한 이익'이란, 신탁관리인이 특정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자가 그 해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총액의 20%를 초과하여 분배한 금액을 의미함
- 캐나다 총독(Governor General of Canada)에 대한 급여 비과세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계정(Savings Component of a

Life Insurance Policy)에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산안에서는 비과세 테스트에 관한 세부 변경사항을 제안함

- 노령층 생활안정지원(Old Age Security, OAS)과 소득보조(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것을 제안함
 - 이러한 변경사항은 2023년 4월에 시작하여 2029년 1월에는 전면 시행될 것임
 -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함
 - 더 높은 금액의 혜택을 얻기 위해 OAS 적용을 차후로 미루는 선택권 부여
 - 공동등록연금계획(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과 관련된 퇴직소득제도 지원 계획
 - 공무원 및 국회의원의 연금 계획에 대한 유지가능성, 공정성, 재무적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 캐나다 거주자가 일정 조건을 갖추어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 100,0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하여 해외취업세액공제(Overseas Employment Tax Credit)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동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2013년부터 향후 4년 동안 단계적 폐지를 제안함

나. 법인소득세 개정안

- 클린에너지(Clean Energy)의 발생 및 보존설비에 대하여는 가속(50%)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가 적용되는데,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비투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킴

9) 소득세법하의, 고용주가 지원하고 있는 퇴직저축제도의 한 유형임

10) 일종의 신탁계약으로서 동 신탁에 대한 고용주의 분담금은 세금 목적상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신탁관리인은 매년 고용주의 모든 분담금 및 신탁으로부터의 이익 등을 수혜자에게 분배하여야 함



- 폐기물연료의 열에너지 설비
 - 주로 폐기물연료의 열에너지 설비에 의해 발생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에너지공급 시스템 장비
 -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생산된 설비의 잔여물을 사용하는 장비
- 캐나다에 소재한 특정 광물자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광비용에 대해 법인에 있어 1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바, 2012년 예산안에서는 동 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제시함
- 세액공제율은 2012년까지는 10%, 2013년에는 5%이며, 2014년 이후에는 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대서양 지방 및 Gaspé 반도 인근 지방에서 주로 농림어업, 광업, 유전 및 가스산업, 제조 및 가공업 등에 사용하는 신규 건물, 기계설비 등의 적격자산 취득에 대해 10%의 세액공제(Atlantic Investment Tax Credit)가 적용되는바,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음
- 유전 및 가스산업, 광업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함
 - 투자 적격자산의 범위에 전기발생설비, 클린에너지 발전설비도 포함시킴
- 연구개발활동(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과 관련한 조세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수정함
-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함
 - 연구개발 비용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대상 항목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 성격의 비용(Expenditures of a Capital Nature)을 제외함
 - 연구개발활동에 배부되는 간접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간편대용법(Simplified Proxy Method)을 사용하는 경우, 그 적용률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킴
 - 현행 65%를 2012년에는 60%, 2013년 이후에는 55%로 축소
 -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비용기준 산정시 정상적인 연구개발 계약으로부터의 이익요소를 제외함
-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 88¹¹⁾ 규정과 Sec 100¹²⁾ 규정을 우회하여 적용받기 위하여 파트너십(Partnership) 구조가 사용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함
- 파트너십 지분의 발생 이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Sec 8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러한 규정은 소득형자산(Income Asset)이 파트너십에 의해 직접 소유되거나, 다른 파트너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에 적용됨
 - 소득세법 Sec 100 상의 과세가능 파트너십 지분의 거래 상대방의 범위에 비과세실체(Tax-Exempt Person)뿐만 아니라 비거주자(Non-Resident Person)도 포함시킴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TP) 조정에 따른 처분 성

11) 캐나다의 내국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와의 수직합병이나 회사의 청산을 통하여 자회사의 특정 고정자산(Capital Asset)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하여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임

12) 파트너십이 소유한 소득형자산(Income Asset)은 납세자에 의해 파트너십 지분이 비과세실체(Tax-Exempt Person)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만 완전 과세가 가능하다는 내용임

격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함

- 비거주자와 비정상가격(Non Arm's Length Price)으로 거래한 캐나다 내국법인은, 그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초과지급한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으로 처분함
- 캐나다 내국법인에게 배당처분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배당으로 처분된 조정금액 상당액을 캐나다 내국법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의 일부 규정을 완전성과 공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개정함

- 부채-자본 비율을 2 : 1에서 1.5 : 1로 변경함
- 캐나다 거주법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하여도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함
- 과소자본세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원천징수 목적상 배당으로 취급함
- 캐나다 거주법인이 그가 지배하는 국외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특정 상황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함

■ 소득세법상의 침식기준 규정(Base Erosion Rules)¹³⁾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 캐나다 은행의 영업상 해외 계열사의 초과 유동성을 이용하는 경우 캐나다 은행의 세부담을 덜어줌
- 은행의 영업과정에서 독립된 고객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특정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침식기준 규정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함

다. 기타 주요 개정안

-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및 종합매출세(Harmonized Sales Tax, HST)의 내용을 일부 개정함
 - 발전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보건용역, 약제 및 의료기기에 대한 GST/HST의 적용규정을 정비함
 - 기존에는 의사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였으나, 약사의 진단 서비스 등의 전문가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하기로 함
 - 안과 의사에 의한 처방뿐만 아니라, 지방법률에 의해 자격을 갖춘 안경사의 처방에 따른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함
 - 혈액응고 감시기기 및 협심증 치료제(Isosorbide-5-mononitrate)에 대해서도 영세율 항목에 추가함
 - 자선단체 및 적절한 비영리 문학단체가 기증을 위해 구입하는 도서관 관련 GST/HST에 대해 환급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시함
 - 현행은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GST/HST의 환급이 불가능하나 언어능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것임
 - 소규모 사업자 및 소규모 공공서비스기관이 납부할 GST/HST의 금액 계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간편회계(Streamlined Accounting)¹⁴⁾를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임계점을 두 배로 늘려 보다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함
 - 연간 과세소득 기준을 200,000캐나다달러에서 400,000캐나다달러으로 상향 조정함

13)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캐나다 납세자의 과세소득이 축소될 수 있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임

14) 이 제도하에서 납세자는 과세소득에 특정한 납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게 됨



- **적격한 외국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정 외국 자선단체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변경함**
 - 현행은 외국 자선단체가 기부금 적격단체임을 캐나다에 등록하여야 함
 -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는 외국 자선단체에 대하여 캐나다 국세청이 심사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격 기부단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재난 구조나 긴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 활동
 - 캐나다의 국가적 이해를 위한 활동

- **정치적 활동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자선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규정을 마련함**
 - 정치적 활동에 대한 공의의무를 강화함
 - 국세청에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이행준수 감시를 보다 강화함

- **조세감면혜택(Tax Shelter)에 대하여 세무 기획자(Promoter)에 의한 등록과 보고의무를 강화함**
 - 규정되지 않은 절세수단을 동원하여 증여세 혜택을 얻게 한 세무기획자에 대해 가산세 적용시 그 계산방법을 변경함
 - 현행은 500캐나다달러와조세감면혜택과 관련하여 세무 기획자가 수령한 대가의 25% 중 큰 금액이나, 개정안에서는 이전 규정하의 금액과 증여된 재산가액의 25%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을 제시하여 징계를 보다 강화함
 -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조세감면혜택 등록에 대한 정보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세무기획자에 대하여

새로운 가산세 제도를 도입함

- 현행은 미신고에 대하여 100캐나다달러와 신고지연일수에 25캐나다달러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규정¹⁵⁾만을 두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국세청의 요구에 의한 특정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로부터 조세감면혜택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를 누락 신고한 경우에 세무기획자가 수령한 대가의 25%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15) 단, 2,50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함

정책 흐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
-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 추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본 자료는 2012년 5월 3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과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
- 이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으며, '09년 수립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음을 의미
- 그간 IPCC, OECD 등 국제기구와 Nicholas Stern, Jeffrey Sachs 등 석학들은 지금 당장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지 않으면 향후 큰 위기와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음
 - * 스텐보고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도 상승이 2~3°C에 그치는 경우 기후변화의 비용은 세계 GDP의 약 0~3% 내외, 5~6°C인 경우에는 세계 GDP의 5~1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
- 국제사회는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폭을 2°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왔음
 - 특히 '11. 12월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서는 '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하고, '20년부터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감축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 유럽 31개국, 뉴질랜드·호주·미국·캐나다·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국가 또는 지역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예정)*이며, 중국·대만·인도·칠레·멕시코 등 비의무감축국들도 도입을 검토중
 * EU·뉴질랜드·호주는 국가단위, 미국·캐나다·일본은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예정)

- 이번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기후변화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음
-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은 선진국의 녹색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에너지 다소비구조**인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 * EU는 '12. 1부터 역내 출·도착 항공기에 배출권 규제를 실시
 - ** 에너지원단위(TOE/천\$, '10): (한) 0.308, (일) 0.098, (미) 0.191, (OECD) 0.177
 - 에너지원단위(TOE/천\$)=에너지소비량(TOE*) / 실질국내총생산(GDP)
 - TOE : Tonnage of Oil Equivalent, 원유 1톤의 발열량
 - 녹색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 탄소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 세계탄소시장 규모(억\$) : (05) 110 → (10) 1,419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EU,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국의 배출권 거래제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음
* 배출권 할당기준·방법,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이월·차입·상쇄 등

- **(경쟁력 민감업종 배려)** 국제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무역 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적용대상)** 온실가스 다배출업체에 적용하되, 배출권거래제 적용시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문별·업종별 적용여건 및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할당위원회)** 배출권거래제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할당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 할당계획(배출허용총량, 배출권거래제 적용 부문·업종, 부문별·업종별·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 등의 사항 포함) 수립, 시장 안정화 조치, 배출량의 인증 및 상쇄,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 **(별칙)** 과태료를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결정하되, 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톤당 최고 10만원의 상한 설정

* EU의 경우 톤당 1기 40유로, 2기 100유로, 3기 100유로(유로존 물가상승률 반영)로 고정

-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앞으로 정부는 시행령 제정과정(6개월 내 제정할 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면서도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구체화할 것이며,

* 온실가스 감축시설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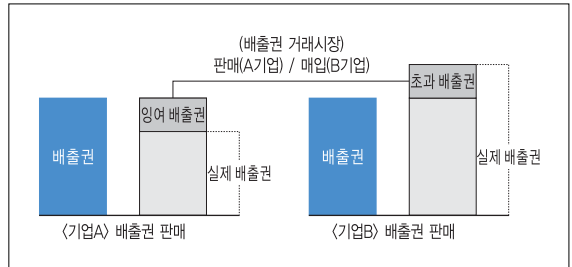
법, 경쟁력 민감업종에 대한 고려방안, 배출권 이월·차입에 대한 세부규정,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방법 등

- 나아가 산업계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금년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민간위원장)에 상정·시행할 계획

참고 1 배출권거래제 개요

가. 기념

-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메커니즘(배출권거래)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제도
-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 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 절감



나. 도입 필요성

-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 정태적 효율성***
* 기업간 한계저감비용이 모두 일치하는 수준까지 온실가스 감축(≡ 거래에 의한 비용 감축(cost savings by trading))
-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수단(목표관리제)과 달리 거래제하에서는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 가능**
- **기업의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 : 동태적 효율성***
*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
- **정태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기술 개발유인을 극대화**

- 개별기업의 행태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탄소의존형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효과 기대

참고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비교

- 양 제도는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 할당),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Measuring·Reporting·Verifying) 체계는 유사하나 유연성에서 차이
- (목표관리제) 기업은 단년도 목표이행을 위해 해당 연도 내에 소관 사업장 내에서 자체적인 감축 방안만 추진 가능
 - 할당된 목표보다 초과로 감축해도 인센티브가 없으며, 초과배출시 1천만원 내의 과태료 처분(초과된 배출량에 무관)
-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의 거래·상쇄를 활용하여 감축비용 절감 가능, 이월·차입이 가능하여 탄력적 대응 가능
 - * (상쇄) 他사업장에 자본 및 기술을 지원하여 감축한 양을 자기 감축분으로 인정
 - * (이월) 잉여 배출권을 미래 특정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
 - * (차입)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미래 특정연도로부터 당겨서 사용하는 제도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경로	국가 목표('20년 BAU 대비 30%↓) - 부문별·업종별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목표(=배출권 할당량) 설정 ※ 목표관리제에서와 배출권거래제에서 감축목표 설정 방법 동일	
MRV	목표관리제하에서 구축되는 MRV 공통 활용 ※ MRV(Measuring·Reporting·Verifying):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작용방식	직접규제 (Command and Control)	시장 메커니즘 또는 가격기능
이행경계	단년도 / 자기 사업장에 한정	다년도(5년) / 외부감축(상쇄)인정
목표달성수단	감축 실시(유일한 수단)	감축 또는 구매, 차입·상쇄
초과감축시	인센티브 無(목표달성으로 종료)	판매 또는 이월 가능
제재수준	최대 1천만원 과태료(정액)	초과 배출량 비례 과징금

참고 3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최근 동향

유럽 (3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ETS) '05~'07년 시범사업 성격의 1기 운영 후 '08년부터 EU 2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의 거래제를 연계하여 1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 스위스는 '08년부터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며 EU ETS와 연계 작업 진행 중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부터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중 * 산림·산업부문 대상 시행 중, 폐기물부문 '13년, 농업부문 '15년 시행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현황) '12년 7월부터 고정가격 거래제 도입,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유동가격)시행 예정 → 「Clean Energy Bill」하원(10.5), 상원(11.8) 통과 * 동 법제정은 녹색당 연정조건, ①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② 갈탄화력발전소 폐지 ③ 신·재생에너지 촉진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법안 상원 계류 중 • (WCI*) 미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퀘벡주가 '12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예정,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온타리오주가 '13년 도입 추진 * 북미 서부 주들의 협의체로 '12~'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 추진 • (RGGI; Regional GHG Initiative) '05년 미북동부 10개주에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발전부문 대상 전역 유상경매), WCI 등 타 지역과의 연계 모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10. 12월 각료회의에서 탄소세 도입을 결정하고, 전국 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잠정 연기 * 한편, '03년부터 석탄에 대해 기존 소비세 등에 추가하여 과세 중 • (지역 단위) 도쿄도 '10. 4월부터 의무적 제도를 시행중이고, 사이타마현이 '11. 4월, 교토부가 '11. 10월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현황) '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총량목표를 기반으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범시행하고, '15년에 전국 단위로 도입 계획 ※ 베이징, 충칭, 광둥, 허베이, 상하이, 텐진, 선전(중국 GDP의 약 1/4)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현황) '11년 3월부터 3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시행중, '11년 4월부터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인증서 거래제 도입 • (석탄세) '10. 7월부터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석탄에 대하여 톤당 50루피(약 \$1)의 세금을 부과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배출권거래제 기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기본법(General Law on Climate Change) 상원 통과('11. 12월) • 대만, 칠레, 터키, 브라질 등이 배출권거래제 도입 검토중

참고 4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 수정사항

	입법예고(안) (’10. 11)	국회제출안 (’11. 4)	국회 수정안 (’12)
① 시행시기	’13. 1. 1 시행	’15. 1. 1 시행	좌 동
② 이중규제 배제	-	배출권거래제 적용 시 목표관리제 적용 배제	좌 동
③ 할당량 조정	-	예상치 못한 신·증설 시 배출권 할당량 변경신청 가능	생산품목 변경을 조정 사유로 추가 (산업계 의견 반영)
④ 무상할당 비율	1차 90% 이상 무상 2차 대통령령, 3차 100% 유상	1차 95% 이상 (2차 계획기간 이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2차 계획기간까지 95% 이상 무상할당 (3차 계획기간 이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무역집약도,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감 업종 전체 무상할당 근거 신설
⑤ 적용대상	업체 할당량 결정시 고려	할당계획 수립시 준비 여건·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용 부문 및 업종을 결정	좌 동
⑥ 제3자 참여	제3자 참여 필요	시행 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3년 범위)	시행 초기 제3자 참여 제한(’15년부터 6년 범위)
⑦ 과징금	시장가의 5배 이하 (최고액 100만원 이하)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최고액은 삭제)	10만원 범위에서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
⑧ 과태료	5천만원	1천만원	좌 동
⑨ 산업계 지원	거래제 관련 수입 으로 자금 조성	금융·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지급근거 마련	좌 동
⑩ 기간간 이월	불 허	허용 근거 마련 (단, 1차 → 2차 이월 불가)	계획기간간 이월 전면 허용

참고 5 법률안 구성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제2장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설치
제3장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의 할당	•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 목표관리제의 적용 배제 • 배출권의 할당, 무상할당비율의 결정 •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 배출권 할당의 조정, 취소
제4장 배출권의 거래	•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 배출권 거래의 신고 • 배출권 거래소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제5장 배출량의 보고·검증 및 인증	• 배출량의 보고·검증 • 배출량의 인증
제6장 배출권의 제출, 이월·차입, 상쇄 및 소멸	• 배출권의 제출 •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 상쇄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 배출권의 소멸 • 과징금
제7장 보칙	• 금융·세제상의 지원 •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 • 실태조사, 이의신청, 수수료 등
제8장 벌칙	• 벌칙, 과태료
부 칙	• 1차 계획기간의 기간 및 무상할당비율에 관한 특례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에 관한 특례

- **(배출권 할당계획)** 정부는 5년 단위 계획기간별로 배출권의 총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 **(배출권 할당위원회)**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설치
-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 12만 5천CO₂t 이상 배출업체 또는

연 2만 5천CO₂t 이상 사업장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 **(목표관리제 적용배제)** 할당 대상업체는 녹색성장 기본법상 목표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
- **(배출권의 할당)** 할당 대상업체에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1차~2차 계획기간은 95% 이상)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할당의 조정 및 취소)** 계획기간 중 할당계획이 변경된 경우, 시설의 신·증설 등으로 할당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할당 대상업체의 전체 시설을 폐쇄한 경우 등에는 배출권을 추가 할당 또는 조정 및 취소할 수 있음
- **(배출권의 거래)**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등록부에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하여야 함
- **(배출권거래소)**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안정적 거래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서 부정거래행위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 준용
- **(시장안정화 조치)** 배출권의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할당 대상업체는 매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

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인증

- **(배출권의 제출)** 실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배출권 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이월·차입)** 배출권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할 수 있으며, 제출할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다음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차입할 수 있음
- **(상쇄)** 할당 대상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인증을 거쳐 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금융·세제상 지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제1차~제2차 계획기간)** 제1차 계획기간 '15. 1. 1~'17. 12. 31, 제2차 계획기간은 '18. 1. 1~' 20. 12. 31로 함(이후에는 5년 단위)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 「201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공동 기자회견 –

* 본 자료는 2012년 5월 1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에서 발표한 「한국, 위기대응능력 충분·미래 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OECD는 4.26(목 14:30, 프랑스 07:30) 「2012 한국 경제보고서(2012 Economic Surveys-Korea)」를 한국(은행회관)에서 개최된 OECD 사무총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 보고서는 ① 한국의 경제현황과 거시경제정책, ② 고소득 국가 수렴을 지속하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③ 사회통합 제고 방안으로 구성

② 구리아 사무총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을 높이 평가하면서,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언급

* 실업률(11): 한국 3.4%, OECD 8%, 공공부채(GDP 대비, 11): 한국 33%, OECD 100%

- 급속한 고령화 등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을 바탕으로 고소득 국가군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제고·교육 개혁·서비스 산업 발전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또한, 08년 이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이후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녹색성장분야가 중요한 성장엔진이라고 언급
-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지니계수가 악화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오히려 10년 이후 개선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하면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교육 개혁 등을 통해 사회 통합 노력을 강화하고 사회 갈등과 긴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현재 사회지출이 낮지만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되고,
- 특히, 사회지출 증가는 반드시 세입 증가를 병행하여 정부 부채를 낮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

③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한국의 위기극복 성과와 위기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감사를 표명

- OECD의 보고서는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데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통합 제고를 통해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보고서의 정책방향과 권고에 대해 공감
-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고, 필요한 대상을 중심(well-targeted)으로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권고는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
- 권고사항은 이미 추진하는 정책들도 상당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서를 분석하여 ‘정책의 빈틈과 허점’을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언급

4 한편, 기자회견 전 면담을 통해 한국정부와 OECD가 긴밀히 협조하여 위기극복 노하우·녹색성장과 같은 한국정부의 정책 노력과 성과들을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함

5 양측은 또한, OECD-기획재정부 간 지식공유 협력 플랫폼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KSP 협력 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

별첨 1 2012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주요 내용

* 보고서 원문은 http://dx.doi.org/10.1787/eco_surveys-kor-2012-en 참고

-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낮은 실업률과 건전한 정부재정을 유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
- ◇ 앞으로 「성장 잠재력 유지와 사회통합 제고」라는 두 과제를 해결할 필요
 - ① (거시정책) 고령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 등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노력 강화
 - ② (성장) 여성·청년 등 유휴 노동력 활용, 녹색성장 등을 지속 추진
 - ③ (사회통합)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등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well-targeted) 복지지출을 확대
 - ④ (성장과 사회통합) 두 목표 달성(Double dividend)을 위해서는 노동개혁·교육개혁·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등 3대 부문에 중점을 둘 필요

1. 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1> 거시경제 동향

- 한국은 신속하고 유효한 정부 대응, 수출증가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낮은 실업률 등 뚜렷한 거시경제 성과
- 세계교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12년 3.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13년에는 4.3% 전망
 - *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된다면, 빠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 12년 OECD 한국 경제 전망: 성장률 3.5%, 실업률 3.4%,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
-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유로지역 상황·개도국의 성장 둔화·유가 상승, 대내적으로는 가계 부채 등이 있음
- 건실한 재정 상태를 감안할 경우 글로벌 위기가 재발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

<2> 재정정책

-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악화가 우려
 - * 신규 복지제도의 도입 없이 현재의 복지제도(current framework)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지출이 '07년 7.6%에서 50년 20%로 증가 전망

정책 권고

- ◇ '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고령화 등 미래지출 소요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
- ◇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각해질 경우, '09년과 같이 고용 창출에 집중한 재정을 통한 단기 경기진작과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

〈3〉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11. 7월 이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

정책 권고

- ◇ 물가안정(중기 목표 $3 \pm 1\%$ 수준)을 위해 현재의 경기 둔화(soft patch)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후에는, 통화정책 긴축 재개가 필요

〈4〉 외환정책

-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향후 위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국가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등이 존재

정책 권고

- ◇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
- ◇ 자본흐름이 급변동(excessively volatile)할 경우, 적절한 통화·재정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와 같은 특정 정책이 필요

2. 경제성장 촉진 정책

- ◇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수렴*하고 있으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 잠재성장률이 둔화될 우려
-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노동시장 참여 제고·교육개혁·서비스 산업 발전·녹색성장 지속 추진 등이 필요

〈1〉 한국의 경제성장 현황과 전망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미국의 12% 수준에서 2010년 63%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나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우려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KDI)

- 향후 한국의 성장은 인구 구조적 변화(demographic change)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에 크게 좌우될 전망

〈2〉 노동시장 참여 제고

-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working-age population)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노동참여율 제고 노력 강화
- 특히,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여성,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고 고령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

정책 권고

- ◇ (여성)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 출산·육아 휴가 사용 촉진, 가족 친화적인 작업환경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 (청년)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확대 등을 통해 과잉 대학진학, 청년층 노동수급의 불일치(mismatch)* 문제를 완화
- *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의 차이
- ◇ (고령자) 정년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

〈3〉 교육 개혁

- 교육은 최빈국에서 산업선진국(leading industrial nation)으로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교육이 여전히 중요
 - * 6. 25 이후 초등교육의 발달은 60년대 경공업 발전, 중등교육의 발달은 70~80년대 자본집약산업의 발전, 90년대 대학교육의 확대는 IT와 지식집약산업 발전에 각각 기여
- 고령화 등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등 교육 전 과정에 걸친 질적 제고 노력 필요
 - * 5세 이전 조기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는 발달과정에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확대하는 데 기여

정책 권고

- ◇ 3~5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하여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인증제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 ◇ 대학 인증제도 개선, 투명성 강화, 국제화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 강화
- ◇ 정부·기업 연구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의 혁신 기여도를 향상

〈4〉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고 고소득국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 '08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53% 수준에 불과(OECD 평균 87%)
- 서비스업 고용의 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노력 필요

정책 권고

- ◇ 진입장벽 제거·규제완화 등 경쟁 촉진,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향상
- ◇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부지원을 축소하여 정부 의존을 줄여나갈 필요

〈5〉 저탄소 녹색성장

- 에너지 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의 성공이 중요

정책 권고

- ◇ 탄소가격부과(배출권거래제, 소규모 배출자에 대한 탄소세) 등 시장기제를 통해 녹색성장전략을 지속 추진할 필요
 - 녹색혁신을 촉진하고 202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를 비용-효과적인 방식으로 달성
- ◇ 생산비에 부합하도록 전기요금을 정하여 과도한 전기소비 감축

〈6〉 세제 개혁

- 한국의 낮은 국민 부담률(10년 25.1%, OECD 평균 33.2%)과 낮은 법인세율은 높은 노동량 투입, 기업가 정신 제고 등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
 - 그러나 향후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재원 확충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많이(how much)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how)으로 부담하느냐에 따라 상이

정책 권고

- ◇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게 유지
- ◇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지출 증가는 주로 부가가치세, 환경세 및 보유세 등 간접세를 통해 조달

3. 사회통합 제고

- ◇ 세계화, 기술진보가 확산되면서 성장만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기에는 한계
- ◇ 동반성장(inclusive growth)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 맞춤형 사회복지 지출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과 임금 향상,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이 필요

〈1〉 소득분배 추이 현황

- 한국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 이후 '0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10~'11년에는 2년 연속 개선
- 다만, 불평등 추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

* 지니계수 추이(도시가구 기준, 2인 기준):
 (97)0.264 (98)0.293 (05)0.298 (09)0.320 (10)0.315
 (11)0.313

- 양극화는 세계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세계적 현상으로 경제성장만으로는 해소하기에 한계

* 개도국과의 무역이 확산되면서 숙련된 노동자 수요는 증가(임금 상승)하는 반면 단순 비숙련 노동자 수요는 감소(임금 하락)

〈2〉 맞춤형 사회지출(well targeted) 확대

- 한국의 공공사회지출('07년 GDP 대비 7.6%)은 낮은 실업률,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 등으로 OECD 평균(약 19%)에 비하여 낮은 수준
-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90~'07년중 연평균 11%)하고 있어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되며 필요한 대상 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출이 필요

정책 권고

- ◇ 부양의무자 요건, 소득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범위를 확대
 - * 기초 생보급여에서 주거, 교육 등을 분리하여 수급자로 안주하려는 유인을 제거
- ◇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현재는 전체 노인의 70%)하고 지원수준을 확대

〈2〉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사회보장 범위, 훈련기회 등이 작은 이중적인 구조(dualism)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 보호로 기업들이 고용과 해고가 비교적 용이하고 임금이 작은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
- 중소기업들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
- 아울러, 비정규직은 잦은 이동 때문에 훈련기회도 작은 상황

정책 권고

-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직업훈련 확대 등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

〈3〉 교육시스템 개혁

- 유아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 학원 등 높은 사교육 의존도, 높은 대학등록금 등이 교육부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
 - * 공교육 강화, 중등교육의 다양성 확대, 대입에서 수능의 역할 축소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각적인 교육개혁 노력을 지속
- 한편, 반값 등록금(half-price tuition) 도입은 매우 신중할 필요
 - 보편적(universally)인 학비 보조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도록 하여 과잉 대학교육의 문제와 노동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악화
 - 구조조정 대상인 질 낮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격
 - 저소득층 학생을 타깃팅하는 것보다 비효율적이고 불공평하며 매년 GDP의 0.6%가 소요되어 재정에 부담
 - 타국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한번 도입 후에는 철회하기 곤란

정책 권고

- ◇ 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학원 등 사교육 의존도 축소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확대

4. 결론

-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
 - 성장과 사회지출 간의 관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은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
 - 사회지출 증가를 제어(contain)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사회복지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cautiously and incrementally) 추진
 - 아울러, 사회지출은 보편적으로(universally) 제공하는 것보다 소득·자산 조사(means-test)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을 타깃팅하여 제공
 -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투자를 줄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경쟁을 촉진
 - 사회지출의 증가가 정부 재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사회지출이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려는 시민의 의사(willingness of citizens)보다 앞서가서는(outpace) 곤란

별첨 2 OECD와의 KSP 협력의향서(LOI) 체결 개요

- 추진 배경
 - 최근 OECD는 독일과 지식공유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駐佛 한국대표부를 통해 우리나라에 지식공유 협력의사를 표명(3. 21)
 - 작년 OECD-KDI 지식공유 워크숍(11. 7) 당시 OECD가 우리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높이 평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
 - * Knowledge Sharing Program : 우리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업으로, '04~'11년간 34개국을 대상으로 300여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제공
 - 이번 OECD 구리아 총장 방한 계기에 기획재정부-OECD 간 KSP 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MOU 사전단계)를 체결하고, 협력 플랫폼을 마련

■ 주요 내용

- 포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화, 상호학습을 위해 양측간 기존 및 신규 네트워크를 아우르는 광범한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
 - 경제개발, 무역투자 활성화, 재정건전성 등 양측의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을 실시 하되, 필요시 상호간 인력 파견도 추진
 - * 세부 협력 사항, 추진 체계 등은 후속 MOU 체결을 통해 협의
- 양측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보완성을 잘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대화, 정책자문 역량을 강화

■ 기대 효과

- 이미 체결된 세계은행(WB)을 비롯한 5대 MDB와의 지식공유 MOU에 더하여 이번 OECD와 LOI를 체결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전세계 지식공유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 AfDB(10.9), IDB(11.3), ADB(11.5), EBRD(11.5), WB(11.9)
- 아울러, 최근 WB 김용 차기 총재의 발언* 등으로 우리 개발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OECD와의 신규 협력을 통해 우리 KSP 사업의 국제적 위상도 더욱 제고될 전망
 - * 김용 차기 총재는 4월 초 방한시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WB 총재로 선임되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들에 전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

* 본 자료는 2012년 5월 1일 기획재정부 성과관리과에서 발표한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5.1(화)에 개최된 제19차 국무회의에서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성과와 PI-Board」를 보고하고 시연하였음
- '12년도 재정지출규모 276.8조원 중 1/4분기까지 총 89.4조원을 집행(집행률 32.3%)하여 당초 계획(30.0%)을 2.3%p 초과 달성
 - 금년 1/4분기 집행률은 '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시기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 [('09)30.7% → ('10)31.0 → ('11)28.8 → ('12)32.3]
 - 1/4분기 재정조기집행 강화는 민간수요 보완 등 경기둔화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1/4분기 정부소비(정부투자 미포함)의 GDP 기여도가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0.7%p)

정부소비의 GDP 성장률 기여도(전년동기비, %, 한은 국민계정 속보)

	'10.1/4	2/4	3/4	4/4	'11.1/4	2/4	3/4	4/4	'12.1/4
GDP성장률	8.7	7.6	4.5	4.9	4.2	3.5	3.6	3.3	2.8
정부소비	0.6	0.5	0.4	0.5	0.2	0.3	0.5	0.3	0.7

- 정부는 1/4분기의 재정조기집행 목표 초과달성에 이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60%)도 차질없이 달성되도록 노력할 예정
 -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수시 점검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최종 수요자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실집행률 강화

에 역점을 둘 계획

- 특히, 금년에는 매년 시행중인 집행률 점검과는 별도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업, 신규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중임
- 일자리·복지 분야 등 총23개 사업(8개 부처, 6.3조원)을 연초에 핵심사업으로 선정
 - 핵심사업은 지난 연도(t-1년) 사업을 평가하는 기존 재정사업 평가와는 달리 당해 연도(t년)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 집행률 등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보여주는 질적 지표에 대한 점검을 함께 실시
- 정부는 핵심사업 관리를 위해 성과정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상황판(PI-Board: Performance Information Board)을 시범 운영중
 - ※ PI-Board: 핵심사업의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를 한 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dBrain에 구축
 - PI-Board는 분기별 평가결과를 3색(빨강, 주황, 녹색)으로 표시하여 성과달성률 현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

핵심사업 성과달성 총괄현황

보고연도: 2012년

(2012년 03월 현재) *우수 (100) *보통 (80-100) *미흡 (0-80)

부처	사업군	사업명	성과달성률 현황(%)	달성 등급
교육과학기술부(2)	교육강화	국가장학금 지원	92.6%	보통
		신규장학재단 출연	100%	우수
문화체육관광부(1)	대중문화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89.7%	보통
		농업 SOC	농업용 계수기 등 농기계	100%
보건복지부(2)	노인 정책인식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	94.5%	보통
		공로당 난방비 사업	100%	우수
환경부(9)	수질개선 [I]	공단용수처리 시설 확충	100%	우수
		생태하천 복원사업	89.4%	보통
		기후변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96.4%	보통
		산업단지 상하수도 시설 확충	100%	우수
	수질개선 [II]	비점오염 저감사업	98.2%	보통
		천수관개 정비	99.6%	보통
		천수처리장 확충	100%	우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99.1%	보통
고령노동부(4)	사회보험	연단위 하소처리장 확충	100%	우수
		사회보험 시각지대 해소	100%	우수
		취업지원	실업자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90.5%
여성가족부(1)	여성취업	신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88.6%	보통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92.8%	보통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00%	우수
중소기업청(3)	청년창업	청년창업 창업자금	96.3%	보통
		창업 사업화 지원	100%	우수
		연출투자 지원펀드	100%	우수

- 금년 시범운영 성과를 보아 내년부터 희망부처를 대상으로 핵심사업 PI-Board 점검을 본격 추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

- 보육료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 -

* 본 자료는 2012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 국고과에서 발표한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분 자치단체 교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조기에 정산 실시
- '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5.13조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96조원의 95.2%인 1.86조원을 5월 14일에 자치단체에 교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금액 11,567억원 중 금번에 10,620억원을 교부*하고 교육교부금 8,019억원은 전액 교부

* 금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6월말에 529억원을 교부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 발생시 행안부 요청에 따라 교부할 계획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내역

(단위: 조원)

'11 세계 잉여금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국가채무상환		④ 세입이입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5.13	1.96	0.95	0.67	1.55

- 금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신규 재원으로서 금년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 가능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 본 자료는 2012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금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추어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
 - **(주요 내용)** 부동산의 거래동결효과를 야기하는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정상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세법상 요건을 완화
 - 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3주택 60%, 2주택 50% → 6~38%)
 - ② 주택의 단기 양도세율 인하(1년 내 양도 50% → 40%), (2년 내 양도 40% → 6~38%)
 - ③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완화(3년 → 2년)
 - ④ 1세대 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2년 → 3년)
 -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6. 21) 및 국무회의(6. 26) 상정 후 시행령 개정안(③, ④번 내용)은 6월 하순에 공포하고 법률개정안(①, ②번 내용)은 국회가 개최되는 대로 조속히 제출할 예정
- 금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참고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104 ①)

-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3주택 이상 60%, 2주택자 50%)
 - 다만, 12년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 적용(6%~38%)
- * 3주택자 이상(60%세율, '04년 시행), 2주택자(50% 세율, '07년 시행)
- * 주택 수: (3주택 이상)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 주택
(2주택) 수도권 소재 주택과 광역시·기타지역의 3억원 초과 주택
- **(개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의 단기양도 세율인하(소득세법 §104 ①)

- **(현행)** 부동산 단기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세율로 중과(1년 미만 보유 50%, 2년 미만 보유 40%)
 - * 1년 내 단기양도(50% 세율, '04년 시행), 2년 내 단기양도(40% 세율, '04년 시행)
- **(개정)** 1년 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시에는 일반세율(6%~38%)로 과세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완화(소득령 §154①)
 - (현행)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비과세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3년간 주택을 보유하도록 규정
 - (개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완화
 -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④ 1세대 1주택 대체취득기간 완화(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소득령 §155①)
 - (현행) 이사 과정에서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개정) 대체취득과정에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
 - 다만, 1세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2년으로 단축된 점을 고려하여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
 -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

* 본 자료는 2012년 5월 3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영세율 적용 대상업종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7. 1일 이후 시행할 예정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주요 개정내용

- ①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추가(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 (현행) 외화획득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에 기존 「사업서비스업」을 대체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규정('12. 2. 2 시행령 개정, '12. 7. 1 시행예정)
 - (개정) 외국 선주에 선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을 추가

- ② 수의사법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동물 진료부를 매출대장으로 갈음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옮겨 규정
 - (현행) 시행규칙에 진료부에 매출대장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매출대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
 - (개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으로 옮겨서 규정

* '11. 7월 동물진료 과세전환 후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예: 예방접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동물병원에서 부가치세 면제대상 진료 제공시 이를 매출대장에 작성·보관토록 함

2. 적용시기

- 시행일(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

* 본 자료는 2012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 및 대응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 동향 및 대응방향

I. 검토 배경

- 최근 WTO, DDA 등 다자협상이 부진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FTA가 늘어나는 추세
- 2012년 1. 15일 현재 WTO에 511개 지역무역협정(RTA)이 통보된 상황이며, 이 중에서 319개가 발효된 상황
 - * 2010년에만 14개, 2011년 11개의 RTA가 WTO에 통보되는 등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타개하고자 공세적인 수출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였으며,
 - 내수 의존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세적 수출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
 - 이를 위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WTO 협정의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무역 이익을 추구
- 이에 따라 주요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1조달러에 이르렀고 7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지님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일본, EU, 중국의 FTA 등 통상정책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

II. 주요국 동향

1. 미국

- 2012년 미국의 통상정책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
-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출범시킨 국가수출 확대정책*을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 국가수출확대정책(National Export Initiative)은 ① 수출진흥 노력 강화 ②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접근 제고 ③ 외국의 통상장벽 제거 ④ 통상규범 이행 강화 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핵심
- (중소기업 수출지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등의 협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
- (무역자유화 확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갖춘 미국 기업들의 수출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적재산권 분야 지원)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 지원

■ 적극적인 FTA 정책을 통한 미국의 무역이익 확보 추구

• (콜롬비아, 파나마 FTA)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를 조속히 발효할 계획

• (TPP) 미국은 2012년에 TPP 협상을 마무리하여 미국의 무역·투자 이익을 확보할 계획

* 현재 협상 진행중인 9개국 이외에 추가로 캐나다, 일본, 멕시코가 신규 가입을 추진중

• (미국·EU FTA) 로이터 통신(2012. 4. 5)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포괄적 FTA 협상 착수를 진지하게 검토중

• (기타 FTA) 기타 협상중인 FTA는 별다른 진전 없는 상황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안데안 공동체(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에콰도르, 태국, FTA(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UAE, 말레이시아

■ 한편, 미국은 WTO를 통해서 해외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무역이행체제를 강화

• (對러시아 교역 확대) 2011년 러시아가 WTO에 신규 가입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교역을 확대할 계획

• (무역이행체제 강화) WTO를 통한 강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이행체제를 강화할 계획

- 교역파트너와 분쟁 해결 노력 강화, 중국·EU·기타 교역국들과 공평한 경쟁의 장 확보, WTO규범에 근거한 투명성 강화

2. EU 통상정책

■ 역외 교역국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협상 포

괄범위를 확대

• 역내 성장률 둔화에 따라 대외수요를 통한 성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바, FTA를 통한 해외수요 확보를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인식

- EU는 '글로벌 유럽' * 전략에 따른 적극적인 FTA 정책을 유지**하는 등 공격적인 FTA 정책을 추진중

* '글로벌 유럽(2006년 발표)'은 FTA를 통해 대외교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통상전략으로 동 전략에 의거 EU는 한국과 FTA를 체결

** '06년 이후 Andean Community, 중앙아메리카와 FTA 마무리 외에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도 FTA 협상 진행 중

• 현재 협상중인 FTA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 투자여건 개선, 지적권 보호,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협상 이슈를 확대

- EU 기업에 유리한 해외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표준 및 기준 부문에서의 우위를 활용,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주력

* 리스본 조약 발효(2009.12)로 EU 통상정책 범위가 확대(개별국 권한이 EU로 승계되어 공격적 통상정책 추진여건이 한층 개선

■ 원칙적으로 포괄적 FTA를 지향하나, FTA 외연 확대를 위해 개도국과의 차별화된 FTA까지도 시도중

• Andean Community, 중앙아메리카와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지중해권, ACP 국가와도 각각 EuroMed, EPA 협상을 통해 기존의 무역협정을 업그레이드 중

* ACP: African, Caribbean, Pacific.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동 국가들이 개도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상대국의 수준을 감안한 차별화된 FTA를 추진

• 인접국 및 舊식민지국 외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국가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

- 현재 말레이시아(6차 협상 완료), 베트남(협상개

시 중)과의 FTA 협상 진행중,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협상 고려중

- 거대교역국과는 FTA보다는 이슈 중심의 협상을 지향하나 최근 일본과의 FTA 논의가 진전
-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과의 FTA 추진이 진전되어 올해 6월(EU·日 정상회담) FTA 협상에 대한 합의가 예상
 - EU 측이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계(자동차) 반발이 예상되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

3. 일본

- 일본의 FTA 전략은 '아시아·개도국 중시' 라는 종래 노선에서 '아시아태평양·선진국 중시' 라는 새로운 노선으로 전환
- 위와 같은 노선 전환이 국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거대시장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 (TPP) 노다 정부는 2011년 11월 TPP 참여 발표 이후, 미국 등과의 사전협의를 진행중이나 가시적 성과는 부재
 - 미국은 ① 자동차시장의 비관세장벽 철폐, ②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③ 일본 우정그룹의 은행, 보험 우대조치 철폐*를 협상 참가의 선결조건으로 제시
 - * 일본 우정그룹은 우편은행, 우편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정책적으로 우대되고 있어서 미국은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
 - TPP에 대해서는 농업계, 의료계 등의 반발이 거세고 집권 민주당 내에도 반대세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

• (일-EU FTA) 일본 정부는 EU와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

- 일본은 2011년 중반부터 EU와 사전협상*을 추진해 왔고 금년 6월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 선언을 희망

* EU가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27개회원국의 합의가 필요한데 의장국 덴마크는 금년 5월 합의를 목표

- 일본이 EU와의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데에는 한-EU FTA 체결*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일본 경단련 등 경제계는 한-EU FTA로 인해 EU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EU와의 FTA 체결을 강하게 요구

- EU의 요구조건은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

* 다만, 일본 정부가 비관세장벽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

■ 최근에는 자원, 에너지, 식량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FTA 협상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

• (캐나다) '12. 3월, "일-캐나다 경제동반자협정의 공동보고서"를 발표*하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체결이 필요함을 제시

* 일-캐나다 공동연구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4차례 개최되었고 2012년 3월에 발표

- 공동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자원, 식량 안정공급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
- 일본 정부는 일-캐나다 FTA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실현의 중요한 단계라는 인식을 표명

* APEC 전체 회원국간에 FTA를 사전연구 중인 단계로 TPP가 완성되면 FTAAP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한편,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놓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WTO에서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

- 일본은 미국, EU와 함께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의 수출을 규제하는 중국을 WTO 협정위반으로 제소
-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열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데 중국은 희토류 수출규제를 대항수단으로 활용
 - * 희토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산업에서 사용되는 17종류 원소의 총칭이며, 소비국과 공급국 간의 대립이 첨예화

4. 중국

- 중국은 '대외무역발전 방식 전환*'의 가속화¹⁾를 추진
 - * 무역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과도한 무역흑자를 축소하고 국내 산업 부가가치 상승과 연계되지 않는 가공무역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음
 - * 2007년 4월 1,140개 품목, 2008년 4월 1,816개 품목, 2010년 11월 44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
- 또한, 2011년 3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을 통해 수출의 질 제고, 수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역정책 발표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수출상품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술, 브랜드, 품질,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양성
 - 노동집약형 수출제품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기계·전자제품 및 첨단제품의 수출을 확대하며, 에너지 과다 소비·오염 유발·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
 - 가공무역을 단순가공에서 연구개발·디자인·핵심부품 제조 및 물류 등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여 국내 부가가치사슬과 연계 추진
- 중국 정부는 2012년 3월 30일에 '대외무역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지도의견(關於加快轉外變展方式的指導意見)'을 발표하고 향후 무역의 질적 성장을 더욱 강조할 것임을 밝힘

- 한편, 중국은 2003년 이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을 시행
 - * 200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대외개방의 폭과 심도를 확대하고, 개방형 경제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것임을 표방
 - * 또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재차 FTA 추진을 가속화할 것임을 밝힘
- 중국은 현재 기체결 10건, 협상 중 7건 그리고 검토 중(공동연구 추진 또는 완료) 2건의 FTA를 추진중

중국의 FTA협상 추진 현황

	기체결(10개)	협상중(7개)	검토중(2개)
국가	홍콩, 마카오, 대만,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한국('12.5.2일 개시), GCC*,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스위스	인도, 중·일·한

* GCC(걸프연합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홍콩·마카오와는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대만과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 중국의 FTA 체결대상국 선정요인은 외교·안보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
 - 경제적 요인으로 ① 에너지·자원 확보, ② 무역마찰 회피(수출시장 다변화, 對서구 우회수출), ③ 시장경제지위 승인 유도, ④ 산업경쟁력 제고, ⑤ 해외화교와의 연계 강화, ⑥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이 있음
 - 외교·안보적 요인으로는 지역 리더십 강화, 對美 견제 등을 들 수 있음
- 단계적 FTA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로의 방식 전환
 - 중국은 FTA 체결시 상품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투자 부문은 상품 FTA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으나, 2008년부터 포괄적인 FTA 체결로 전환

* 2008년 들어 중국이 체결한 중·뉴질랜드, 중·싱가포르 FTA는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MRA 등을 최초 FTA 체결시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취함.

III. 대응 방향

1. 국내시장 개방 압력 증대에 대응

- 미국과 EU는 성장 및 고용창출의 추동력으로 수출확대정책을 명시하고 있어 통상마찰 증가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대응 필요
- 한·미, 한·EU FTA의 발효 후 신설되는 양국간의 각종 위원회 및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 방지
-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되던 국내제도를 사전 점검하여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통상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
- 미국과 EU의 대중국 통상압력 여파가 우리에게 파급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그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략 마련
- 동아시아의 분업구조상 美·中 통상갈등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
 - * 미국의 중국 제소시 우리나라와 같은 주변의 대미흑자국도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 한·EU FTA와 관련 對中 부품의존도가 높은 우리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 강화에 대비
 - *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중국의 무역관행과 대중국 무역적자에 대해 민감한 반응

2. 신흥경제권과 적극적인 FTA 추진

-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신흥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흥경제권과 적극적인 FTA를 추진

- 신흥경제권과의 既 체결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를 업그레이드하여 신흥시장 선점에 우위 확보

- 한·중 FTA 체결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대 도모
- 향후 중국의 무역은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 둔화, 무역수지 흑자 및 가공무역 규모 축소 등의 조정기를 거치게 될 것
 - 특히, 관세혜택을 받아오던 가공무역의 비중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일반무역, 즉, 내수용 수입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더욱 중요해짐
 -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은 5.9%로 경쟁국인 일본(11.6%), 미국(8.3%), 독일(7.5%)보다 낮은 편으로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 중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확대되는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만 등 경쟁국과 경합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 철폐에 주력할 필요

| 재정통계 |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_성질별, 단체별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_성질별, 단체별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_성질별, 단체별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16,166,280	6,505,174	3,248,365	960,157	759,476	545,514	466,304	525,359	
	인건비	2,245,278	860,193	463,115	146,316	92,625	61,132	49,909	47,097	
	물건비	1,899,705	734,025	363,438	136,283	77,030	69,386	40,726	47,162	
	경상이전	1,266,086	412,095	160,502	58,743	33,377	35,567	90,785	33,120	
	자본지출	9,191,808	3,602,057	1,712,305	536,353	459,718	346,913	203,720	343,048	
	융자 및 출자	496,238	295,020	196,195	16,842	23,509	9,421	30,679	18,373	
	보전재원	460,909	186,098	56,470	40,126	34,612	11,019	28,076	15,795	
	내부거래 기타	369,449 236,807	342,291 73,396	265,690 30,651	12,022 13,471	31,151 7,453	5,449 6,628	15,486 6,924	12,494 8,270	
1991	합계	21,850,177	8,602,374	4,448,961	1,301,419	882,298	683,420	716,835	569,441	
	인건비	2,754,319	1,071,203	582,113	176,201	113,510	76,276	62,676	60,429	
	물건비	2,413,158	842,747	350,814	183,107	103,734	86,144	62,163	56,784	
	경상이전	1,371,605	481,407	195,950	93,843	52,277	44,372	56,434	38,531	
	자본지출	13,190,510	4,994,135	2,663,042	675,157	502,101	417,906	403,517	332,414	
	융자 및 출자	626,297	456,214	344,471	53,095	32,819	7,127	17,291	1,411	
	보전재원	881,796	399,237	157,893	33,737	38,967	14,641	94,077	59,923	
	내부거래 기타	329,265 283,226	280,794 76,636	124,176 30,502	70,932 15,346	29,655 9,236	28,108 8,847	14,153 6,525	13,770 6,180	
1992	합계	26,659,809	11,239,537	5,819,306	1,975,937	1,084,714	916,394	734,601	708,585	
	인건비	3,280,681	1,279,945	693,864	202,993	132,714	94,581	79,426	76,367	
	물건비	3,191,713	1,136,100	509,749	222,967	137,994	110,362	80,469	74,559	
	경상이전	1,919,009	853,656	491,991	137,867	64,818	63,506	51,620	43,854	
	자본지출	15,424,433	6,414,125	3,071,301	1,230,524	651,609	592,571	425,081	443,039	
	융자 및 출자	721,514	518,231	391,313	43,124	41,792	6,750	24,648	10,604	
	보전재원	1,138,081	325,754	137,290	43,062	47,755	6,374	52,862	38,411	
	내부거래 기타	429,653 554,725	369,555 342,171	227,530 296,268	81,338 14,062	714 7,318	32,988 9,262	12,856 7,639	14,129 7,622	
1993	합계	28,874,545	12,149,016	6,309,766	2,032,130	1,131,815	1,189,188	750,642	735,475	
	인건비	3,791,439	1,473,353	791,072	232,096	154,339	113,622	91,740	90,484	
	물건비	3,406,202	1,234,673	564,758	242,610	126,736	129,333	88,552	82,684	
	경상이전	2,310,125	875,176	385,902	183,617	83,336	97,117	72,237	52,967	
	자본지출	16,118,050	6,619,023	3,099,580	1,162,374	679,936	793,291	418,376	465,466	
	융자 및 출자	676,499	306,756	239,129	36,269	4,061	3,237	17,594	6,466	
	보전재원	993,190	320,753	148,438	66,785	44,804	10,267	40,972	9,487	
	내부거래 기타	1,239,841 339,199	1,173,450 145,832	983,302 97,585	95,900 12,479	30,831 7,772	31,791 10,530	13,058 8,113	18,568 9,353	
1994	합계	32,536,378	13,360,523	6,668,548	2,238,251	1,805,839	1,092,799	685,539	869,547	
	인건비	4,291,627	1,641,073	867,133	259,978	174,352	136,258	101,709	101,643	
	물건비	3,638,562	1,334,578	663,144	221,027	145,041	140,772	76,828	87,766	
	경상이전	3,343,094	1,209,963	432,747	277,585	139,243	134,745	131,545	94,098	
	자본지출	17,542,871	7,066,850	3,320,762	1,205,417	1,207,663	602,736	298,065	432,207	
	융자 및 출자	712,046	323,875	186,180	74,259	3,166	8,236	6,884	45,150	
	보전재원	1,495,376	368,264	86,162	70,390	73,812	14,257	47,671	75,972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1,435,562 77,240	1,373,880 42,040	1,077,778 34,642	128,879 716	60,977 1,585	53,739 2,056	20,442 2,395	32,065 646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9,661,105	2,209,349	851,064	610,192	850,906	810,070	1,232,957	1,172,458	1,720,208	203,901
1,385,084	265,337	131,510	98,538	124,433	140,174	171,870	208,959	206,893	37,370
1,165,680	237,575	104,295	79,319	99,343	111,140	146,182	157,271	202,916	27,639
853,991	172,973	58,265	42,409	61,928	74,249	85,768	85,131	255,625	17,644
5,589,751	1,343,382	503,379	352,945	510,101	424,346	738,725	637,234	969,041	110,600
201,219	108,714	11,118	6,486	9,147	12,288	26,304	15,322	9,714	2,125
274,811	46,424	27,309	18,413	29,713	31,081	40,155	37,186	40,456	4,074
27,157	5,150	274	1,142	359	731	2,623	7,511	9,042	325
163,412	29,793	14,915	10,940	15,881	16,061	21,332	23,846	26,521	4,124
13,247,802	3,234,106	1,153,711	779,731	1,171,913	1,251,944	1,619,692	1,621,496	2,130,623	284,586
1,683,116	329,528	160,761	118,062	149,758	167,267	207,103	253,932	251,272	45,433
1,570,411	321,489	137,203	100,860	140,450	145,133	199,340	218,970	271,284	35,682
890,198	167,290	67,147	79,597	82,827	101,224	129,301	114,618	123,680	24,514
8,196,375	2,194,634	708,298	446,930	729,035	729,122	978,114	924,094	1,329,552	156,595
170,083	41,944	12,640	5,018	7,598	47,232	14,602	21,007	10,762	9,281
482,558	130,410	45,324	12,147	41,692	40,183	59,113	51,951	97,167	4,570
48,471	6,117	1,214	4,577	2,469	1,082	8,424	8,787	12,860	2,942
206,590	42,694	21,124	12,541	18,083	20,701	23,695	28,137	34,046	5,570
15,420,272	3,782,527	1,237,532	1,013,025	1,318,452	1,403,339	1,733,048	2,081,664	2,455,227	395,458
2,000,736	398,031	190,315	141,993	180,103	198,836	245,843	296,470	294,268	54,877
2,055,613	422,618	177,374	130,313	188,630	192,167	250,139	280,522	364,898	48,952
1,065,353	201,364	83,960	75,061	96,907	122,429	154,970	135,957	162,113	32,592
9,010,308	2,377,773	715,836	567,744	781,850	762,787	958,829	1,232,191	1,376,370	236,928
203,283	29,403	10,704	7,072	17,410	55,087	13,128	46,874	10,818	12,787
812,327	296,204	34,914	57,708	34,081	53,493	81,484	47,882	203,407	3,154
60,098	17,152	7,773	1,701	1,774	951	5,019	14,434	10,655	639
212,554	39,982	16,656	31,433	17,697	17,589	23,636	27,334	32,698	5,529
16,725,529	4,034,326	1,381,960	1,095,215	1,567,140	1,525,748	1,812,675	2,115,158	2,744,425	448,882
2,318,086	471,989	218,437	163,709	207,797	230,981	282,887	339,012	339,903	63,371
2,171,529	482,187	189,809	128,843	196,001	216,215	261,574	304,291	341,279	51,330
1,434,949	367,282	116,627	83,621	132,104	174,495	168,571	172,312	182,258	37,679
9,499,027	2,467,835	745,385	635,362	919,911	802,697	953,675	1,187,401	1,522,118	264,644
369,743	30,758	45,614	29,417	10,215	19,417	30,839	37,623	147,744	18,116
672,437	161,122	44,587	37,859	71,900	66,450	66,414	45,905	171,404	6,796
66,391	6,915	5,379	2,500	14,030	1,307	25,257	3,153	6,358	1,492
193,367	46,238	16,122	13,904	15,182	14,186	23,458	25,461	33,361	5,454
19,175,855	4,554,481	1,518,207	1,079,666	1,736,086	1,814,888	2,101,886	2,581,311	3,289,970	499,360
2,650,554	546,009	249,273	186,895	238,793	263,176	321,234	387,777	385,113	72,284
2,303,984	473,373	191,056	141,359	204,999	224,915	294,367	347,098	361,766	65,051
2,133,131	682,070	157,977	113,759	171,117	210,813	228,529	232,365	285,776	50,725
10,476,021	2,517,477	836,197	582,940	1,028,955	987,290	1,129,804	1,391,571	1,738,232	263,555
388,171	24,801	14,599	13,209	14,755	13,281	40,476	58,164	190,828	18,058
1,127,112	289,116	54,431	35,748	66,134	110,423	80,950	156,716	307,083	26,511
61,682	11,940	10,193	1,341	10,419	1,852	2,746	3,814	17,451	1,926
35,200	9,695	4,481	4,415	914	3,138	3,780	3,806	3,721	1,250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5	합계	36,664,805	14,474,290	6,659,918	2,562,708	1,855,900	1,477,617	942,531	975,616	
	인건비	4,759,859	1,853,526	944,070	293,276	208,337	180,189	113,522	114,132	
	물건비	4,507,873	1,750,753	870,046	280,391	193,801	194,009	101,431	111,075	
	이전경비	4,158,593	1,844,987	817,588	373,844	229,191	189,721	126,793	107,850	
	자본지출	20,418,748	7,686,213	3,387,430	1,453,875	1,044,012	793,829	468,307	538,760	
	융자 및 출자	599,375	211,246	159,754	10,088	8,763	24,930	1,338	6,373	
	보전재원	1,506,002	521,190	99,820	105,466	108,650	39,882	104,060	63,312	
	내부거래	658,309	595,481	381,210	45,042	60,855	51,044	23,745	33,585	
예비비 및 기타	56,046	10,894		726	2,291	4,013	3,335	529		
1996	합계	44,444,694	17,705,950	8,357,394	3,202,976	2,080,550	1,915,883	1,184,000	965,147	
	인건비	5,314,514	2,073,057	1,048,577	332,774	230,682	205,492	127,805	127,727	
	물건비	5,371,388	1,995,815	958,506	320,313	228,699	232,456	119,261	136,580	
	이전경비	5,292,322	2,395,288	1,117,470	463,822	253,651	265,902	168,704	125,739	
	자본지출	24,064,218	8,765,631	3,861,282	1,713,695	1,069,213	1,039,925	627,610	454,806	
	융자 및 출자	970,179	378,773	253,514	20,095	46,226	10,074	28,883	19,981	
	보전재원	1,856,303	827,324	369,795	103,603	155,338	64,000	76,741	57,847	
	내부거래	1,329,091	1,175,300	714,864	218,468	91,788	74,626	33,332	42,222	
예비비 및 기타	246,679	94,762	33,386	30,206	4,953	24,308	1,664	245		
1997	합계	50,958,970	20,443,997	9,295,720	3,458,885	2,478,202	2,099,208	1,350,210	1,069,678	692,094
	인건비	5,916,763	2,354,918	1,137,535	367,454	252,063	230,158	139,100	142,164	86,444
	물건비	6,037,429	2,416,479	1,106,732	387,768	262,865	271,188	135,266	152,432	100,228
	이전경비	6,319,215	2,934,038	1,467,669	494,370	283,507	282,397	194,417	145,812	65,866
	자본지출	28,101,971	10,345,765	4,370,161	1,808,157	1,368,955	1,138,009	744,909	522,656	392,918
	융자 및 출자	1,054,624	480,954	332,479	11,522	90,014	16,526	19,242	9,797	1,374
	보전재원	1,641,741	501,340	35,958	105,367	123,667	74,517	71,601	48,363	41,867
	내부거래	1,598,648	1,307,694	825,038	223,415	89,639	78,987	40,852	46,516	3,247
예비비 및 기타	288,579	102,809	20,148	60,832	7,492	7,426	4,823	1,938	150	
1998	합계	51,604,709	20,506,407	9,155,310	3,408,850	2,672,221	2,180,265	1,347,724	1,061,563	680,474
	인건비	5,919,643	2,386,486	1,165,854	359,564	253,540	233,103	138,318	142,595	93,512
	물건비	6,777,138	2,721,686	1,223,048	432,276	305,762	296,761	166,686	172,345	124,808
	이전경비	6,982,516	3,088,761	1,364,710	574,692	359,169	321,617	231,706	160,554	76,313
	자본지출	26,711,897	9,123,061	4,065,737	1,346,004	1,059,952	1,163,632	694,557	486,919	306,260
	융자 및 출자	1,139,256	581,342	485,115	4,575	76,741	4,392	1,186	7,932	1,401
	보전재원	2,225,123	1,280,949	51,231	466,039	527,243	79,124	72,905	47,863	36,544
	내부거래	1,622,708	1,265,883	776,608	213,694	85,569	69,819	38,020	42,356	39,817
예비비 및 기타	226,428	58,239	23,007	12,006	4,245	11,817	4,346	999	1,819	
1999	합계	53,979,397	21,977,349	9,535,560	4,062,627	2,717,773	2,188,272	1,411,434	1,158,594	903,089
	인건비	5,920,533	2,385,796	1,131,525	372,025	263,605	232,898	140,573	147,351	97,819
	물건비	6,478,857	2,678,732	1,276,128	361,399	293,784	294,392	164,230	159,582	129,217
	이전경비	9,764,185	4,211,738	1,718,402	853,546	598,920	416,377	273,772	225,813	124,908
	자본지출	26,557,188	9,306,409	3,816,851	1,602,220	1,230,192	1,056,254	650,872	499,598	450,422
	융자 및 출자	939,516	647,937	524,863	11,792	76,227	6,763	1,199	24,740	2,353
	보전재원	2,507,859	1,397,000	260,783	625,644	154,836	104,549	139,649	54,128	57,411
	내부거래	1,585,534	1,290,079	790,673	222,447	90,971	69,426	38,832	44,770	32,960
예비비 및 기타	225,725	59,658	16,335	13,554	9,238	7,613	2,307	2,612	7,999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2,190,515	5,334,353	1,743,036	1,435,896	2,020,323	2,164,947	2,564,314	2,792,882	3,555,797	578,967
2,906,333	595,020	276,088	207,154	263,910	289,744	352,799	416,890	420,619	84,109
2,757,120	608,763	229,616	177,579	251,948	261,711	327,539	394,666	429,195	76,103
2,313,606	641,987	151,795	124,016	203,483	234,472	268,476	251,330	374,933	63,114
12,732,535	3,070,413	982,450	869,699	1,166,364	1,276,249	1,398,970	1,537,648	2,117,670	313,072
388,129	35,996	23,214	14,785	38,287	19,888	76,773	102,847	53,117	23,222
984,812	351,976	70,222	33,719	79,298	80,791	127,590	79,838	146,254	15,124
62,828	22,270	5,365	1,556	10,605	1,612	8,498	3,829	5,751	3,342
45,152	7,928	4,286	7,388	6,428	480	3,669	5,834	8,258	881
26,738,744	6,673,946	2,176,463	1,743,777	2,572,878	2,625,554	3,060,907	3,234,156	3,934,201	716,862
3,241,457	688,199	304,642	230,071	291,096	317,251	389,493	460,011	465,518	95,176
3,375,573	768,422	288,087	217,629	294,521	324,201	402,776	483,882	502,946	93,109
2,897,034	778,775	239,843	170,519	269,966	278,606	319,591	309,563	440,775	89,396
15,298,587	4,001,494	1,197,854	992,837	1,516,692	1,473,463	1,760,053	1,822,046	2,162,413	371,735
591,406	99,417	52,189	58,195	27,771	74,523	71,480	62,186	102,353	43,292
1,028,979	254,113	78,603	65,960	138,748	77,024	83,277	73,917	238,385	18,952
153,791	64,897	12,802	5,322	28,094	2,245	13,099	12,715	10,254	4,363
151,917	18,629	2,443	3,244	5,990	78,241	21,138	9,836	11,557	839
30,514,973	8,094,992	2,681,896	1,853,529	2,751,956	2,998,571	3,559,395	3,689,625	3,981,097	903,912
3,561,845	778,715	342,580	256,743	328,925	353,136	439,596	516,854	437,523	107,773
3,620,950	847,258	319,043	234,209	319,923	334,889	451,070	536,018	471,847	106,693
3,385,177	949,298	262,453	180,260	292,739	354,888	358,281	402,048	470,950	114,260
17,756,206	4,778,242	1,611,712	1,092,363	1,572,109	1,770,924	2,066,843	2,053,562	2,295,166	515,285
573,670	180,490	42,410	21,629	50,989	31,844	72,198	43,723	100,055	30,332
1,140,401	341,136	72,863	51,966	147,487	128,317	117,443	100,399	157,575	23,215
290,954	134,383	15,548	9,518	32,142	12,759	49,176	14,149	16,929	6,350
185,770	85,470	15,287	6,841	7,642	11,814	4,788	22,872	31,052	4
31,098,302	8,319,384	2,793,888	1,968,138	2,640,966	3,058,696	3,728,575	3,746,708	3,880,809	961,138
3,533,157	788,722	342,451	259,485	326,245	343,983	428,024	509,462	428,134	106,651
4,055,452	972,919	341,879	254,402	365,543	389,783	546,275	578,527	497,318	108,806
3,893,755	1,141,991	319,087	225,002	324,662	370,164	444,224	468,843	465,925	133,857
17,588,836	4,654,825	1,612,860	1,130,706	1,448,035	1,785,605	2,128,821	2,044,349	2,251,116	532,519
557,914	222,530	44,227	21,482	45,404	43,997	56,215	41,831	70,638	11,590
944,174	271,113	107,571	56,903	95,380	62,088	94,044	86,448	130,203	40,424
356,825	225,563	16,039	14,681	28,771	11,056	9,813	10,320	17,815	22,767
168,189	41,721	9,774	5,477	6,926	52,020	21,159	6,928	19,660	4,524
32,002,048	8,530,577	2,790,886	2,001,945	2,790,319	2,843,697	3,781,617	4,183,872	4,112,712	966,423
3,534,737	802,695	343,044	252,907	323,347	338,483	429,955	510,218	424,846	109,242
3,800,125	1,033,787	311,912	240,419	324,740	368,956	456,298	512,703	442,692	108,618
5,552,447	1,742,761	398,698	346,612	483,536	486,561	613,452	680,545	635,560	164,722
17,250,779	4,493,045	1,564,258	1,034,505	1,445,325	1,519,439	2,086,714	2,299,456	2,315,604	492,433
291,579	26,186	37,371	22,415	30,836	26,785	59,528	46,456	24,069	17,933
1,110,859	267,540	94,423	73,908	132,005	76,009	89,564	102,531	215,948	58,931
295,455	126,376	34,134	25,679	29,685	13,518	15,091	16,712	21,367	12,893
166,067	38,187	7,046	5,500	20,845	13,946	31,015	15,251	32,626	1,651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0	합계	56,107,869	22,540,825	10,417,421	3,511,092	2,781,419	2,136,805	1,421,965	1,268,508	1,003,615
	인건비	6,197,751	2,487,171	1,184,671	381,780	261,442	244,266	152,741	156,905	105,366
	물건비	6,637,621	2,629,079	1,254,327	352,006	280,340	306,581	150,869	149,512	135,444
	이전경비	10,894,551	4,884,354	1,930,642	1,035,937	685,774	525,223	297,247	261,179	148,352
	자본지출	27,366,105	9,723,127	4,435,701	1,408,145	1,235,569	891,718	679,775	561,398	510,821
	융자 및 출자	1,209,452	776,755	601,093	34,891	71,706	16,748	16,218	11,343	24,756
	보전재원	1,818,471	563,701	126,647	90,790	104,580	55,588	80,762	64,082	41,252
	내부거래	1,796,378	1,423,122	874,176	199,853	125,951	86,385	41,340	61,606	33,811
예비비 및 기타	187,540	53,516	10,164	7,690	16,057	10,296	3,013	2,483	3,813	
2001	합계	67,504,855	26,495,528	11,820,615	4,310,191	3,230,789	2,794,116	1,690,097	1,500,863	1,148,857
	인건비	6,734,953	2,733,587	1,316,148	413,415	278,652	283,018	159,512	163,835	119,007
	물건비	7,111,583	2,683,125	1,268,331	375,988	271,239	328,686	152,476	151,353	135,052
	이전경비	13,606,702	6,004,785	2,502,335	1,160,768	745,729	660,018	410,510	328,751	196,674
	자본지출	30,438,869	9,713,146	3,870,162	1,759,656	1,193,590	1,134,980	635,384	590,322	529,052
	융자 및 출자	1,259,483	957,954	744,563	23,876	73,148	13,543	52,019	21,945	28,860
	보전재원	2,579,724	979,780	143,336	136,041	375,805	95,767	118,101	75,843	34,887
	내부거래	5,477,500	3,335,759	1,956,291	410,313	277,029	269,982	154,094	165,032	103,018
예비비 및 기타	296,041	87,392	19,449	30,134	15,597	8,122	8,001	3,782	2,307	
2002	합계	72,883,799	28,097,340	12,499,664	4,995,884	2,974,169	2,938,657	1,799,967	1,646,223	1,242,775
	인건비	7,422,542	3,005,744	1,445,874	455,768	312,004	300,424	177,539	183,588	130,546
	물건비	7,561,126	2,800,521	1,240,342	511,293	271,447	323,566	153,345	160,752	139,776
	이전경비	14,172,665	6,496,832	2,753,477	1,266,758	911,305	578,784	483,476	289,471	213,563
	자본지출	31,648,785	8,987,230	3,537,397	1,436,424	947,948	1,168,634	632,597	712,163	552,066
	융자 및 출자	880,581	455,936	122,519	17,779	100,611	174,100	29,995	9,876	1,056
	보전재원	3,078,193	1,476,470	236,901	746,051	104,948	66,733	133,764	101,262	86,811
	내부거래	7,756,530	4,748,794	3,142,328	544,599	273,668	306,653	182,552	183,813	115,181
예비비 및 기타	363,377	125,813	20,827	17,212	52,237	19,762	6,700	5,299	3,776	
2003	합계	82,186,004	29,432,636	13,488,812	4,596,630	3,008,657	3,204,282	1,995,806	1,802,841	1,335,607
	인건비	8,052,398	3,251,234	1,543,355	501,503	333,729	330,937	191,787	203,426	146,497
	물건비	8,262,266	2,944,742	1,380,183	413,309	290,266	365,470	165,134	177,661	152,719
	이전경비	15,556,976	6,786,890	2,914,431	1,327,883	831,798	682,050	434,598	331,668	264,462
	자본지출	38,478,411	9,476,318	3,723,361	1,433,121	858,204	1,203,560	835,468	810,064	612,539
	융자 및 출자	1,163,001	739,792	291,571	2,689	272,338	117,352	54,616	134	1,092
	보전재원	1,884,833	901,605	196,870	250,861	84,135	133,453	131,905	74,447	29,935
	내부거래	8,443,773	5,210,807	3,420,618	653,394	300,277	361,559	157,844	191,536	125,579
예비비 및 기타	344,346	121,248	18,423	13,870	37,910	9,902	24,455	13,904	2,784	
2004	합계	91,159,327	33,038,724	15,416,095	5,107,356	3,324,498	3,530,961	2,190,588	1,915,950	1,553,277
	인건비	9,374,444	3,718,469	1,764,083	567,398	373,130	382,435	222,011	235,380	174,032
	물건비	8,472,897	3,044,407	1,393,875	442,930	286,996	403,943	171,311	179,280	166,073
	이전경비	18,007,489	7,754,249	3,353,251	1,513,725	879,215	780,832	531,351	408,216	287,660
	자본지출	43,139,613	11,488,418	4,979,865	1,574,733	1,091,487	1,482,111	901,041	762,344	696,837
	융자 및 출자	1,185,416	578,527	325,111	12,780	126,081	21,337	92,082	332	803
	보전재원	2,251,306	1,054,825	162,327	298,434	216,677	59,419	109,775	116,460	91,732
	내부거래	8,256,797	5,242,732	3,405,697	657,814	300,003	389,540	151,495	209,312	128,871
예비비 및 기타	471,365	157,097	31,886	39,541	50,911	11,343	11,521	4,626	7,268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33,567,044	9,225,012	3,069,773	2,000,936	2,958,521	2,895,356	3,892,766	4,253,565	4,222,113	1,049,002
3,710,580	850,689	358,434	262,565	339,415	359,159	452,139	534,865	437,983	115,331
4,008,542	1,105,478	344,953	247,829	335,517	372,715	479,571	541,063	463,640	117,776
6,010,197	1,700,602	460,589	354,591	529,594	579,543	709,030	821,925	663,814	190,509
17,642,978	4,794,226	1,723,928	1,015,678	1,573,220	1,435,541	2,091,547	2,126,084	2,365,069	517,685
432,697	147,851	46,097	27,340	17,220	38,141	32,452	67,698	25,637	30,261
1,254,770	427,262	84,588	57,671	115,262	81,767	84,855	124,439	216,724	62,202
373,256	163,449	38,871	30,353	33,469	18,212	21,482	26,308	31,023	10,089
134,024	35,455	12,313	4,909	14,824	10,278	21,690	11,183	18,223	5,149
41,009,327	11,227,715	3,485,525	2,472,863	3,743,932	3,752,578	4,805,844	5,054,827	5,145,839	1,320,204
4,001,366	932,296	378,673	274,972	361,895	388,579	495,083	576,871	468,608	124,389
4,428,458	1,196,568	379,106	272,519	361,638	403,318	518,777	593,168	565,432	137,932
7,601,917	2,144,911	545,175	460,929	704,722	792,006	875,734	945,045	885,773	247,622
20,725,723	5,081,975	1,946,759	1,250,459	2,007,195	1,884,075	2,669,655	2,558,904	2,653,267	673,434
301,529	52,430	13,830	21,889	21,050	42,013	47,820	28,160	45,880	28,457
1,599,944	696,056	85,250	74,432	123,637	118,335	56,392	135,563	271,013	39,266
2,141,741	1,074,841	126,349	110,525	134,513	110,860	114,605	176,310	229,773	63,965
208,649	48,638	10,383	7,138	29,282	13,392	27,778	40,806	26,093	5,139
44,786,458	12,458,842	4,013,624	2,611,043	3,868,909	3,836,035	5,354,701	5,321,677	5,928,179	1,393,447
4,416,798	1,024,163	418,991	305,679	397,830	433,938	537,171	635,611	525,469	137,947
4,760,605	1,218,083	449,683	285,981	402,317	425,158	537,502	617,441	673,677	150,762
7,675,833	1,913,694	550,259	436,751	666,968	922,607	889,048	1,019,558	1,027,584	249,364
22,661,555	5,836,787	2,342,079	1,367,526	1,952,609	1,719,499	3,060,656	2,638,551	3,066,199	677,648
424,644	214,083	13,616	20,102	14,230	21,673	47,201	25,506	31,929	36,305
1,601,723	483,980	100,831	67,608	241,732	120,730	122,942	156,560	270,525	36,814
3,007,736	1,694,796	123,850	113,100	156,113	177,756	136,962	188,574	316,835	99,752
237,564	73,255	14,315	14,296	37,109	14,674	23,219	39,877	15,963	4,855
52,753,369	13,925,784	5,812,739	3,200,501	4,251,462	4,353,417	6,185,410	6,436,421	7,048,744	1,538,891
4,801,164	1,124,637	452,380	330,273	435,408	471,185	578,169	687,534	570,994	150,585
5,317,525	1,426,023	458,945	360,491	443,975	469,668	589,037	682,949	724,646	161,790
8,770,086	2,378,955	617,281	597,669	723,762	974,217	949,420	1,118,260	1,115,725	294,797
29,002,093	6,576,236	3,995,000	1,697,150	2,280,392	2,194,359	3,733,610	3,599,750	4,159,555	766,041
423,209	214,727	13,825	25,631	17,415	27,374	66,215	19,123	18,736	20,163
983,227	248,217	106,629	50,442	140,119	83,861	86,077	99,312	134,868	33,703
3,232,966	1,908,647	147,321	129,995	162,147	118,279	154,371	209,794	293,748	108,663
223,098	48,342	21,358	8,849	48,244	14,474	28,511	19,698	30,472	3,149
58,120,603	16,769,838	5,660,003	3,453,545	4,792,305	4,373,538	6,277,760	7,102,218	8,047,504	1,643,891
5,655,975	1,350,044	531,280	381,390	514,834	547,306	662,206	799,351	685,776	183,789
5,428,489	1,508,234	464,084	347,578	470,894	484,129	598,288	692,039	705,290	157,953
10,253,240	2,739,156	713,652	729,037	897,586	1,113,959	1,115,655	1,330,336	1,248,322	365,537
31,651,195	8,938,113	3,569,237	1,700,861	2,493,376	1,959,013	3,563,565	3,827,986	4,830,738	768,305
606,889	186,144	46,170	35,948	44,052	20,268	86,475	104,693	71,155	11,984
1,196,481	366,362	99,065	115,372	100,255	101,327	95,982	132,815	149,505	35,797
3,014,065	1,581,316	167,521	129,801	250,293	133,797	129,127	195,994	310,164	116,050
314,268	100,470	68,993	13,556	21,016	13,739	26,462	19,004	46,554	4,475

1.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총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5	합계	95,583,507	35,385,026	16,434,415	5,634,435	3,448,440	4,055,055	2,168,885	2,004,280	1,639,518
	인건비	12,627,404	4,947,334	2,311,921	751,210	510,006	525,728	297,555	318,060	232,854
	물건비	6,670,476	2,269,894	1,039,210	323,142	215,248	317,670	114,589	124,052	135,982
	이전경비	22,149,629	9,662,692	4,252,300	1,801,934	1,058,392	981,861	687,515	487,030	393,660
	자본지출	41,791,596	11,192,900	4,672,757	1,728,306	946,803	1,672,047	726,184	767,576	679,228
	융자 및 출자	1,208,441	570,077	254,517	67,936	143,480	22,418	59,775	21,187	764
	보전재원	2,274,114	968,312	100,925	292,461	199,873	95,018	122,861	105,798	51,376
	내부거래	8,293,092	5,532,238	3,783,829	565,031	330,895	381,092	155,749	173,879	141,765
예비비 및 기타	568,755	241,579	18,955	104,415	43,744	59,221	4,657	6,697	3,889	
2006	합계	103,303,895	36,476,751	15,704,763	6,131,778	3,567,162	4,719,765	2,339,241	2,188,026	1,826,017
	인건비	13,405,109	5,196,210	2,400,363	787,901	536,900	567,532	313,861	339,958	249,694
	물건비	7,180,342	2,424,718	1,151,144	314,237	241,524	320,592	115,990	139,592	141,639
	이전경비	27,062,142	11,318,054	4,526,412	2,218,633	1,286,951	1,406,230	807,088	599,158	473,582
	자본지출	43,062,347	10,875,329	4,401,162	1,681,115	720,360	1,816,200	733,964	777,756	744,771
	융자 및 출자	1,335,463	753,362	209,123	240,287	160,157	66,620	48,683	27,648	844
	보전재원	2,637,987	1,007,272	178,126	188,139	219,030	148,573	130,451	86,240	56,712
	내부거래	8,147,419	4,673,379	2,819,753	590,632	356,901	379,704	164,739	210,456	151,192
예비비 및 기타	473,085	228,427	18,678	110,833	45,338	14,314	24,464	7,217	7,583	
2007	합계	113,000,743	40,691,504	18,135,678	6,814,990	3,838,798	5,101,641	2,446,333	2,372,509	1,981,555
	인건비	13,926,714	5,359,178	2,461,436	806,584	557,592	594,561	325,520	354,603	258,881
	물건비	7,717,934	2,600,117	1,213,261	344,477	255,755	331,386	160,211	142,492	152,536
	이전경비	31,326,241	13,175,998	5,057,667	2,891,687	1,557,596	1,488,841	961,288	658,274	560,645
	자본지출	45,421,585	11,596,363	4,766,003	1,696,165	735,429	2,202,551	671,569	862,840	661,807
	융자 및 출자	1,915,784	844,586	259,600	253,545	223,975	12,263	33,364	22,704	39,135
	보전재원	2,274,012	704,687	2,880	227,129	116,066	50,610	122,047	108,453	77,503
	내부거래	9,954,177	6,262,362	4,335,542	567,596	353,672	411,844	160,438	217,407	215,863
예비비 및 기타	464,296	148,214	39,289	27,807	38,715	9,584	11,895	5,737	15,185	
2008	합계	124,997,794	45,458,819	20,256,186	7,472,671	4,440,929	5,910,774	2,558,661	2,493,734	2,325,864
	인건비	15,533,215	6,556,641	2,502,130	831,648	577,670	1,666,782	336,496	368,859	273,055
	물건비	8,166,619	2,597,139	1,327,986	329,284	245,494	237,410	153,060	142,759	161,146
	이전경비	37,397,435	15,700,791	6,460,281	3,236,844	1,814,562	1,649,663	1,099,603	795,754	644,085
	자본지출	49,462,461	13,095,627	5,822,336	2,080,730	983,185	1,862,911	583,502	775,879	987,085
	융자 및 출자	1,238,245	576,601	338,547	3,994	151,964	24,795	27,709	28,554	1,037
	보전재원	2,981,893	1,309,453	428,498	311,135	249,409	20,122	142,966	119,421	37,902
	내부거래	9,524,506	5,424,229	3,335,750	638,980	384,786	419,214	191,398	241,603	212,498
예비비 및 기타	693,420	198,338	40,658	40,055	33,859	29,876	23,927	20,905	9,057	
2009	합계	149,658,849	53,825,723	23,058,458	8,523,470	5,330,551	7,972,555	3,175,881	3,033,159	2,731,649
	인건비	17,500,006	7,344,115	2,909,098	856,664	635,763	1,829,834	393,797	405,628	313,330
	물건비	9,163,045	2,983,790	1,533,480	376,445	269,897	278,782	179,096	159,045	187,045
	이전경비	41,970,153	17,407,641	6,940,737	3,479,400	2,012,542	1,983,504	1,273,449	967,604	750,403
	자본지출	66,597,992	18,466,513	7,801,343	2,818,824	1,418,970	3,143,626	1,010,686	1,101,655	1,171,410
	융자 및 출자	1,786,617	1,023,740	427,592	2,270	397,150	74,835	31,808	89,665	420
	보전재원	2,120,882	756,732	2,837	290,735	181,219	109,241	58,902	48,358	65,440
	내부거래	9,428,976	5,501,432	3,381,357	639,999	350,013	507,502	194,399	202,670	225,492
예비비 및 기타	1,091,178	341,760	62,014	59,132	64,996	45,233	33,744	58,533	18,108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60,198,480	17,387,094	5,135,437	3,845,128	5,585,394	4,817,501	6,806,341	7,212,887	7,701,837	1,706,861
7,680,070	1,809,384	715,695	531,131	703,867	741,703	903,719	1,083,018	948,644	242,907
4,400,583	1,321,578	361,631	262,700	370,247	358,920	470,233	539,932	585,631	129,710
12,486,937	3,497,104	865,836	852,017	1,051,213	1,397,637	1,302,430	1,616,617	1,551,931	352,154
30,598,696	8,703,310	2,826,439	1,876,560	3,011,922	2,070,061	3,789,220	3,458,084	4,056,479	806,621
638,364	206,015	55,600	86,766	46,776	22,018	43,726	97,082	71,650	8,732
1,305,801	394,953	106,598	82,628	128,419	90,843	142,044	172,607	141,827	45,883
2,760,854	1,356,958	151,786	127,430	245,608	120,894	126,632	206,869	310,309	114,368
327,176	97,792	51,851	25,897	27,343	15,426	28,338	38,680	35,365	6,485
66,827,144	19,893,210	5,527,293	3,941,342	5,951,191	5,783,949	7,305,430	7,837,948	8,442,056	2,144,724
8,208,899	1,962,188	761,348	562,298	752,065	787,383	951,123	1,145,899	1,018,610	267,986
4,755,624	1,454,951	375,721	289,324	406,833	389,049	500,307	592,342	594,629	152,467
15,744,088	4,232,855	1,083,760	1,032,824	1,530,659	1,747,182	1,588,325	1,991,351	2,013,497	523,634
32,187,018	9,285,707	2,942,073	1,806,149	2,861,842	2,564,345	3,836,542	3,679,243	4,192,065	1,019,054
582,101	173,191	48,779	23,564	26,367	17,219	126,393	51,412	108,144	7,033
1,630,716	726,732	101,730	86,973	119,195	111,379	116,194	161,607	154,782	52,123
3,474,040	1,988,092	194,232	127,385	224,562	150,057	160,861	192,253	318,177	118,419
244,658	69,494	19,650	12,825	29,668	17,335	25,686	23,842	42,152	4,007
72,309,239	21,474,584	6,838,074	4,437,961	6,192,038	5,839,657	7,703,445	8,492,915	9,180,047	2,150,517
8,567,537	2,051,998	786,599	588,244	792,274	816,121	989,772	1,190,743	1,065,689	286,096
5,117,817	1,534,343	401,347	314,674	451,986	411,832	542,203	648,672	660,580	152,180
18,150,242	5,034,871	1,224,111	1,212,882	1,691,874	2,022,643	1,788,660	2,290,381	2,346,123	538,696
33,825,223	9,680,114	3,991,378	1,984,213	2,816,391	2,245,506	3,935,090	3,808,507	4,371,796	992,228
1,071,198	517,056	99,670	85,911	30,378	21,968	102,939	61,349	149,944	1,982
1,569,324	660,963	105,929	70,362	124,302	129,429	126,724	171,787	124,681	55,147
3,691,815	1,883,541	210,327	169,372	256,486	175,174	179,142	277,929	421,326	118,518
316,082	111,697	18,714	12,302	28,347	16,984	38,914	43,546	39,908	5,671
79,538,975	23,102,186	6,817,753	4,984,328	6,911,633	6,735,130	9,010,855	9,515,044	10,012,951	2,449,095
8,976,574	2,178,974	832,272	611,147	830,572	841,645	1,030,774	1,232,181	1,118,451	300,556
5,569,481	1,646,953	438,733	344,268	485,704	450,669	625,443	700,280	711,733	165,697
21,696,644	6,126,270	1,484,830	1,425,757	2,075,815	2,289,031	2,183,192	2,767,158	2,751,469	593,123
36,366,834	9,845,519	3,658,801	2,268,742	3,048,343	2,692,159	4,685,588	4,310,653	4,649,725	1,207,305
661,645	227,492	16,847	113,723	40,732	37,466	102,352	26,858	94,744	1,429
1,672,439	671,287	169,878	9,948	113,651	139,670	135,486	190,145	184,554	57,819
4,100,277	2,172,973	188,937	186,053	279,048	251,097	187,273	257,013	461,343	116,539
495,082	232,716	27,455	24,690	37,767	33,392	60,747	30,755	40,932	6,628
95,833,126	27,935,569	7,878,025	5,828,066	8,386,758	7,843,195	10,796,279	11,933,849	12,292,537	2,938,849
10,155,891	2,522,581	945,651	685,170	935,574	939,996	1,142,927	1,377,086	1,281,324	325,583
6,179,255	1,854,114	482,975	384,516	543,248	496,756	693,129	796,682	754,386	173,450
24,562,512	7,083,583	1,658,617	1,586,660	2,256,125	2,533,769	2,522,211	3,163,355	3,072,596	685,596
48,131,479	13,348,787	4,390,915	2,937,022	4,132,106	3,456,217	5,968,921	6,104,590	6,234,270	1,558,650
762,877	119,671	15,988	22,153	39,635	74,012	109,939	85,750	292,180	3,549
1,364,150	541,729	139,864	10,877	121,088	109,535	131,261	70,976	179,810	59,010
3,927,544	2,136,782	208,566	157,349	305,395	176,993	169,556	267,003	384,930	120,968
749,419	328,322	35,447	44,320	53,588	55,917	58,335	68,407	93,040	12,042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_성질별, 단체별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0	합계	10,327,281	3,758,575	1,811,226	605,769	496,115	320,385	296,580	228,500	
	인건비	2,074,580	754,449	408,698	126,088	81,387	51,961	44,676	41,638	
	물건비	1,103,143	382,297	210,182	60,428	39,534	26,328	21,297	24,527	
	경상이전	1,003,571	386,106	156,244	57,059	32,489	29,757	81,901	28,655	
	자본지출	5,384,089	1,821,062	796,617	335,993	280,348	190,735	106,190	111,179	
	융자 및 출자	245,662	215,464	186,618	1,955	1,586	7,819	17,027	459	
	보전재원	205,745	64,790	16,584	9,240	23,755	2,325	7,638	5,248	
	내부거래 기타	97,499 212,992	77,100 57,307	12,435 23,847	3,352 11,654	30,761 6,255	5,330 6,129	12,728 5,123	12,494 4,299	
1991	합계	13,852,388	4,975,214	2,277,135	905,724	644,454	439,476	376,868	331,557	
	인건비	2,541,564	941,037	515,927	151,556	99,976	64,550	55,583	53,444	
	물건비	1,478,301	501,664	252,321	87,683	56,625	38,057	34,238	32,739	
	경상이전	1,285,692	465,146	189,467	91,999	50,224	42,793	54,753	35,910	
	자본지출	7,568,565	2,487,342	1,071,634	448,142	371,009	250,830	158,560	187,168	
	융자 및 출자	261,566	229,184	188,920	31,140	2,000	5,747	763	615	
	보전재원	262,554	118,687	16,573	12,733	28,389	5,630	53,132	2,230	
	내부거래 기타	206,614 247,531	165,153 67,000	14,946 27,346	69,409 13,063	29,160 7,071	23,715 8,153	14,153 5,686	13,770 5,680	
1992	합계	15,926,614	6,024,339	2,803,911	1,057,078	789,945	572,983	370,778	429,644	
	인건비	3,009,694	1,115,637	609,254	173,444	116,320	79,640	69,934	67,045	
	물건비	1,977,710	650,697	298,580	120,475	84,349	52,667	47,113	47,513	
	경상이전	1,603,471	602,679	256,948	130,183	63,219	60,276	50,748	41,305	
	자본지출	8,314,787	3,033,555	1,338,790	478,199	480,616	334,483	154,947	246,520	
	융자 및 출자	277,334	247,058	194,510	38,700	2,000	4,968	998	5,882	
	보전재원	275,641	113,275	21,938	26,210	36,472		28,261	394	
	내부거래 기타	195,583 272,394	166,308 95,130	28,453 55,438	77,431 12,436	714 6,255	32,725 8,224	12,856 5,921	14,129 6,856	
1993	합계	16,969,564	6,493,833	3,217,654	1,161,522	603,760	617,717	453,521	439,659	
	인건비	3,461,216	1,276,473	689,035	197,977	132,272	95,808	81,565	79,816	
	물건비	2,046,150	665,139	300,652	116,423	79,876	61,612	53,642	52,934	
	경상이전	2,148,240	839,519	372,925	172,365	80,389	92,516	71,125	50,199	
	자본지출	8,066,789	2,808,657	1,303,104	512,586	238,382	323,052	206,860	224,673	
	융자 및 출자	251,146	196,300	150,838	32,894	2,227	1,278	3,262	5,801	
	보전재원	182,499	95,683	671	35,980	33,479	4,694	18,876	1,983	
	내부거래 기타	540,617 272,907	510,404 101,658	338,244 62,185	81,640 11,657	30,831 6,304	31,543 7,214	12,558 5,633	15,588 8,665	
1994	합계	21,902,088	7,441,868	3,353,155	1,448,159	892,039	658,012	537,006	553,497	
	인건비	3,927,546	1,424,589	761,501	223,790	149,945	107,836	91,306	90,211	
	물건비	2,618,339	843,890	435,660	131,481	86,565	69,891	56,598	63,695	
	경상이전	2,556,263	999,634	349,858	231,475	120,353	105,646	112,359	79,943	
	자본지출	11,314,061	3,092,926	1,270,701	622,530	418,516	308,598	235,879	236,702	
	융자 및 출자	246,028	153,946	63,806	70,483	1,548	6,873	1,590	9,646	
	보전재원	438,042	171,925	726	53,139	53,195	4,720	18,722	41,423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767,639 34,170	733,986 20,972	454,145 16,758	114,701 560	60,768 1,149	53,609 839	19,492 1,060	31,271 606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6,568,706	1,247,963	673,230	463,047	628,890	604,005	881,788	902,732	997,227	169,826
1,320,131	250,059	124,319	94,581	120,214	134,386	165,396	199,818	196,162	35,197
720,847	144,736	67,799	49,356	69,144	64,975	95,637	101,267	108,111	19,821
617,465	120,818	57,309	41,987	60,423	73,212	80,903	81,280	84,100	17,433
3,563,027	662,010	387,294	253,160	347,395	299,455	502,260	468,096	553,112	90,245
30,198	10,549	5,350	309	3,601	2,241	887	4,960	1,939	362
140,955	27,251	16,484	12,402	12,138	14,474	14,914	19,022	21,903	2,366
20,398	3,617	264	642	234	223	1,004	6,047	8,042	325
155,685	28,923	14,411	10,610	15,741	15,038	20,787	22,242	23,857	4,077
8,877,174	1,886,086	914,912	596,299	795,542	825,167	1,046,441	1,249,539	1,340,916	222,270
1,600,527	309,170	151,953	112,965	144,167	159,703	199,589	242,598	237,448	42,933
976,638	189,024	91,308	65,364	99,079	89,023	123,300	139,322	153,766	26,451
820,546	153,735	65,996	56,045	78,714	96,939	117,226	111,490	117,189	23,212
5,081,223	1,145,736	569,825	341,039	432,610	439,922	564,656	696,437	770,628	120,369
32,382	15,497	7,049	515	661	1,416	223	5,677	1,323	22
143,867	28,872	11,808	4,364	20,691	19,657	10,365	20,732	24,668	2,711
41,460	5,485	1,004	4,363	2,001	567	7,942	8,336	10,590	1,172
180,531	38,567	15,969	11,644	17,620	17,940	23,139	24,949	25,303	5,401
9,902,275	2,228,324	896,232	642,165	833,519	862,788	1,132,878	1,505,035	1,536,918	264,416
1,894,057	369,946	179,884	135,622	172,990	188,693	236,171	282,642	276,837	51,272
1,327,013	265,608	125,208	90,600	125,559	114,785	169,122	187,813	211,813	36,505
1,000,792	191,551	82,437	68,288	92,508	114,410	134,071	133,280	153,121	31,126
5,281,232	1,332,426	482,739	328,805	415,447	414,134	562,048	825,373	782,220	138,040
30,276	14,791	3,674	1,076	1,198	970	358	6,237	1,372	600
162,366	10,358	6,917	5,478	7,666	12,285	6,680	35,863	76,223	896
29,275	4,908	956	1,515	725	717	2,353	9,682	7,832	587
177,264	38,736	14,417	10,781	17,426	16,794	22,075	24,145	27,500	5,390
10,475,731	2,464,097	905,720	677,561	967,253	943,615	1,240,918	1,408,020	1,573,361	295,186
2,184,743	433,784	206,002	155,141	199,480	218,975	270,805	322,202	319,520	58,834
1,381,011	284,165	128,682	89,124	128,883	120,387	175,959	202,010	215,251	36,550
1,308,721	305,209	113,781	80,950	125,013	138,200	165,102	170,065	173,606	36,795
5,258,132	1,369,472	432,877	328,132	487,404	437,352	588,808	652,455	811,249	150,383
54,846	14,221	3,125	5,337	704	1,830	651	22,205	1,200	5,573
86,816	12,599	6,008	5,754	6,549	11,977	8,375	12,844	21,578	1,132
30,213	4,372	1,611	2,408	4,338	1,089	9,921	2,428	3,414	632
171,249	40,275	13,634	10,715	14,882	13,805	21,297	23,811	27,543	5,287
14,460,220	3,230,946	1,253,110	907,650	1,316,567	1,377,428	1,691,699	2,111,002	2,183,755	388,063
2,502,957	503,348	234,380	177,827	229,654	250,693	309,738	369,163	361,951	66,203
1,774,449	368,276	158,588	113,475	164,903	163,035	224,534	248,412	281,966	51,260
1,556,629	391,731	124,209	95,277	135,911	161,770	196,110	204,539	204,236	42,846
8,221,135	1,929,559	704,198	505,097	760,350	787,299	933,637	1,144,870	1,236,899	219,226
92,082	14,847	9,367	7,407	8,318	432	15,022	20,918	11,645	4,126
266,117	12,254	18,069	7,129	6,893	12,325	9,470	118,315	80,318	1,344
33,653	7,815	2,000	849	9,851	1,852	2,694	2,750	3,916	1,926
13,198	3,116	2,299	589	687	22	494	2,035	2,824	1,132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1995	합계	24,816,467	8,114,487	3,297,320	1,494,635	1,154,909	943,807	606,912	616,904	
	인건비	4,401,367	1,646,054	848,436	259,408	183,551	148,319	103,477	102,863	
	물건비	3,342,675	1,169,068	590,947	185,933	118,243	119,176	73,747	81,022	
	이전경비	3,057,599	1,250,290	400,754	301,275	194,477	155,618	106,745	91,421	
	자본지출	13,155,035	3,495,488	1,320,284	666,356	541,799	430,888	260,423	275,738	
	융자 및 출자	255,941	125,730	94,900	6,304	7,156	10,729	1,141	5,500	
	보전재원	308,819	203,925	1,084	64,498	50,072	24,974	36,952	26,345	
	내부거래	264,727	217,481	40,915	10,728	58,574	50,934	22,745	33,585	
예비비 및 기타	30,304	6,451		133	1,037	3,169	1,682	430		
1996	합계	31,249,980	10,551,940	5,053,061	1,689,900	1,294,667	1,120,019	688,484	705,809	
	인건비	4,916,462	1,842,647	942,920	294,637	203,334	169,685	116,737	115,334	
	물건비	4,064,112	1,378,524	684,488	215,817	144,429	145,202	88,579	100,009	
	이전경비	3,840,283	1,504,311	497,324	350,652	199,861	222,417	132,031	102,026	
	자본지출	16,388,732	4,305,443	2,068,763	596,108	538,220	476,757	304,181	321,414	
	융자 및 출자	443,437	242,293	179,762	5,620	44,454	5,165	435	6,857	
	보전재원	324,232	185,688	922	53,755	73,798	22,777	16,423	18,013	
	내부거래	1,189,865	1,054,416	647,864	172,088	89,674	74,132	28,726	41,932	
예비비 및 기타	82,857	38,618	31,018	1,223	897	3,884	1,372	224		
1997	합계	37,407,047	13,121,709	6,326,243	1,817,242	1,615,693	1,202,671	873,342	776,679	509,839
	인건비	5,481,360	2,092,124	1,024,221	325,930	221,071	190,431	125,302	128,133	77,036
	물건비	4,470,004	1,613,203	767,681	243,554	160,130	159,176	99,546	108,942	74,174
	이전경비	4,903,416	1,996,653	826,417	391,524	225,101	235,244	157,151	118,464	42,752
	자본지출	20,260,657	5,759,867	2,640,551	650,442	858,041	512,416	430,212	356,929	311,276
	융자 및 출자	544,311	352,830	308,470	2,580	30,328	1,616	280	8,691	865
	보전재원	241,117	102,298	977	9,448	36,878	22,278	22,524	9,659	534
	내부거래	1,431,959	1,179,077	743,338	190,271	82,863	77,653	36,850	44,900	3,202
예비비 및 기타	74,223	25,657	14,588	3,493	1,281	3,857	1,477	961		
1998	합계	38,076,886	13,057,877	6,271,553	1,732,625	1,716,284	1,228,038	874,364	731,118	503,895
	인건비	5,481,513	2,131,391	1,058,238	318,859	223,338	193,932	125,034	127,636	84,354
	물건비	5,026,807	1,890,142	866,623	296,001	203,386	177,812	120,504	126,250	99,566
	이전경비	5,369,523	2,170,237	856,820	426,016	266,805	245,790	189,889	126,165	58,752
	자본지출	19,400,468	4,787,945	2,385,766	431,362	563,901	534,042	360,708	292,803	219,363
	융자 및 출자	522,738	378,181	364,105	648	2,850	2,342	359	7,330	547
	보전재원	682,138	517,186	5,233	79,635	379,366	1,848	40,337	9,804	963
	내부거래	1,488,131	1,150,654	717,776	174,725	74,182	69,219	34,739	40,226	39,787
예비비 및 기타	105,568	32,141	16,992	5,379	2,456	3,053	2,794	904	563	
1999	합계	39,758,463	13,826,267	6,264,138	2,072,606	1,698,501	1,422,927	904,488	792,533	671,074
	인건비	5,497,578	2,140,909	1,029,028	334,457	234,749	193,766	128,277	132,499	88,133
	물건비	5,283,971	2,067,713	1,001,085	280,148	216,287	181,789	143,635	133,905	110,864
	이전경비	6,809,229	2,749,908	1,035,959	587,857	357,916	308,384	197,772	168,463	93,557
	자본지출	19,328,370	4,696,321	1,850,239	530,348	663,425	656,521	367,280	291,040	337,468
	융자 및 출자	621,267	488,241	458,777	5,220	9,922	5,237	365	8,000	720
	보전재원	664,472	506,768	193,604	124,418	144,004	1,835	27,379	14,635	893
	내부거래	1,420,553	1,139,473	685,073	201,649	70,789	69,426	37,656	41,920	32,960
예비비 및 기타	133,023	36,934	10,373	8,509	1,409	5,969	2,124	2,071	6,479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6,701,980	3,656,163	1,438,429	1,145,782	1,542,189	1,648,617	2,021,927	2,252,001	2,524,083	472,789
2,755,313	553,918	259,797	197,982	253,646	276,275	340,377	397,533	398,159	77,626
2,173,607	457,411	193,505	148,175	203,876	196,456	270,559	300,909	340,170	62,546
1,807,309	446,670	131,347	110,212	156,666	190,682	233,272	229,550	257,668	51,242
9,659,547	2,137,492	816,661	672,589	888,229	974,670	1,124,898	1,295,531	1,482,868	266,609
130,211	19,451	17,353	7,801	15,069	40	31,413	10,560	19,552	8,972
104,894	27,366	14,056	4,059	10,410	8,955	12,291	11,024	15,116	1,617
47,246	12,071	3,293	1,256	10,605	1,539	8,134	3,106	3,900	3,342
23,853	1,784	2,417	3,708	3,688		983	3,788	6,650	835
20,698,040	4,823,481	1,811,760	1,452,384	2,068,466	1,976,362	2,440,461	2,687,356	2,864,331	573,439
3,073,815	641,005	287,117	220,901	279,574	302,407	376,783	438,221	439,493	88,314
2,685,588	585,370	241,619	178,517	245,332	246,135	334,867	372,425	404,793	76,530
2,335,972	632,035	181,717	144,656	199,672	236,157	274,295	278,308	321,780	67,352
12,083,289	2,823,235	1,036,951	879,059	1,274,268	1,170,989	1,374,498	1,544,895	1,648,101	331,293
201,144	43,095	35,713	11,488	16,766	1,765	39,858	29,934	20,361	2,164
138,544	30,650	18,396	10,402	22,716	12,390	14,133	9,681	15,456	4,720
135,449	56,239	8,969	5,322	27,282	2,210	13,044	10,477	9,544	2,362
44,239	11,852	1,278	2,039	2,856	4,309	12,983	3,415	4,803	704
24,285,338	5,912,816	2,345,372	1,588,298	2,190,303	2,368,035	2,943,676	3,099,387	3,104,784	732,667
3,389,236	725,533	324,786	246,230	316,895	337,916	425,984	492,969	418,558	100,365
2,856,801	625,347	267,145	191,367	268,466	265,727	370,064	408,590	377,133	82,962
2,906,763	804,550	226,275	167,814	248,361	309,611	318,290	360,920	387,335	83,607
14,500,790	3,553,928	1,459,652	960,509	1,296,651	1,425,414	1,719,078	1,787,711	1,855,191	442,656
191,481	42,425	32,677	6,078	15,612	1,603	37,938	22,234	17,466	15,448
138,819	40,009	12,706	3,956	8,824	11,555	22,065	12,724	21,772	5,208
252,882	102,911	15,105	9,493	31,382	12,724	49,136	13,725	15,985	2,421
48,566	18,113	7,026	2,851	4,112	3,485	1,121	514	11,344	
25,019,009	6,095,829	2,420,553	1,714,784	2,222,139	2,428,896	3,094,980	3,200,105	3,055,420	786,303
3,350,122	735,806	324,334	245,820	312,859	329,581	414,544	477,352	409,943	99,883
3,136,665	701,990	281,901	205,106	302,688	295,066	428,181	434,306	400,378	87,049
3,199,286	856,620	272,778	199,742	282,398	326,269	395,028	410,605	349,046	106,800
14,612,523	3,487,822	1,460,340	1,023,357	1,264,565	1,448,230	1,800,208	1,837,152	1,850,551	440,298
144,557	27,424	34,527	4,320	10,846		29,701	19,526	14,603	3,610
164,952	42,933	25,685	18,187	17,063	8,835	8,366	7,478	10,954	25,451
337,477	220,161	14,287	14,681	27,762	11,006	8,813	9,543	12,268	18,956
73,427	23,073	6,701	3,571	3,958	9,909	10,139	4,143	7,677	4,256
25,932,196	6,328,089	2,432,259	1,742,013	2,330,944	2,297,830	3,128,401	3,553,583	3,302,664	816,413
3,356,669	748,458	325,439	241,756	311,373	325,663	416,597	476,467	407,913	103,003
3,216,258	794,175	279,239	216,323	292,743	306,401	414,911	428,499	389,459	94,508
4,059,321	1,142,121	320,382	281,412	376,852	381,761	472,956	525,125	428,462	130,250
14,632,049	3,460,897	1,422,889	946,626	1,274,018	1,253,727	1,758,681	2,072,597	2,021,767	420,847
133,026	11,671	31,810	4,857	13,768		35,569	11,874	11,142	12,335
157,704	29,036	14,331	20,643	14,654	9,840	7,849	9,346	9,909	42,096
281,080	120,989	31,690	25,679	29,685	12,868	14,877	15,915	17,625	11,752
96,089	20,742	6,479	4,717	17,851	7,570	6,961	13,760	16,387	1,622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0	합계	41,956,910	14,556,049	6,806,509	2,169,301	1,532,786	1,537,567	908,719	823,388	777,779
	인건비	5,754,486	2,235,291	1,073,295	347,311	234,777	204,027	139,453	141,603	94,825
	물건비	5,314,078	2,000,972	975,765	274,026	209,159	182,195	127,676	121,293	110,858
	이전경비	7,668,326	3,040,871	1,119,254	715,337	345,751	330,366	225,751	191,564	112,848
	자본지출	20,321,753	5,281,635	2,328,322	605,781	587,484	704,724	347,348	285,286	422,690
	융자 및 출자	823,582	613,267	554,495	15,222	16,069	15,925	278	11,000	278
	보전재원	344,482	113,303	6,028	27,887	33,043	6,950	25,671	12,864	860
	내부거래	1,607,364	1,244,304	743,195	179,411	103,828	86,264	40,210	57,586	33,810
예비비 및 기타	122,839	26,406	6,155	4,326	2,675	7,116	2,332	2,192	1,610	
2001	합계	51,542,081	17,897,956	8,633,977	2,449,770	1,917,608	1,898,819	1,133,119	997,670	866,993
	인건비	6,250,430	2,456,491	1,197,904	376,825	252,459	225,322	146,496	149,263	108,222
	물건비	5,590,155	2,000,686	971,431	280,167	194,358	194,344	128,093	124,076	108,217
	이전경비	9,324,489	3,630,930	1,356,367	766,895	441,188	414,354	286,973	225,037	140,116
	자본지출	23,348,089	5,502,017	2,565,381	559,644	492,628	772,672	408,144	301,884	401,664
	융자 및 출자	860,318	754,083	690,857	15,212	12,588	13,362	149	21,650	265
	보전재원	720,414	369,172	13,366	34,385	267,826	7,402	29,665	12,443	4,085
	내부거래	5,259,667	3,139,379	1,826,291	402,313	249,732	265,825	132,108	160,092	103,018
예비비 및 기타	188,519	45,198	12,380	14,329	6,829	5,538	1,491	3,225	1,406	
2002	합계	54,791,904	18,387,578	8,394,238	3,062,270	1,892,996	1,901,762	1,150,122	1,063,866	922,324
	인건비	6,902,480	2,718,044	1,317,226	415,907	283,251	253,788	162,832	166,557	118,484
	물건비	5,968,942	2,117,000	1,004,610	329,848	206,543	203,957	126,167	128,807	117,068
	이전경비	10,762,491	4,293,203	1,560,275	912,223	654,468	434,417	318,243	242,657	170,921
	자본지출	23,430,072	4,911,958	2,045,312	694,046	451,618	673,786	334,101	317,047	396,047
	융자 및 출자	226,181	88,709	54,220	290	3,586	16,740	3,938	9,700	235
	보전재원	491,960	271,255	14,699	170,881	16,988	5,684	46,840	14,611	1,551
	내부거래	6,773,598	3,937,468	2,386,045	526,835	269,868	305,764	154,183	179,592	115,181
예비비 및 기타	236,179	49,941	11,851	12,239	6,675	7,626	3,818	4,896	2,837	
2003	합계	65,026,972	20,390,776	9,422,922	3,259,821	1,901,698	2,194,231	1,325,880	1,214,813	1,071,412
	인건비	7,479,973	2,936,897	1,405,253	458,358	303,067	276,216	176,459	184,534	133,011
	물건비	6,589,273	2,284,884	1,087,875	335,009	224,086	228,506	136,709	144,687	128,013
	이전경비	11,776,044	4,432,719	1,580,326	926,462	585,069	505,982	330,082	288,738	216,060
	자본지출	30,576,461	5,673,245	2,258,949	854,839	464,445	776,293	467,346	386,737	464,636
	융자 및 출자	419,610	215,212	140,960	600	3,950	44,678	24,665	-	360
	보전재원	308,284	135,634	23,366	36,544	17,933	7,325	28,151	20,009	2,306
	내부거래	7,685,084	4,664,388	2,912,518	639,107	296,477	346,550	157,844	186,313	125,579
예비비 및 기타	192,242	47,797	13,675	8,901	6,671	8,682	4,626	3,794	1,448	
2004	합계	71,794,574	23,476,575	11,075,941	3,714,056	2,112,535	2,559,623	1,533,294	1,283,785	1,197,340
	인건비	8,716,899	3,365,288	1,606,061	518,434	340,058	321,766	204,952	214,251	159,766
	물건비	6,710,356	2,331,077	1,111,842	337,510	216,958	243,797	141,237	149,931	129,801
	이전경비	14,198,389	5,338,071	1,996,101	1,125,223	603,934	595,803	410,527	376,815	229,668
	자본지출	33,390,381	7,248,227	3,182,237	1,036,437	609,159	985,046	573,295	326,461	535,593
	융자 및 출자	446,737	198,582	155,354	480	1,060	21,229	20,020	200	240
	보전재원	439,464	183,412	6,816	48,434	39,181	24,772	28,532	27,904	7,773
	내부거래	7,613,074	4,744,044	2,990,215	633,411	296,203	359,793	151,295	184,255	128,871
예비비 및 기타	279,274	67,875	27,315	14,126	5,983	7,418	3,437	3,968	5,628	

재정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27,400,861	7,055,613	2,665,690	1,707,248	2,473,772	2,380,442	3,266,994	3,561,677	3,385,930	903,495
3,519,195	793,827	338,364	250,665	326,359	345,394	436,974	500,210	418,506	108,896
3,313,106	796,415	302,580	217,998	298,120	310,347	434,441	449,227	401,761	102,217
4,627,455	1,334,586	366,144	276,002	420,780	437,007	537,404	641,087	464,438	150,007
15,040,118	3,734,483	1,578,811	918,949	1,360,850	1,251,698	1,792,864	1,902,172	2,032,585	467,706
210,315	132,082	19,473	2,882	7,448	2,000	7,053	9,580	8,635	21,162
231,179	79,980	12,745	6,023	17,603	8,055	21,063	27,367	19,025	39,318
363,060	160,446	37,475	30,353	33,129	18,062	21,482	23,871	29,083	9,159
96,433	23,794	10,098	4,376	9,483	7,879	15,713	8,163	11,897	5,030
33,644,125	8,491,870	3,037,157	2,090,384	3,116,342	3,154,473	4,153,031	4,289,655	4,136,589	1,174,624
3,793,939	869,663	357,096	260,821	347,960	374,708	478,429	539,994	447,766	117,502
3,589,469	849,935	334,257	237,269	321,410	335,608	469,601	492,027	429,605	119,757
5,693,559	1,609,164	423,967	351,570	538,612	597,702	673,722	710,289	594,386	194,147
17,846,072	3,844,137	1,779,231	1,105,365	1,726,884	1,698,438	2,375,718	2,309,187	2,374,982	632,130
106,235	45,412	6,793	2,487	4,765	696	8,145	7,243	6,094	24,600
351,242	164,990	10,633	17,544	28,888	27,770	22,201	23,384	37,238	18,594
2,120,288	1,073,606	115,922	109,525	133,547	110,760	112,411	175,404	226,278	62,835
143,321	34,963	9,258	5,803	14,276	8,791	12,804	32,127	20,240	5,059
36,404,326	9,440,826	3,426,296	2,209,984	3,144,820	3,201,486	4,427,915	4,488,169	4,839,372	1,225,457
4,184,436	955,389	391,312	290,282	382,099	419,254	517,213	596,091	502,241	130,556
3,851,943	922,920	366,631	249,195	345,849	350,407	490,353	527,131	463,564	135,891
6,469,288	1,676,718	505,112	394,156	645,216	719,611	816,208	762,699	719,313	230,254
18,518,114	4,093,920	2,004,236	1,138,246	1,524,415	1,566,691	2,434,719	2,355,853	2,803,726	596,308
137,472	63,537	9,974	3,586	6,525	-	9,324	7,560	7,443	29,524
220,705	51,286	14,835	9,226	58,630	17,332	10,664	14,366	39,903	4,463
2,836,130	1,620,786	122,448	112,786	150,131	119,013	136,928	187,392	291,811	94,836
186,238	56,271	11,748	12,507	31,955	9,178	12,507	37,076	11,371	3,625
44,636,196	11,086,927	5,233,849	2,785,392	3,552,709	3,737,360	5,209,160	5,649,192	6,047,817	1,333,788
4,543,076	1,048,720	422,109	312,688	417,600	453,375	555,134	645,640	545,079	142,731
4,304,389	1,042,093	410,875	282,908	386,585	383,905	534,970	586,199	531,566	145,286
7,343,325	1,942,332	574,721	481,166	695,249	781,679	910,774	867,303	816,391	273,710
24,903,216	5,093,674	3,648,802	1,561,773	1,818,691	1,969,243	3,044,321	3,300,270	3,809,591	656,849
204,398	143,686	9,878	4,020	6,158	480	8,840	8,277	8,000	15,060
172,650	26,823	9,058	8,123	49,323	20,344	15,374	17,594	21,091	4,921
3,020,696	1,763,478	138,598	126,873	158,821	118,195	124,144	209,100	289,325	92,163
144,445	26,121	19,809	7,841	20,282	10,138	15,603	14,809	26,774	3,068
48,318,000	13,051,188	4,975,224	2,931,428	4,053,022	3,665,227	5,213,835	6,097,230	6,947,591	1,383,256
5,351,611	1,259,189	497,500	360,117	493,838	527,399	636,099	749,222	655,329	172,917
4,379,280	1,070,189	413,928	296,344	409,893	388,433	547,742	583,524	528,461	140,768
8,860,318	2,478,221	664,456	606,573	858,037	899,653	1,031,511	1,056,353	941,904	323,611
26,142,154	6,496,129	3,142,034	1,481,121	2,001,900	1,682,747	2,821,273	3,458,077	4,427,867	631,006
248,155	179,626	8,682	2,400	17,163	-	15,620	9,168	11,688	3,808
256,053	59,311	15,410	45,600	19,056	21,664	18,181	30,816	33,510	12,504
2,869,030	1,477,710	165,537	129,801	240,249	133,216	124,127	195,576	308,517	94,296
211,400	30,812	67,678	9,472	12,885	12,116	19,282	14,495	40,315	4,346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세출결산 순계분석(일반회계)_성질별, 단체별 (계속)

연도	성질별	합계	특별.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¹⁾
2005	합계	74,635,603	25,111,257	11,576,937	4,002,217	2,274,816	2,897,713	1,594,847	1,395,873	1,368,856
	인건비	11,760,153	4,473,131	2,100,048	687,310	465,592	443,050	274,043	288,760	214,327
	물건비	4,932,932	1,617,680	778,516	225,934	146,684	171,956	91,220	102,062	101,309
	이전경비	17,711,928	6,762,278	2,570,848	1,375,630	727,895	772,686	547,931	435,459	331,829
	자본지출	31,433,132	6,954,750	2,837,657	1,115,809	571,477	1,063,055	461,624	344,890	560,238
	융자 및 출자	439,398	139,518	77,529	188	594	12,197	27,591	21,148	270
	보전재원	446,960	195,140	11,666	51,143	25,022	27,133	32,938	30,989	16,249
	내부거래	7,620,644	4,890,466	3,188,109	531,077	328,995	378,325	155,749	166,447	141,765
예비비 및 기타	290,456	78,293	12,563	15,126	8,557	29,310	3,751	6,118	2,870	
2006	합계	79,738,529	25,232,098	10,682,368	3,997,197	2,503,948	3,098,819	1,705,327	1,690,871	1,553,569
	인건비	12,496,587	4,704,526	2,181,127	719,916	493,679	480,194	290,199	308,807	230,604
	물건비	5,428,290	1,761,545	866,859	230,850	169,359	187,324	91,328	107,176	108,650
	이전경비	21,317,453	7,722,236	2,898,946	1,359,786	886,066	993,611	642,479	548,528	392,818
	자본지출	32,100,941	6,558,607	2,297,309	1,112,610	556,745	1,026,815	462,885	457,606	644,637
	융자 및 출자	277,735	64,292	12,023	188	540	13,824	9,770	27,503	444
	보전재원	419,549	184,831	-	52,885	27,062	15,465	38,098	32,638	18,685
	내부거래	7,461,365	4,164,339	2,411,366	508,995	355,001	368,256	164,659	204,868	151,192
예비비 및 기타	236,608	71,722	14,738	11,967	15,495	13,331	5,907	3,745	6,538	
2007	합계	86,881,392	28,426,359	12,639,108	4,428,619	2,709,446	3,392,630	1,801,021	1,822,658	1,632,876
	인건비	12,999,107	4,854,646	2,238,317	734,694	515,256	497,671	302,096	324,667	241,945
	물건비	5,876,327	1,886,787	919,313	243,358	175,816	197,809	124,853	113,772	111,867
	이전경비	24,693,852	9,020,460	3,348,551	1,598,199	1,055,987	1,174,024	757,280	628,232	458,188
	자본지출	33,389,628	6,867,620	2,580,090	1,219,107	551,874	1,074,233	415,605	489,211	537,500
	융자 및 출자	354,158	107,054	32,189	368	955	12,141	300	22,500	38,600
	보전재원	445,769	197,561	-	55,162	41,267	17,360	33,072	30,805	19,895
	내부거래	8,837,209	5,400,336	3,488,211	563,396	353,672	410,536	159,938	208,993	215,591
예비비 및 기타	285,342	91,895	32,438	14,335	14,620	8,857	7,875	4,479	9,292	
2008	합계	98,395,563	32,476,697	14,569,599	5,069,801	3,151,558	3,856,758	2,044,892	1,966,326	1,817,762
	인건비	13,560,945	5,030,228	2,290,287	761,477	534,324	534,963	315,529	340,745	252,902
	물건비	6,364,620	2,031,591	1,011,767	258,301	186,093	216,045	119,856	115,731	123,797
	이전경비	30,459,913	11,367,978	4,667,471	1,911,941	1,261,989	1,359,481	872,643	758,160	536,292
	자본지출	37,209,106	8,067,259	3,190,210	1,295,584	700,356	1,265,175	492,003	457,026	666,906
	융자 및 출자	274,005	128,903	69,407	2,760	8,758	24,777	-	22,600	601
	보전재원	878,975	359,068	3,769	174,308	58,296	19,878	47,300	39,479	16,038
	내부거래	9,209,524	5,340,393	3,300,649	634,523	384,786	406,795	187,453	213,689	212,498
예비비 및 기타	438,475	151,277	36,038	30,908	16,955	29,644	10,108	18,896	8,728	
2009	합계	118,463,752	39,060,682	16,513,396	5,955,740	3,790,528	5,343,835	2,660,000	2,574,984	2,222,200
	인건비	15,400,807	5,695,625	2,700,379	783,987	592,074	574,484	372,800	379,095	292,806
	물건비	7,212,508	2,353,071	1,187,589	300,978	204,732	244,172	143,897	133,010	138,693
	이전경비	35,124,832	13,071,941	4,988,192	2,192,302	1,497,495	1,700,546	1,085,932	947,960	659,514
	자본지출	49,658,884	11,471,686	4,086,133	1,838,735	1,003,839	2,110,537	803,327	761,690	867,426
	융자 및 출자	495,455	329,845	159,552	286	6,491	73,635	-	89,461	420
	보전재원	787,037	439,058	-	147,665	83,637	109,051	41,274	36,959	20,472
	내부거래	9,057,641	5,412,973	3,333,690	635,482	347,466	486,869	189,506	194,467	225,492
예비비 및 기타	726,588	286,484	57,861	56,306	54,794	44,540	23,264	32,343	17,376	

재정 통계

(단위: 백만원)

도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49,524,345	13,658,411	4,378,270	3,183,931	4,514,119	4,079,944	5,637,399	6,115,867	6,496,502	1,459,902
7,287,022	1,691,544	670,978	501,954	675,942	717,938	868,995	1,021,319	908,591	229,760
3,315,252	843,445	314,496	213,478	303,778	271,784	415,175	429,321	409,961	113,814
10,949,650	3,176,437	813,331	713,373	1,004,444	1,145,767	1,258,550	1,296,198	1,213,730	327,820
24,478,382	6,310,882	2,348,909	1,578,575	2,235,521	1,782,528	2,901,284	3,066,640	3,588,148	666,195
299,880	201,249	16,310	23,419	5,771	1,240	12,500	20,450	13,130	5,810
251,820	34,389	20,880	13,387	24,962	27,251	38,924	48,990	23,566	19,471
2,730,178	1,356,958	147,693	127,290	244,797	120,894	126,632	205,997	309,151	90,765
212,162	43,506	45,673	12,454	19,203	12,542	15,339	26,954	30,226	6,267
54,506,431	14,910,482	4,741,087	3,302,527	4,865,372	4,932,364	6,185,083	6,662,104	7,114,383	1,793,028
7,792,060	1,834,045	715,661	532,176	723,928	762,443	916,909	1,080,187	971,781	254,932
3,666,745	950,337	326,003	234,796	337,687	300,735	450,962	479,860	454,919	131,446
13,595,217	3,829,965	1,016,445	867,699	1,216,012	1,420,529	1,538,159	1,617,595	1,609,656	479,157
25,542,334	6,264,221	2,411,793	1,503,736	2,315,224	2,255,176	3,072,501	3,224,335	3,685,632	809,716
213,443	109,697	46,033	3,744	16,894	100	7,524	13,517	10,872	5,061
234,718	30,417	19,459	25,823	16,001	33,133	23,174	36,876	29,185	20,651
3,297,026	1,852,860	190,647	127,385	220,809	148,066	160,861	191,319	316,755	88,324
164,887	38,940	15,047	7,167	18,818	12,182	14,993	18,414	35,584	3,741
58,455,033	15,756,788	5,922,180	3,721,224	4,940,984	4,888,981	6,542,457	7,181,482	7,715,192	1,785,746
8,144,462	1,923,408	746,669	555,483	761,858	791,034	955,788	1,124,158	1,017,001	269,063
3,989,540	1,032,441	349,935	255,660	377,640	320,146	485,159	532,391	504,284	131,885
15,673,391	4,627,262	1,173,421	1,006,707	1,382,994	1,606,623	1,739,641	1,811,299	1,823,575	501,870
26,522,008	6,221,837	3,383,488	1,712,798	2,124,879	1,940,436	3,121,875	3,355,429	3,891,639	769,627
247,104	155,002	27,485	5,960	9,466	2,640	14,140	16,688	14,811	912
248,208	47,399	21,529	5,767	15,740	37,767	27,319	37,886	33,157	21,644
3,436,873	1,682,166	204,860	169,372	251,742	175,174	178,550	277,526	412,172	85,311
193,447	67,274	14,793	9,478	16,665	15,160	19,986	26,105	18,552	5,433
65,918,866	17,879,194	5,833,015	4,244,997	5,744,900	5,676,370	7,812,995	8,113,424	8,560,406	2,053,564
8,530,717	2,046,043	784,894	578,190	799,213	814,686	996,510	1,160,626	1,067,732	282,823
4,333,029	1,111,549	375,611	276,844	405,197	350,902	554,190	574,968	542,829	140,938
19,091,936	5,654,308	1,426,440	1,225,616	1,781,629	1,883,564	2,122,699	2,230,603	2,239,101	527,976
29,141,847	6,784,539	2,977,063	1,959,757	2,441,117	2,293,734	3,831,074	3,754,641	4,131,625	968,297
145,102	46,838	14,226	3,000	8,030	1,385	43,264	16,417	10,958	984
519,907	176,081	45,977	5,591	20,530	54,141	30,819	91,196	71,726	23,847
3,869,130	1,982,010	188,128	179,567	266,007	251,097	184,524	256,558	458,600	102,639
287,199	77,827	20,677	16,432	23,177	26,861	49,915	28,415	37,835	6,059
79,403,070	21,075,291	6,671,401	5,105,764	7,035,730	6,813,812	9,516,439	10,197,293	10,479,177	2,508,162
9,705,182	2,388,571	895,179	652,545	905,510	912,536	1,108,520	1,304,729	1,229,723	307,869
4,859,437	1,274,293	420,265	305,933	459,746	391,604	612,227	658,518	588,098	148,753
22,052,891	6,634,275	1,613,079	1,392,811	1,968,486	2,149,519	2,453,843	2,645,931	2,575,682	619,264
38,187,198	8,601,204	3,473,465	2,561,128	3,360,952	3,086,939	5,071,438	5,201,525	5,535,293	1,295,254
165,610	72,855	12,708	4,910	10,506	2,950	35,862	11,988	12,032	1,799
347,979	77,807	28,850	5,902	22,394	40,500	25,513	42,098	79,850	25,066
3,644,668	1,939,808	201,188	154,410	274,188	176,493	156,728	266,512	374,920	100,420
440,105	86,478	26,668	28,125	33,947	53,271	52,309	65,993	83,578	9,737

주: 1)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재정연감 참조.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KTX 경쟁도입 필요하다

박진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행정부에 건취 국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책결정에 있어 국민여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현안을 숙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복잡한 사안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자연히 여론조사는 개인의 피상적 의견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니 국민여론은 더욱 피상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피상적 여론이 국가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TX 경쟁 도입 논쟁도 그중 하나이다. 수서발 KTX 노선의 열차 운영을 민간 기업에 허용하여 철도공사와 경쟁하면서 서로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도 개선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찬성률이 22.6%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4월 의뢰한 설문조사에선 64.5%로 나타났다.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참여연대는 '민영화'를 물었고, 국토해양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물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질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철도 민영화'로 알고 있으며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민간에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리니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여론을 존중하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KTX건은 정부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경쟁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철도의 운영 비효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건비가 철도운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를 말해 준다. 우리는 48%인데 독일은 30%에 불과하다. 철도 1km당 인력이 우리는 10명인데 독일은 7명이기 때문이다. 또 연공서열 보수체제로 인해 1인당 연평균 임금이 6,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5,000억~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운영 비효율이 적자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중요한 이유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적자는 결국 우리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자리는 줄고 부양할 노인인구는 많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 갈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철도공사 부채까지 떠넘겨서야 되겠는가? 경쟁을 통한 철도의 효율성 향상이 절실한 이유이다.

반대론의 핵심은 공공성 유지를 위한 비용증가이다. 정부는 적자노선 유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위해 매년 3,000억원 내외의 공익서비스(PSO) 보상을 철도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KTX에서 돈을 벌며 적자노선 운영비에 보태고 있는데, KTX 노선 일부가 민간에 넘어가 공사의 수익이 줄면 그만큼 PSO 보상을 늘려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상을 적게 요구하는 효율적인 민간 기업에 적자 노선 운영까지 넘기면 PSO 보상을 늘리지 않고 벽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선진국에선 이러한 최저보조금 입찰제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낙도에 대한 배편은 민간 선사 중 보조금을 적게 요구하는 기업에 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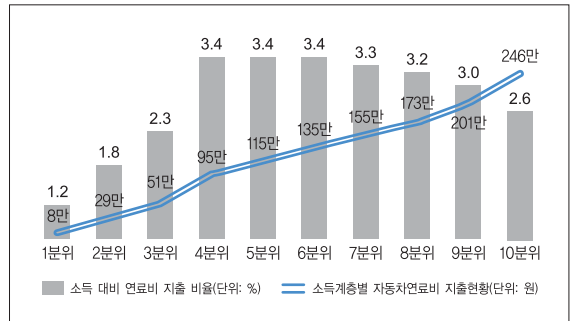
이번 KTX 경쟁 도입과 직결된 사안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적자 노선, 적자 역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대신 역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버스운행이 늘어나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다. 도로와 달리 선로에선 한 번에 하나의 열차만 운행할 수 있으므로 적자 노선을 운영하면 다른 열차운행을 줄여야 한다. 버스운행 증가는 그런 문제도 없고 편의성도 높아 훨씬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쌀에 역 하나 폐지하기도 어렵다. 극소수를 위해 전 국민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특혜를 얻는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민간이 큰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선로사용료를 많이 내게 하고 요금을 낮추도록 하면 된다. 기업에 대박 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입찰과정을 감시하자. 그래도 민간이 공사에 비해 효율적으로 일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오히려 반길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더 낮은 요금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X 경쟁 도입이 벽에 부딪힌 것은 국민의 대정부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이다. 이러면 피상적 여론이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부는 바른 여론을 파악하고 형성하기 위해 공론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서울신문 2012-5-1일자)

유가안정 종합대책 발표 이후... 끊이지 않는 유가 보조금 정책 공방

정부가 유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정책 도입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이 기름값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서민 부담 완화에 무관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류 세율을 물가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세계경제의 4대 에너지 이슈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유가보조금 정책이 유류 추가 소비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유가안정 종합대책’에서 유류세 인하와 유가보조금 지급이 빠진 데 대한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신흥국·개도국의 유가보조금 및 유류세제 개편 등 정책으로 국제 유가 상승분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아 수요조정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1갤런(약 3.7ℓ)당 2달러(약 2,3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를 들면서, 혜택이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국제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국책기관의 연구 결과도 재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에너지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보면, 자동차 연료비 지출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 1분위(하위 10%)의 2010년 연료비 지출은 8만원에 불과하지만, 5분위(하위 50%)는 115만원, 10분위(상위 10%)는 246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펼 경우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유가 상승과 환율 인상에 따라 더 견인 유류세만 포기해도 서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현행 교통세에 최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고 기본세율 3%인 할당관세를 40%까지 내리면 휘발유 가격을 최고 310원가량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당수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수시로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세율의 탄력적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물가연동장치가 배제돼 있는 현행 에너지 관련 소비세 과세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울신문 2012-4-23일자〉

[기고] 소득 상위 1%는 누구?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대 99.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문제를 지칭하는 대표적 표현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심지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 회원국의 상위소득 1%를 분석하며 소득불평등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이번 OECD의 분석은 17개 회원국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근거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를 접하며,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솔직히 부러움이 앞섰다. 사실 소득불평등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의 공식문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그 공론화시기가 빨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처럼 과세자료에 근거해 분석을 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과세자료를 정책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등 17개 OECD 회원국이 우리나라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하는 것은 분명히 아

닐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나라의 상위소득 1%는 과연 어떨까 살펴봤다. 여러 가지 조각 정보를 모아 퍼즐맞추기 식 분석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나름대로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 소개해 본다.

우선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연 1억원 소득자면 상위 소득계층에 속한다. 2006년의 경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체의 1%였다. 이는 미국의 33만달러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4년이 지난 2010년의 경우 소득 1억원을 올려도 1.6%대로 그 순위가 밀려나고 있다. 한편 1억원 이상 소득자의 소득 합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6.6%에서 2010년에는 19.7%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위소득자의 소득비중은 같은 해 미국의 18.1%보다는 낮지만 영국(14.8%), 캐나다(13.8%) 일본(9.2%)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둘째, 상위소득자의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업소득은 높은 편이다. 물론 미국 등의 경우 스톡옵션 실현에 따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사업소득이 상위소득자 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내지 4배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우리의 상위소득계층의 직업은 금융업 종사자 비중이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미국 등과는 달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가 점령시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라면 지나친 논리 비약일까?

셋째, 상위소득자가 내는 세금비중을 보면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상위 1%가 내는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수의 44%로서, 미국(40%)과 유사한 수준이며 영국(24%)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과세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서베이 조사를 가지고서는 특히 소득노출을 기피하는 상위소득계층의 소

득이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상위 1%의 소득비중은 7~8%로서 국제통계연보에 기초한 분석치보다 10% 포인트 낮다. 국제통계연보가 비록 직접적인 과세자료는 아니더라도 국제청이 이에 근거해 작성하는 통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행정권한 없는 통계조사원에게 답한 조사 결과와의 차이는 당연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조사에 의해서도 상위소득계층 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소득불평등이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다.

여러 정보를 종합해볼 때 소득불평등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급한 나머지 부자 때리기식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도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실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의 성급한 처방은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과세 자료를 직접 이용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하루빨리 왔으면 한다.

(파이낸셜뉴스 2012-4-23일자)

〈유류세 인하賛 - 反 토론〉

에너지 과소비 부추길수도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유류 증독에 빠져 있다.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절제된 에너지 소비를 위해 유류세를 인상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유류세 소비 절제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 빚어지는 유류 증독 금단현상 중 하나로 진단된다. 에너지 과소비의 부작용 확대가 우려된다.

본래 에너지는 비싸다. 석유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싸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에너지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동반한다. 그 비용은 세금을 통해 환수한다. 복지 선진국일수록 그런 원칙에 충실하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세금으로 환수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과소비 계층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저소득·빈곤층에게도 에너지 소비로 빚어지는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에서 복지 선진국일수록 에너지 소비 억제와 복지 자원 확충을 염두에 두고 유류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인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마치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서민들은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 고소득층일수록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쓴다. 저소득층은 세 부담이 미미한 반면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대부분이다. 유류세 인하시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다.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는다. ‘유류세 인하 주장의 역설’이다. 유류세를 내리면 필연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이 경감되고 복지 자원은 줄어든다. 저소득·빈곤·노년층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솟는 술값을 낮추어 값싸게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절주와 절제된 음주생활이 요구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유류세 인하는 정답이 아니다. 유류 의존도를 높여 유류 증독증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세금 인하를 통한 유가 인하는 달콤하지만 유류 증독에 걸린 대한민국에는 치명적이다. 치유 과정에서 당장은 더 아프더라도 유류세 인상이 정답이다. 유류 소비 절제, 세수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국가부채를 감축하며 복지 자원을 확충할 수 있어 일거삼득이다.

(매일경제 2012-4-21일자)

재정포럼

2012년 5월호 통권 제191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숙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산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위원)
권재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행정원)

■ 월간 재정포럼

2012년 5월 15일 발행 / 제16권 제5호(통권 제191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02)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2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